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통합 제23차 총회)

일시 : 2025년 3월 13일(목) 18시 30분

장소 : 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 (중앙로 85)

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목 차

1. 제11차(통합23차) 정기대의원총회 진행순서 4

2. 인사말 5

3. 조합원 건강약속 9

4. (24년 말 기준)조합원 현황 10

5.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표창 명단 11

6. 제10차 정기총회 의사록 12

7.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 및 자료

제1호 의안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19

제2호 의안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안 23

제3호 의안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89

제4호 의안 (아이쿱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92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54

제6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138

제7호 의안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139

제8호 의안 기타 안건 142

〈부록〉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143
- 제5기 대의원 명단 145
- 2024년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보고서 146
- 2024년 사회적성과관리보고서 164
- 조합 정관 167

제11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3차) 진행순서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2. 인 사 말
3. 내빈소개
4. 축 사
5. 우수직원 및 근속표창
6. 폐 식

제2부 제11차 정기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 확인 및 보고
2. 개회선언
3. 서기 및 의사록 서명 날인인 선임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5. 2024년 종합감사보고
6. 상정의안 심의
7. 폐회선언

인 사 말



조합원 및 대의원 여러분 안녕하세요?

조합 이사장 이광희입니다.

2024년을 되돌아보니 조합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22년 동안 의료기관과 조합 사무실을 운영했던 구)밝음신협 건물을 벗어나 신)밝음신협 건물로 이전하여 쾌적하면서도 안정된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밝음신협의 물적 지원과 배려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조합의 자체 능력으로는 불가능했던 조합 사무실의 이전이었는데, 밝음신협이 통 크게 협동조합의 제7원칙 중 6원칙인 협동조합 간 협동을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인사로는, 지난 10년 동안 목요일, 금요일 진료를 담당해주셨던 김종희 원장님이 퇴사를 하시면서 서울로 가셨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신세를 졌기에 우리 조합의 역사에서는 잊을 수 없는 원장님으로 기억되실 겁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지면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후임으로 오신 공영훈 원장님이 오시자마자 대표 원장의 중책을 맡으시면서 협동조합 의료기관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보여주고 계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방문진료 주 3회 이상과 가정간호 요양원 정기 방문 등 조합의 새로운 트레이드 마크가 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에서 맹활약을 해주시고 계셔서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조합원님과 대의원님은 행복해야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늘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또한 매사를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을 챙기는 것이고 마음의 평화를 통한 행복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물질적 풍요로 너무 많이 경도되어 가고 있습니다. 협동조합은 새로운 가치로 무장하고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조합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지난 22년을 달려왔습니다. 그 길에 번영의 순간도 있었고, 아픔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재도약을 위한 비전을 공유하며 우리 조합원 한 분 한 분이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 조합의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야겠습니다.

2024년 여러 변화의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역할 속에서 최선을 다해주신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춥던 덥던 거동이 불편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방문진료와 방문간호, 가정간호, 노인요양서비스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실천해 주신 원장님들과 간호사님들, 사회복지사님들, 요양보호사님들, 그리고 외래에서 조합원과 환자분들을 반갑게 맞아주시는 원장님과 간호사님들, 묵묵히 후방에서 조합의 잡다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팀과 총무팀 및 사무국 직원분들 모두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시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2025년은 앞으로 올 시간과 기회를 놓치지 않고 새로운 비전속에서 재도약을 하는 첫 해로 만들겠습니다. 조합원님들의 큰 하늘과 대의원님들의 큰 하늘 아래에서 함께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3일

이사장 이광희 올림

축 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

존경하는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회장 임종한입니다.
강원의료사협 총회에 찾아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사회는 작년 12월부터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급속한 고령화와 사회양극화로 건강에 위협을 받는 시민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건강불평등에서 나타나듯 의료는 사회불평등과 차별을 보여주는 대표적안 분야이기도 합니다. 인구 구성에서 고령자의 비율이 높아지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늘고 있어, 이들 질환이 악화되어 응급실 내원, 기존질환 악화 및 중증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기준 30세 이상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6.7%로, 그 규모는 526만 명에 달합니다. 당뇨병은 초기 진단과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질환 중 하나입니다. 김창엽 교수팀에 의하면 우리 사회에서 이동 시간 30분 이내에 당뇨병 진료 기관이 없는 읍면동은 총 20개 지역이었습니다. 해당 읍면동은 인천 중구·강화, 경기 연천, 강원 삼척·홍천·정선·양구·인제, 전북 군산, 전남 고흥, 경북 김천·안동·문경·울진, 경남 거창 총 15개 시군구에 속했습니다.

이처럼 만성질환을 제대로 관리하고 돌봄서비스와 연계하는 통합돌봄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이 많습니다. 건강불평등이 심화되고, 돌봄의 사각지대가 넓어지는 상황에서 의료대란과 정치적인 혼란마저 지속되면서, 의료개혁과 통합돌봄이 제대로 시행될지 참으로 우려가 큽니다.

의료사협은 시민의 참여로 의료를 시민의 건강을 지킬 지역사회의 공공의 자산으로 만들어오는데 힘을 쏟아왔고, 우리 사회에서 주치의제도가 제도화되기 이전에 주치의제를 미리 시행해왔으며, 민간에서 처음으로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추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입법 등 우리 사회에 주치의제도를 도입하는 여러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의료사협은 지역 주민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민주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일차의료가 취약한 곳에 지역주민이 의료사협을 조직하여 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을 열면 좋겠습니다. 지역주민이 나서면 안 되는 것이 없습니다. 건강돌봄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제대로 된 의료개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협을 통해 시민이 참여하는 아래로부터의 개혁이 힘있게 일어나야 한다고 봅니다. 시민의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지자체와의 민관협력을 이끌어내 급속한 고령화와 건강불평등 심화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침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담을의료사협이 창립되고, 건강주치의제도를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시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긍정적인 기반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7월부터 의료 소외지역의 65세 이상 어르신과 장애인, 아동을 대상으로 포괄적 건강관리를 담당할 주치의를 지정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질병 예방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의료사협이 건강취약지역에 고기능 일차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마을공동체 주도의 통합돌봄을 힘차게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한국 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제 곧 이 혼란을 정리하고 힘차게 날아 올라갈 것입니다. 지역주민이 살아오던 곳에서 필요한 돌봄과 의료서비스를 받으며, 공동체와 더불어 살아가는 날을 꿈꿔 봅니다. 이제 여러분과 새로운 비전에 도전을 해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3월 13일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정의

건강이란 ‘아픔을 중심에 두고 자기를 극복하는 힘’이며,

몸, 마음, 세상의 안녕과 더불어 영적, 생태적으로

건강한 관계를 발현해가는 과정이다.

■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건강’ 약속

우리는,
아플 때, 내 삶을 돌아 보고
몸과 마음의 소리를 듣습니다.

내가 아픈 것은 세상이 아픈 것임을 깨닫고
그 아픔의 근원을 바라봅니다.

생명의 소리에 귀 기울여
나와 이웃과 지구의 건강이 하나임을 압니다.

서로 안부를 묻고 살피며
이웃과 사회가 아플 때 손 내밀어 봅니다.

생명, 그 본성처럼 늘 서로 돕고
더불어 하나 됨 속에서 기뻐합니다.

한 생명 한 생명이 빛날 수 있도록
건강한 세상을 향해
마음 모아 함께 나아갑니다.

(24년말 기준)조합원 현황

■ 조합원 가입 추이(신규가입자수)

2022년 1,500명(104명) → 2023년 1,600명(107명) → 2024년 1,695명(95명)

■ 연령대별 분포(1,684명)　※조합원 평균 연령 : 62세

30대 이하(~ 39세) : 44명
40대(40~49) : 200명
50대(50~59) : 486명
60대(60~69) : 511명
70대(70~79) : 242명
80대(80~89) : 176명
90대 이상 : 25명

■ 법인(기관)조합원현황(9개)

원주한살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원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성공회원주나눔의집 YMCA / 소꿉마당 / 길동무 / 다자원 / ㈜살림농산 /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읍면동별 분포(1,695가구)

개운동	77가구	**학성동**	28가구
단계동	104가구	**행구동**	55가구
단구동	192가구	**문막읍**	22가구
명륜1동, 명륜2동	143가구	**귀래면**	12가구
무실동	71가구	**부론면**	5가구
반곡관설동	124가구	**소초면**	36가구
봉산동	89가구	**신림면**	14가구
우산동	41가구	**지정면**	36가구
원인동	38가구	**판부면**	32가구
일산동	46가구	**호저면**	31가구
중앙동	33가구	**흥업면**	48가구
태장1동, 태장2동	127가구	**원주 외 지역**	111가구
가현동	3가구	**주소 불명**	177가구

2024 우수직원 및 장기근속 표창자 명단

	시상명	소속	수상자	공적사항
1	우수직원	밝음의원(외래)	신옥경 부장	직원투표 선정
2	우수직원	밝음의원(재택의료센터)	염은경 과장	직원투표 선정
3	장기근속표창	밝음의원(외래)	김현경 간호조무사	12년 근속
4	장기근속표창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김연화 요양보호사	16년 근속
5	장기근속표장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김경옥 요양보호사	11년 근속

제10차 정기대의원 총회
(통합 제22차 총회)의사록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대의원총회) 회의록

1. 회의명칭 :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정기대의원총회)
2. 소집통지 : 2024년 3월 5일(화)
3. 일　　시 : 2024년 3월 21일(목) 18시 30분
4. 장　　소 :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83, 4층 무위당기념관
5. 정 족 수 : 대의원 정수 110명 中 과반(56명 이상)인 59명 참석(최종 60명)으로 개회
6. 의장성명 : 이사장 이광희
7. 식　　순 : 가. 제1부 기념식
 나. 제2부 대의원 총회 본회의
8. 부의안건

제1호 의안 2023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안
제3호 의안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의 건
제5호 의안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제7호 의안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제8호 의안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제9호 의안 기타 안건

9. 총회경과 및 의안심의 내용

가. 제1부 기념식

1) 개회선언

- 신승훈 전무(이하 사회자)가 18시 45분에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제22차) 기념식 개회를 알리다.

2) 인 사 말

- 이광희 이사장이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정기총회에 참석하여 주신 대의원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안건 순서에 따라 신속히 진행하는 것으로 안내하며 인사말을 전하다.

3) 내빈소개 및 축사

- 내빈소개로 원주밝음신협 이도식 이사장, 정용호 상임이사.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우세옥 상임이사,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변기영 상무, 원주생협 이현주 이사장을 소개하고 인사말 및 축사는 생략하다.
-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공증을 위하여 박우순 변호사가 참석하여 인사하다.

나. 제2부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대의원총회) 본회의

1) 성원확인 및 보고
- 이광희 이사장(이하 의장)이 의장석에 착석하고 성원 보고를 요청하여 신승훈 전무가 대의원 110명 중에서 59명(최종 60명)이 참석(과반수는 56명)으로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하다.

2) 개회선언
-성원이 되었음을 보고받고 의장이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대의원총회) 개회를 선언하다.

3) 의사록 기명날인인 선임
- 의장이 의사록 서기 1명과 기명날인인 3인을 선임하고자 하며 참석 대의원 가운데 자발적으로 역할을 맡아주실 분이 있는지 물었으나 없음을 확인하고, 의장의 추천에 의해 서기는 신승훈 전무가 김선기, 장동성, 천혜란 대의원이 의사록 기명날인인으로 추천되어 이에 의장이 동의를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박수로 찬성하여 의장이 서기로 신승훈 전무, 김선기, 장동성, 천혜란 대의원이 기명날인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의장이 선언하다.

4) 전차회의록 낭독 및 승인
- 의장의 요청에 따라 신승훈 전무가 총회 자료집 10쪽 ~ 17쪽의 전차회의록을 안내하고, 의장이 이에 대한 참석대의원 의견을 묻자 참석대의원 모두 이의가 없다고 하여 전차회의록을 원안대로 승인하다.

5) 상정 부의안건 심의
- 의장이 제1호 의안부터 제9호 의안 순서대로 심의할 것을 제안하고, 부의안건을 의장의 제안대로 심의할 것을 참석 대의원에게 물어보다.
참석 대의원 모두 동의하여 심의에 들어가다.

○ 제1호 의안 - 2023년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의장의 요청으로 2024년 2월 6일에 박찬현, 정연우 감사에 의해 실시된 조합의 종합감사 의견을 박찬현 감사가 총회에 참석하여 보고하다. 의장이 자료집 19~21쪽 참조할 것을 주문하다.
- 의장이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자,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의장이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고 이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제1호 의안인 2023년 감사보고서를 원안대로 승인하다.

○ 제2호 의안 -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자료집(22~85쪽)의 2023년 조합 활동 총평 및 결산 요약 등 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 사업보고 및 결산서 내용과 잉여금 처리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3호 의안 -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 의장이 박준영 부이사장에게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에 대하여 설명해줄 것을 주문하다.

- 박준영 부이사장이 자료집 86쪽의 의결 주문 사항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설명한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김유미 대의원이 연대 협력 중단에 대한 반대 의견을 하고, 권윤혜 대의원이 상황 설명에 대한 질의를 하다. 의장이 권윤혜 대의원에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고, 김유미 대의원이 의장의 발언에 대한 재답변을 하다. 의장이 김유미 대의원의 발언에 대한 답변을 하고 김선기, 김은주, 정민숙, 권윤혜, 지숙현, 원유일, 도수연, 안진구, 구경모 대의원이 발언을 하다.
- 의장이 표결할 것은 주문하고 진행하다.
- 찬성 46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결정되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4호 의안 - 임원 선출의 건

- 제4호 의안 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나고 백송희 선거관리위원장이 의장석에 착석하다.
- 제4호 의안 임원 선출을 위하여 백송희 선거관리위원장(이하 의장)이 인사를 하다. 선거관리위원으로 조성희 조합원, 신옥경 조합원이 수고하였음을 보고하다.
- 24년 3월 25일자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박준영, 최효심, 이광희, 이창호,
서연남, 김종희, 김선기, 천혜란, 변재수 9명과 감사 박찬현, 정연우 2명이 있음을 알리고 새로운 임원 선출이 필요함을 설명하다.
- 의장이 정관 제32조, 제44조, 제45조, 제47조에 의거하고, 선거관리규정 18, 20조에 의거하여 2024년 3월 4일(월)부터 3월 11일(월)까지 임원선거공고를 하여 아래와 같이 임원 후보자가 등록이 되어 공고하였음을 보고하다.

1) 이사 후보(가나다순) - 총 12명.
① 김선기(조합원 번호 100162) : 중임
② 김태성(조합원 번호 220061) : 취임(3월 25일)
③ 박준영(조합원 번호 30137) : 중임
④ 신승훈(조합원 번호 140113) : 취임(3월 25일)
⑤ 서연남(조합원 번호 160001) : 중임
⑥ 이광희(조합원 번호 100188) : 중임
⑦ 이윤승(조합원 번호 220058) : 취임(3월 25일)
⑧ 이창호(조합원 번호 170028) : 중임
⑨ 염은경(조합원 번호 190062) : 취임(3월 25일)
⑩ 정연우(조합원 번호 180005) : 취임(3월 25일)
⑪ 천혜란(조합원 번호 190025) : 중임

⑫ 최효심(조합원 번호 30071) : 중임

2) 감사 후보(가나다순) - 총 2명.
① 김달현(조합원 번호 220060) : 취임(3월 25일)
② 장동성(조합원 번호 210003) : 취임(3월 25일)

- 의장이 임원 후보자를 호명하고 앞으로 나온 임원 후보자가 간단히 임원입후보에 대하여 포부를 설명하고 인사하다.

- 의장이 지금 앞에 나온 12명의 이사 후보들과 2명의 감사 후보들은 앞으로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을 이끌며 봉사하실 분들임을 소개하고 선거관리규정 제18조에 1항에 의하여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는 방법도 있겠으나, 선거관리규정 제18조 3항에 의거해 임원후보가 선출하고자 하는 임원 정수보다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총회에서 정한 방법대로 할 수 있기에 대의원들에게 큰 박수로 임원 후보 선출 의향을 묻고 대의원 모두 큰 박수로 동의하여 임원을 선출하다.

- 의장이 선출된 이사들에게 이사장 후보를 호선하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하여, 이사들이 모여 호선하여 이광희 이사를 이사장 후보로 추천하다. 의장이 이사장 후보로 추가 추천이 있는지를 묻자, 대의원들이 없다고 하자 의장이 이광희 이사장 후보를 승인해 줄 것을 요청하다. 대의원 전원이 이광희 이사장 후보를 재차 큰 박수로 승인하다.
- 추가로 이사들이 박준영 이사를 부이사장으로 호선하여, 대의원 전원이 큰 박수로 재차 승인하다.
- 의장이 임원 선출과 이사장 선출이 되었기에 대의원에게 감사 인사를 드리고 다시 새로 선출된 이광희 이사장에게 의장을 넘기다.

○ 제5호 의안 -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

- 새로 선출된 이광희 이사장이 의장석에 착석하여 의장으로서 인사하고 다시 총회 회의를 진행하다.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정관 및 규약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 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조합 이전에 따른 사무소, 의료기관 소재지 등 변경, 대의원 자격 및 임기 변경을 통한 조합 운영 효율성,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운영에 맞는 규약 개정, 협동조합기본법의 개정에 따른 필요 등 에 대해(자료집 89쪽~94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전원 동의 , 전원 재청

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6호 의안 -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조세훈 대의원이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으니 제6호, 제7호, 제8호 의안에 대해 일괄 상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들에게 의견을 묻자 전원 동의, 재청하여 이를 수용하고
제6호, 제7호, 제8호 의안을 일괄 상정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4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자료집 97쪽~133쪽) 자료를 참고하여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정민숙 대의원이 방문구강사업을 제안하다.
- 의장이 또 다른 의견이 있는지 묻자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2023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관한 안건에 대하여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7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의장이 2024년 신규 차입금 최고 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설정하는 것에 대하여 참석 대의원의 의견을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 제8호 의안 -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의장이 신승훈 전무에게 2023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해줄 것을 주문하다.
- 신승훈 전무가 2023년 탈퇴조합원에 대한 출자금 환급 및 출자금 변동(자료집 136~137쪽)에 따른 명단(탈퇴, 제명, 양도)과 출자좌수 및 출자총액을 설명하다.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보고 내용에 대한 질문이나 의견이 있는지 묻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여 다른 질문이 없음을 확인하고 원안대로 승인해도 좋은지 묻자 전원 동의, 전원 재청으로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다.

1. 출자좌수 : 29,337좌
2. 출자총액 : 293,370,374원

○ 제9호 의안 - 기타 의안

- 의장이 참석 대의원에게 기타 안건으로 상정하거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의안이 있으면 상정해줄 것을 요청하다.
- 참석 대의원 모두 없다고 답하다.
- 의장이 기타 의안은 없는 것으로 선포하다.
- 폐회선언 전 의장이 마지막으로 공지할 사항이 있는지 묻다.
- 권누리 대의원이 추후 임원들이 연대협력 중단에 대한 책임도 져야한다는 의견을 말하다.
- 횡성땅 기부자 조합원이 횡성땅과 관련 발언을 하다.
- 의장이 더 이상 발언이 없음을 확인하고 이상의 부의 안건을 모두 승인 후, 제10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기대의원총회(통합 22차) 폐회를 선언하다. 폐회 시간은 20:25분임.
- 의장이 총회에 참석해 준 대의원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함을 전하다.

7) 폐회선언
위 의사의 경과요령과 결과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서기, 총회에서 기명날인 인으로 선출된 4명(서기 포함)의 대의원이 기명날인 또는 기명하기로 하다.

2024년 3월 21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의　　장 : 이사장 이광희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김선기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장동성 (인)

기명날인인 : 대의원 천혜란 (인)

서　　기 : 대의원 신승훈 (인)

제 1 호 의안 :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6. 감사보고서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4년 종합감사보고서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감사근거 : 정관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2024년도 종합 감사보고서

< 개 요 >

□ 감사일시 : 2025. 2. 13.(목) 15:00 ~ 17:30
□ 감사장소 : 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세미나실)
□ 감 사 자 : 감사 장동성, 김달현
□ 대상기간 : 2024. 01. 01 ~ 2024. 12. 31
□ 감사방법 : 각종 재무제표를 통한 경영상황 분석, 이사회 자료 등 을 활용한 협동조합 운영상황 파악

본 감사 2명은 2024년도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31일까지) 사업 및 활동, 재무회계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1. 회계 부문

1) 재무제표 확인

- 법인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별히 지출결의의 집행과 영수증 수취와 관리상황을 확인하였고,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2. 사업 부문

1) 의료사업부의 모습

-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3년 대비 24년 매출액이 19%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특히 가정간호센터의 성장이 두드러졌으며, 재택의료사업의 수익 창출도 주목할 만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 성장은 조합원의 사업이용률 감소라는 구조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필요에 따라 재택의료사업과 가정간호 수요의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조합원 이용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합니다.

2) 돌봄사업부의 모습

재가방문요양센터의 사업은 이용자가 감소했으며, 그로 인하여 매출액 감소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의 해결을 위하여 조합원 대상 홍보 등을 통한 대상자 발

굴 및 회복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었으나 효과가 크지 않았음을 확인하였습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할 때, 조합 차원의 활성화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수렴의 과정과 실천 활동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해결책으로 의료기반 통합돌봄 자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처 사업', '㈜한국메디칼푸드 업무협약',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실천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실천 활동의 진행과 새로운 실천 활동의 마련과 성취를 기대합니다.

3. 조합원 활동 및 조합 운영 관리 부문

1) 조합 활성화를 위한 조합원 활동의 모습

2024년의 조합원 활동을 살펴보면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원주건강수다회, 돌봄의 모든 것', '건강소모임', '강원의료사협 자원봉사단'의 활동을 확인했습니다. 이 중에서 '건강소모임'활동을 주목합니다. 조합은 기회를 제공하고 조합원 스스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공유하는 모습은 조합의 다양한 미래 활동을 상상하는 원천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함'을 가꾸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조합원분들의 관심을 높이고 조금 더 용이하게 조합원이 함께 모여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기를 권고드립니다. 25년에는 조금 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2) 조합 운영, 관리의 모습

조합의 발전과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대의원 '소통의 날'진행, 임직원 워크숍, 임원 역량강화교육 등이 진행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쉽게도 직원 역량강화교육이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협동조합의 원칙 중에 '교육 훈련 및 정보의 제공(제5원칙)'이 있음을 상기합니다. 통합돌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확산 되는 상황에서'일반적인 의료기관이 아닌 협동조합 의료기관이 지역사회에 존재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의 공유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함께 고민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2023년에 이어서 2024년에도 우리 강원의료사협이 원주지역사회에서 주목받는 한 해였습니다.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2024 원주시 '민·관·학 협력 우수사례'공모전 대상을 수상하였고, '2024 사회적경제컴퍼니 ESG 활동 우수사례 사회적 책임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밝음의원이 '202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심사 없이 지속적

으로 사업참여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4. 총평

2024년 5월, 우리 조합은 보건복지부의 감사에서 전반적으로 재무평가는 양호, 조합 운영은 우수의 결과를 받았습니다. 이는 직원분들의 노력과 열정으로 가정간호사업, 재택의료사업 등을 통한 수익의 확대와 임직원과 조합원분들의 조합 활동의 참여 모습이 바깥에서 보아도 좋게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제 우리는 조합이라는 언덕에 기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법 언덕이 튼튼해졌습니다. 앞으로는 제법 튼튼해진 언덕을 더욱더 단단하고 크게 만들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들 스스로 새로운 관계와 재미를 만들어 매력적인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조금 더 조합을 자주 이용하여 조합 사업 수익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의 변화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공부하고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옆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2024년 강원의료사협을 매력적으로 가꾸기 위해 애쓰신 모든 임직원, 조합원분들께 감사드리며 2025년 새해는 더욱 멋지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2025년 3월 13일

감사 김달현, 장동성

제2호 의안 :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의 건 - 잉여금 처리 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4년 사업보고 및 결산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업 보고

■ 24년 주요 이슈 및 평가

1. 강원권 아이쿱생협(춘천, 원주, 충주)과의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

2023년 3월 제9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원주의료사협과 아이쿱생협 3개 조합(춘천, 원주, 강릉)은 연대협력을 결의 함.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으로 명칭을 변경하였고 “의료+복지+요양+돌봄”에 먹거리의 가치를 더해 상호부조사업 추가, 라이프케어 운동, 신규 사업소 준비 등 예방 중심의 진화된 새로운 협동조합 운동을 추진키로 하였으나, 라이프케어 운동을 위한 목적과 활동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의 사유로 2024년 3월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연대 협력 비전 결의를 중단함.

2. “22여년 만에” 신규 보금자리로의 이전 개소 완료

조합의 출발점이었던 “중앙로 83, 3층” 에서 22여년 동안 지내왔던 보금자리를 떠나, 원주밝음신협의 “협동조합 간의 협동 정신” 과 배려로 “중앙로 85, 4층” 으로 이전하여 신규 보금자리에서 새롭게 시작 하게 됨. (신협에서 인테리어비용 및 임대료 등 후원)
5월 3일 금요일 오전 11시 원주밝음신협 대강당 5층에서 조합원, 유관기관, 건강반장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소식을 성료 함.

3. 밝음의원 재택의료사업 성장세 지속 및 외래 경영 안정화 필요

○ 23년 대비 24년 매출현황

- 밝음의원 전체(외래+재택의료센터+가정간호센터)

2023년	⇨	2024년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19% 증가 약 2억8천만원
1,460,813,868원		1,741,877,163원	

- 외래+재택의료 *23년도까지는 외래+재택 매출을 같이 계산, 24년도부터 구분 정리.

2023년(외래+재택)	⇨	2024년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8.2% 감소 약 7,410만원
904,081,478원		(외래)404,031,165원	
		(재택)425,944,760원	
		829,975,925원	

- 밝음가정간호센터

2023년	⇨	2024년	※23년 대비 24년 매출액 63% 증가 약 3억5천만원
556,732,390원		911,901,238원	

○ 24년 의료사업부 파트별 수익 현황

	매 출	비 용	수 익
밝음의원(외래)	404,031,165	667,426,649	-263,395,484
재택의료	425,944,760	329,324,764	96,619,996
가정간호	911,901,238	659,434,557	252,466,681
합 계	1,741,877,163	1,656,185,970	85,691,193

- 밝음의원(외래) 비용에는 조합 이전 관련 비용(의료기기, 집기류 등)과 춘천 의료사업소 준비팀, 김종희 원장 연차수당&퇴직금 등 24년 한시적 비용으로 123,799,220원 반영.
- 위 한시적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외래의 경우 월평균 1,200여만원의 적자 지속해 옴.

○ 재택의료의 경우 방문진료의 꾸준한 수요와 장애인건강주치의 지속,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2년차)의 빠른 안정화로 월 평균 52명의 대상자에게 안정적인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함.

※재택의료서비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방문진료, 방문간호, 장애인건강주치의)

○ 가정간호의 경우 23년도 4명(원주2, 강릉1, 횡성1)에서 24년도 5명(원주2, 강릉2, 횡성1)으로 인력이 1명 더 늘어나고, 요양원, 가정의 꾸준한 가정간호 수요로 괄목할 만한 성장세를 보임.

○ 외래의 경우 의료진의 변화(김종희 원장의 퇴사와 공영훈 원장의 입사)와 신규 건물 이전 등 으로 환자층의 변화와 자리 잡음의 시간이 필요함에도 불구, 빠르게 안정화는 되었음. 하지만 여전히 조합원 이용률 정체, 신규 환자의 유입 정체, 외래 검진서비스 부족(초음파 등) 등 과제를 안고 있으며 문제점 개선을 위한 외래의 체질 변화와 조합원의 적극적인 이용 등 외래/재택의 균형을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임.

4.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침체 및 위기

○ 23년 대비 24년 매출현황

2023년	⇨	2024년	※23년 대비 24년 연매출액 20%↓ 감소, 약 4,800만원
240,008,430원		191,555,598원	

○ 재가방문요양센터((구)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는 4~5년 전부터 15명의 대상자를 기준으로 소폭 증가와 유지, 자연감소 등 을 반복하며 유지해왔으나, 24년에는 더이상 대상자 감소 후 회복하지 못하고 침체 됨.

1월 16명으로 시작하여 12월 최종 12명으로 월 평균 13명의 대상자가 유지되며 11개월 동안 사회복지사 가산(인건비 지원)을 받지 못하였을뿐만 아니라 매출액도 4,800만원으로 감소 함.

대상자가 감소하는 상황 속에서 조합원 대상 적극 홍보, 요양보호사·임직원 독려 등 대상자 발굴 및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였으나 극복하지 못함.

가산 사회복지사 1명이 중심을 잡아 운영하는 부분의 한계와 재가센터 전반전인 운영 책임자 부재에 대한 한계에 직면함.

○ 22년 ~ 24년 재가방문요양센터 비교

	2022년	2023년	2024년
대상자 (최대/최소)	최대 21명/최소 14명	최대 22명/최소 14명	최대 16명/최소 12명
매출	223,004,340원	240,008,430원	191,555,598원
비용	189,688,334원	217,298,330원	220,415,438원
수익	33,316,006원	22,710,100원	-28,859,840원

○ 조합이 추구하는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에 있어 의료와 돌봄이 연계 협력되는 시너지를 만들고 추진할 인력의 채용과 내부 시스템 재정비를 빠르게 해나가야 하며 경영 개선의 관제와 통합돌봄 실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함.

5. 보건복지부 감사 종료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3년 마다 보건복지부(위탁 : 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지원실)의 감사를 받도록 되어 있음. 감사 주요 사항은「조합원(임원, 대의원)현황 / 이사회, 총회 운영 현황 / 재산현황 / 예탁금 관리 현황 / 주 사업 수행실적 / 정관 및 내부 규약 규정 현황 등」으로 21년에 이어 24년에 감사를 받게 되었고 24년 5월 14일, 16일, 17일 3일 간 진행되었음.

주요 감사 지적 사항으로는 출자금 변경 등기 미준수, 조합원 이용률 미흡, 임원의 의무와 책임, 회계 관련 시정 및 주의를 받았으며 전반적으로 조합 운영에 대해 우수, 재무평가도 양호한 것 으로 감사가 종료되었음.

6. 조합원 건강 소모임 및 다양성 강좌 활성화 발판 마련

○ 그 간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함과 환경적 변화 등 의 사유로 소극적으로 움직이고 활성화되지 못하였던 조합원 중심의 건강 소모임을 “똑똑 건강반”으로 시도하고, 다양한 주제의 관심사(예방, 증진, 돌봄 등)들을 다양성 강좌로 풀어내는 등 조합원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는 활동으로의 발판을 마련 함.

○ 2024년 조합원 프로그램(활동) 참여 인원

-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원봉사자 활동 : 4명
- 건강소모임 “똑똑 건강반” : 3개팀, 16명
- 응급처치교육 : 상반기 10명, 하반기 16명
- 우리 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원주생협과 협업) : 18가족(72명)
 ·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11명)
-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총 4회차) : 24명, 15명, 21명, 11명
- 그림책으로 살펴보는 나의 삶, 나의 죽음(웰에이징, 웰다잉 교육) : 17명, 11명

7. 의료기반 통합돌봄 자원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시도 지속

○ 의료기반 통합돌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자원 구축과 지역사회 협력 확장 등 기존 사업소(밝음의원, 재가방문요양센터)와 시너지를 내며 성장할 수 있는 일상돌봄 서비스바우쳐사업, 건강한 먹거리(균형영양식)를 통한 건강 취약계층의 먹거리 응원, 선순환되는 돌봄의 확장을 위한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 등 의 시도를 꾀함.

○ 일상돌봄서비스 바우쳐 사업 실시

- 일상돌봄서비스는 돌봄이 필요한 청중장년(질병, 부상, 고립)과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에게 재가 돌봄·가사, 병원 동행,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서비스로 조합에서는 재가돌봄서비스를 제공.
- (협력)일상돌봄서비스 서비스 제공기관
 총괄(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가사지원(사회적협동조합행복한돌봄), 병원동행((주)우리마더), 심리지원(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주거환경안전관리(누리집수리센터)

○ ㈜한국메디칼푸드 업무협약(균형영양식)

- “1인 가구의 증가와 고령화의 가속도로 인해 스스로 챙겨 먹기 힘들고 영양 불균형으로 일어날 수 있는 건강권의 사각지대에 있어 지역의 건강 약자 및 조합원들이 건강한 먹거리로 건강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추진 함.
 *균형영양식이란? 본래 어떤 이유(수술, 거동 불편, 삼킴 장애, 연하 곤란 등)로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없는 환자에게 생명 활동에 필요한 필수 영양소를 모두 다 함유한 제품
- 주요협약내용 : 메디푸드(균형영양식) 제품 후원 및 조합원 할인 제공

○ 모두웰 후원회(행정 지원)

- 모두웰후원회는 음식 섭취가 어려운 이웃에게 균형영양식품(유동식)을 통한 먹거리 돌봄 실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코자 발족 함.(발족일 : 9월 30일)
- 모두웰 후원회 후원자 : 5명
- 후원 프로세스 : 대상자 발굴, 추천 의뢰 → 1달 지원(경과 확인) → 3달 지원(경과확인) → 종료 또는 유지
- 협력단체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구성

-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란? 치매나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이 필요한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추진위원회 : 천혜란 위원장, 최효심 위원, 박준영 위원

8. 지역사회 內 다양한 영역에서의 활동 인정

○ 2024 원주시 ”민.관.학 협력 우수사례“ 공모전 대상 수상

- 주최 :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원주 관 內 18개의 사례 접수, 조합은 ”위기관리분야“ 제출
- 수상내용 : 자활근로참여주민의 “건강자립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복지기관에 방문형 건강관리의 선도적 모델을 추진하고 건강으로부터 고립된 건강 약자의 의료접근성 향상과 건강 증진 도모를 통하여 건강불평등을 해소.

○ 2024 사회적경제컴퍼니 ESG 활동 우수사례 [사회적책임 부문 ”최우수상“ 수상]

- 주최 : 원주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 공동주관 :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소셜캠퍼스 온 강원, 한국광해광업공단
- 수상내용 : 재택 의료 서비스(방문 진료·간호), 건강 캠페인 등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돕기 위해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추진, 사업의 하나로 지난해 지역 내 취약계층 234명에게 월평균 24건(연 289건)의 방문 진료를 시행, 장애인 46명을 위한 건강주치의 사업 운영

○ 2024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우수기관 선정

- 24년 참여기관 중 운영실적이 높은 기관은 25년도 사업 연속 참여시 심사가 면제됨. 강원에서는 유일하게 밝음의원이 심사면제기관으로 지정 받아 지속참여신청서 제출로 완료

9. 손익계산

매 출 액 :	1,865,351,980원	
판 관 비 :	2,020,955,359원	(당기 상품매출원가 145,736,639원 합산)
영 업 손 실 :	155,603,379원	
영 업 외 수 익 :	554,304,660원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99,271,650원 합산)
영 업 외 비 용 :	337,660,787원	
당 기 순 이 익 :	61,040,494원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은 익금불산입으로 세무조정,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감소 처리하므로 산출 법인세액은 미발생

○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미합산시 당기순손실 138,231.156원 발생

■ 사회적 성과 보고

2024년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

<table>
<tr><th>구분</th><th>내용</th></tr>
<tr><td>측정기준</td><td>
<table>
<tr><th rowspan="2">지표</th><th rowspan="2">세부항목</th><th rowspan="2">추진 활동내용</th><th colspan="5">등급(상반기 평가시 50% 적용)</th></tr>
<tr><th>S</th><th>A</th><th>B</th><th>C</th><th>D</th></tr>
<tr><td rowspan="2">지역
사업</td><td>의료사업</td><td>의료서비스 제공</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노인요양사업</td><td>돌봄서비스 제공</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일자리
창출</td><td>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td><td>취약계층 고용비율
(취약/전체/비율)</td><td>30%
이상</td><td>29%
~25%</td><td>24%
~20%</td><td>19%
~11%</td><td>10%
이하</td></tr>
<tr><td rowspan="3">기타
사업</td><td>교육훈련비</td><td>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훈련 비용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협동조합간협동</td><td>네트워크
업무협력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r><td>홍보 및
지역사회기여</td><td>가치 실현 등</td><td>90%
이상</td><td>89%
~80%</td><td>79%
~70%</td><td>69%
~60%</td><td>59%
이하</td></tr>
</table>
</td></tr>
<tr><td>성과보고</td><td>
<table>
<tr><th>지표</th><th>세부항목</th><th>추진 활동내용</th><th>목표
(예산액 등)</th><th>결과
(결산액 등)</th><th>달성
율</th><th>등급</th></tr>
<tr><td rowspan="2">지역
사업</td><td>의료사업</td><td>의료서비스 제공</td><td>1,811,833,000</td><td>1,674,206,050</td><td>92%</td><td>S</td></tr>
<tr><td>노인요양사업</td><td>돌봄서비스 제공</td><td>262,241,000</td><td>191,145,930</td><td>79%</td><td>B</td></tr>
<tr><td>일자
리
창출</td><td>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td><td>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취약/전체/비율)</td><td>16명/39명/41%
(23. 12. 기준)</td><td>23명/41명/56%
(24. 12. 기준)</td><td>143%</td><td>S</td></tr>
<tr><td rowspan="3">기타
사업</td><td>교육훈련비</td><td>임직원 및 조합원
교육 훈련 비용 등</td><td>18,992,000</td><td>5,808,540</td><td>30%</td><td>D</td></tr>
<tr><td>협동조합간협동</td><td>네트워크
업무협력 등</td><td>14,343,000</td><td>20,467,130</td><td>142%</td><td>S</td></tr>
<tr><td>홍보 및
지역사회기여</td><td>가치 실현 등</td><td>4,500,000</td><td>14,232,510</td><td>316%</td><td>S</td></tr>
</table>
</td></tr>
<tr><td>담당자</td><td>
<table>
<tr><td>소속</td><td>사무국</td><td>담당자명</td><td>신승훈, 신현경, 조주희</td></tr>
</table>
</td></tr>
<tr><td>내부운영
의
사회가치</td><td>
<table>
<tr><td>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td><td>1.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근로자(23)명÷전체 유급근로자(41명]×100=56%
- 산재보험 가입 기준(고령자 22명, 장애인 1명)
2. 취약계층 임금 수준
- 취약계층 근로자(23명) 급여 총액 602,359천원
※일반(9명) : 479,658천원
※요양보호사(14명) : 122,701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월평균 급여 2,182천원
※일반(9명) : 4,441천원</td></tr>
</table>
</td></tr>
</table>

구분	내용	
		※요양보호사(14명) : 730천원
	근로자 보건 및 안전	1. 임직원 진료비 지원(10월까지) : 445건, 2,657천원 2. 예방접종(독감) 지원 : 68명(임직원 및 가족 포함, 직원가 2만원 / 정상가 4만원)
	고용의 질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1차 개정)2019년 7월 12일 - (2차 개정)2020년 6월 19일 - (3차 개정)2021년 4월 1일 - (4차 개정)2023년 3월 16일 2. 직원상조회 운영 - 2019년 1월부터 시작 - (초기) 생일 케이크, 5만원 상품권(온누리, 강원상품권) 전달 - (현재) 생일24 가입, 맞춤형 생일 선물 지원 ※10명에게 맞춤형 생일 선물 지급 - 요양보호사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예산으로 해당 월에 1만원 상품권 전달 3. 상여금 지급 - 26,800천원의 상여금 지급 - 지급 대상 : 임원 및 전직원 ※조합 상근직 : 명절(설날, 추석) 각 20만원, 여름휴가 각 20만원, 상반기 성과급 각 20만원 ~ 30만원 ※조합 상근직(요양보호사) : 명절(설날, 추석) 2만5천원 ~ 5만원 4. 조합원 및 직원 대상 교육.정보 제공 실적 - 조합원 대상(조직활동비) 1월 10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65천원 1월 23일, 건강반장, 24-1차 집담회, 62천원 2월 16일, 건강반장, 24-2차 집담회, 68천원 3월 06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69천원 3월 15일, 건강반장, 24-3차 집담회, 56천원 4월 19일, 건강반장, 24-4차 집담회, 74천원 5월 15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52천원 5월 20일, 건강반장, 24-5차 집담회, 72천원 6월 21일, 건강반장, 24-6차 집담회, 56천원 6월 27일, 건강수다회, 위기대응능력강화교육(응급처치) 204천원 7월 05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오리엔테이션, 66천원 7월 19일, 건강반장, 24-7차 집담회, 65천원 8월 26일, 건강반장, 24-8차 집담회, 51천원 8월 28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교육, 99천원 9월 20일, 건강반장, 24-9차 집담회, 58천원 10월 16일 ~ 11월 6일, '돌봄의모든 것' 강좌, 905천원 10월 22일, 건강반장, 24-10차 집담회, 88천원 10월 30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간담회, 31천원 11월 11일, 건강수다회, 위기대응능력강화교육(응급처치) 183천원 11월 18일, 건강반장, 24-11차 집담회, 75천원 11월 20일 ~ 27일, 건강수다회, 웰에이징 강좌, 702천원

구분	내용	
		12월 10일, 건강반장, 24-12차 집담회, 85천원 12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3건) 사업 정산, 1,550천원 - 직원 대상(교육훈련비) 2월 23일, 2024년 제17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 (공영훈), 90천원 2월 23일, 2024년 제22차 대한재활의학회 근막통유발점 주사자극 치료 연수 교육(공영훈), 100천원 3월 29일, 재택의료 FOCUS ON 교육(공영훈), 400천원 4월 22일, 2024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과 춘계연수강좌 (권상옥, 염은경), 130천원 5월 10일,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김지영), 56천원 7월 02일, 간호사 보수교육(이선영), 40천원 7월 26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3명), 285천원 9월 28일,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 및 실무자 워크샵(2명), 20천원 12월 31일, 간호사 보수교육(염은경, 장원주) 80천원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 가치	이용자	- 아프고 난 이후의 “치료 중심 의료”보다 아프기 전 “예방의료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감소 유도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삶 도모 - 분절되어 있는 의료와 노인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준)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와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건강한 일자리를 양성
	기타	

■ 2024년 사업결산

1. 조합 경영 보고

구분	항목	조합-사무국	밝음의원	재택의료	가정간호	재가방문 요양센터	계
매출 (a)	주수입 (매출액및외부사업비)	282,020,265	386,136,410	376,258,810	911,810,830	191,145,930	2,147,372,245
	기타수입 (영업외수익)	4,931,964	17,894,755	49,685,950	90,408	409,668	73,012,745
	매출계	**286,952,229**	**404,031,165**	**425,944,760**	**911,901,238**	**191,555,598**	**2,220,384,990**
비용 (b)	인건비 (업체부담4대보험료포함)	326,926,820	375,690,480	279,357,400	468,769,630	198,986,640	1,649,730,970
	(인건비차감)	-179,199,370		-33,999,200			-213,198,570
	재료비 └의약품·의료소모품		104,583,239	2,776,101	126,531,714		233,891,054
	관리비 └판매비와관리비	46,194,356	172,361,015	46,414,523	64,133,213	21,428,798	350,531,905
	기타비용 └영업외비용	288,092,932	14,791,915	34,775,940			337,660,787
	비용계	**482,014,738**	**667,426,649**	**329,324,764**	**659,434,557**	**220,415,438**	**2,358,616,146**
매출(a)-비용(b)		**-195,062,509**	**-263,395,484**	**96,619,996**	**252,466,681**	**-28,859,840**	**-138,231,156**
전년도 외상매입금 잔액			24,309,973				24,309,973
금년도 매입액			133,107,504				133,107,504
금년도 결제액			132,672,485				132,672,485
금년도 외상매입금 잔액			24,744,992				24,744,992
전년도 차입금 잔액		52,983,696					52,983,696
금년도 차입액							
금년도 상환액		12,805,560					12,805,560
금년도 차입금 잔액		40,178,136					40,178,136
출자금 신규 및 증좌		9,716,500					9,716,500
출자금 반환		31,130,000					31,130,000
출자액		-21,413,500					-21,413,500

○ 2024년 한시적 비용(밝음의원 해당) : 123,799,220원
- 2024/01~04 춘천 의료사업소 준비팀 경비 : 41,742,470원
- 김종희 원장님 연차수당 & 퇴직금 : 68,097,770원
- 밝음의원 이전 관련 비용 처리액 : 13,958,980원 (고정자산 처리액은 77,515,600원)

○ 차입금 총액에는 이자 포함(원금 38,566,397원+이자 1,611,739원)

○ 인건비는 사업소 관여비율에 따라, 판관비는 사업소 사용 면적 등에 따라 차등 적용

2. 사업소별 세부 내용

1) 밝음의원

구분	밝음의원 매출							
	밝음의원 (급여)	밝음의원 (비급여)	검진수입 (건강+ 암)	촉탁의	장애인 의료비	금연 지원금	예방접종	합계
1월	20,682,890	1,521,440	328,070	4,689,600	6,200	92,570	451,030	27,771,800
2월	18,403,980	3,386,750	0	4,711,660	699,800	94,280	215,710	27,512,180
3월	15,967,350	3,591,800	304,680	4,396,300	15,200	55,450	294,150	24,624,930
4월	20,257,400	3,820,700	263,480	5,022,000	320,450	91,580	39,220	29,814,830
5월	20,689,710	6,218,300	278,070	4,386,260	47,550	75,490	58,830	31,754,210
6월	18,320,330	5,000,300	473,180	4,607,700	304,550	95,620	58,830	28,860,510
7월	20,479,780	9,866,120	789,050	5,339,910	70,800	63,000	19,610	36,628,270
8월	17,599,270	4,279,700	151,140	4,736,920	236,700	72,790	19,610	27,096,130
9월	15,498,150	6,580,120	273,040	4,794,770	0	85,370	0	27,231,450
10월	19,910,730	13,900,180	465,260	4,721,780	95,600	54,460	6,216,370	45,364,380
11월	15,991,350	9,553,000	819,920	4,814,850	0	95,620	14,629,060	45,903,800
12월	19,431,690	8498,800	379,040	4,711,660	0	42,870	509,860	33,573,920
월평균	**18,602,719**	**6,351,434**	**377,077**	**4,744,450**	**149,737**	**76,591**	**1,876,023**	**32,178,034**
총계	**223,232,630**	**76,217,210**	**4,524,930**	**56,933,410**	**1,796,850**	**919,100**	**22,512,280**	**386,136,410**

(1) 비급여진료 : 일반진료

(2) 건강검진수입 = 건강검진+ 암검진

(3) 촉탁기관현황 : 보훈(48), 로얄(48), 천사(45), 산고대(25)

2) 재택의료센터 및 가정간호센터

구분	재택의료센터 매출						가정간호 매출
	재택의료 시범사업	왕진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의사소견서	방문간호 지시서	합계	
1월	19,385,030	3,436,910	8,072,790	499,640	0	31,394,370	65,960,340
2월	18,051,160	3,357,740	8,625,090	756,100	68,970	30,859,060	57,043,780
3월	18,159,970	5,196,020	12,227,510	528,750	0	36,112,250	60,258,120
4월	18,313,920	4,271,300	13,020,810	808,580	0	36,414,610	66,297,270
5월	17,858,100	1,813,690	9,614,720	0	0	29,286,510	75,686,250
6월	17,548,100	2,873,640	7,524,620	845,970	0	28,792,330	77,466,060
7월	18,242,480	2,936,990	10,530,200	528,340	0	32,238,010	81,502,810
8월	18,632,020	3,223,060	7,691,820	946,470	137,940	30,631,310	81,090,360
9월	16,147,240	2,461,420	8,581,470	597,480	0	27,787,610	83,090,210
10월	17,281,820	5,876,740	7,363,720	740,250	0	31,262,530	89,848,060
11월	19,020,780	3,864,760	6,454,630	740,240	0	30,080,410	83,369,240
12월	20,614,430	2,984,200	7,151,220	649,960	0	31,399,810	90,198,330
월평균	**18,271,254**	**3,524,705**	**8,904,883**	**636,815**	**17,242**	**31,354,900**	**75,984,235**
총계	**219,255,050**	**42,296,470**	**106,858,600**	**7,641,780**	**206,910**	**376,258,810**	**911,810,830**

3) (일반)방문진료 현황 : 총 299건 / 월 평균 25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5	19	37	33	18	19	33	22	16	30	24	23	299

4) 장애인주치의 현황(대상자 : 49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괄평가	9	2	5		3	5	2	3	14	6	2	2
중간점검표	-	-	1	1	1	-	-		-	-	1	-
방문진료	13	5	21	2	2	14	15	9	17	16	12	15
방문간호	37	11	37	5	28	21	33	32	32	29	26	28
환자관리료	17	3	3	2	10	6	13	13	14	5	1	1

5)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등록대상자 61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방문진료	57	51	52	57	48	52	52	43	51	48	54	54
방문간호	120	121	117	126	120	116	128	97	113	107	114	111

6)가정간호센터 현황(건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강릉	요양원	295	237	317	336	469	487	537	506	517	538	538	529	5,306
횡성	요양원	224	204	221	234	239	235	232	233	229	237	231	272	2,791
원주	요양원	484	452	463	496	492	470	486	508	593	520	552	636	6,152
	재가	19	8	37	18	23	30	23	17	13	20	41	40	289

* (24년 말 기준)원주 협약기관(26개소)
은혜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보훈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로얄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실버요양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상애 양로원, 행복의집, 행복둥지요양원, 보노마더스요양원, 상지요양센터, 가족요양원, 바른요양원, 보금자리요양원, 사랑마을요양원,

* (24년 말 기준)강릉 협약기관(33개소)
참좋은마을요양원, 다금요양원, 강릉부모사랑, 회산부모사랑,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마루요양원, 강릉 사랑의 뜰안 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갈바리 노인 요양원, 소돌요양원, 주문진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햇빛요양원, 강릉천사요양원, 강릉노인요양시설, 드림요양원, 솔향의 집, 실버하우스, 율곡요양원, 장수마을요양원, 정한요양원, 치유재활요양원, 한빛마을요양원, 해드림, 효도마을

* (24년 말 기준)횡성 협약기관(18개소)
횡성매화실버요양원, 횡성군소규모요양원, 한결공동생활, 스마일카운티양로원, 스마일카운티요양원, 아름다운 요양원, 횡성재가노인, 골든포레스트, 횡성행복마을, 목천요양원, 시애노전문요양센터, 원주축복의집, 별자리요양원, 둔내요양원, 엘림요양원, 청일요양원,
초원의 집, 횡성효요양원

② 치료-검사-검진 세부 현황(건)

월	골밀도	X-RAY	검진
1월	8	83	2
2월	9	43	18
3월	7	40	13
4월	8	31	11
5월	15	86	20
6월	16	49	26
7월	16	173	139
8월	13	35	12
9월	15	43	22
10월	15	64	26
11월	15	68	32
12월	15	54	22
합계	152	769	343

③ 환자 수 등 세부 내역(명) ***외래, 재택의료(방문진료, 가정간호, 촉탁) 총환자수**

	환자수									
	초진	재진	계	보험		빈의자	보호	일반	계	노숙인 쉼터
				55세 미만	55세 이상					
1월	153(27)	2,321	2,474	191	1,202	62	618	401	2,474	65
2월	221(40)	2,010	2,231	166	2,065	63	615	251	3,160	45
3월	163(38)	2,134	2,297	148	2,149	44	618	277	3,236	53
4월	110(46)	2,312	2,422	213	2,206	44	650	422	3,535	13
5월	178(59)	2,439	2,617	180	2,236	69	718	423	3,626	16
6월	182(34)	2,195	2,377	141	2,233	49	666	377	3,466	13
7월	233(93)	2,532	2,765	170	2,008	54	736	492	3,460	31
8월	158(34)	2,360	2,518	172	2,346	58	707	316	3,599	20
9월	180(34)	2,396	2,450	428	2,022	55	492	422	3,419	17
10월	265(87)	2,399	2,664	750	2,573	64	443	1,062	4,892	16
11월	167(74)	2,599	2,766	254	2,512	46	647	691	4,150	23
12월	141(54)	2,682	2,823	213	2,610	49	699	589	4,160	27
합계	2,151(620)	28,379	30,404	3,026	26,162	657	7,609	5,723	43,177	339

※취약계층 : 55세 이상, 장애인/한부모가정, 빈의자(빈곤층), 보호, 노숙인 쉼터 (최양업토마스의집) 포함 ※초진()의 수는 외래초진임.

- 요양원 촉탁(명)

	요양원				
	천사	산고대	보훈	로얄	계
1월	69	13	110	146	338
2월	70	18	163	149	400
3월	100	13	133	133	379
4월	110	17	140	153	420
5월	75	15	178	137	290
6월	113	16	149	124	402
7월	60	48	145	171	424
8월	92	29	175	162	458
9월	116	24	155	179	474
10월	61	25	170	106	362
11월	78	18	132	196	424
12월	78	28	178	181	465
합계	1,022	264	1,828	1,837	4,836

- 조합원 이용 현황(명) : 조합원(조합원), 비조합원(비조), 준조합원(준조)

	조합원수				검진건수			골밀도			x-ray
	조합원	비조	준조	계	검진	일반	계	조합원	비조	계	계
1월	471	1,929	74	2,474		2	2	2	6	8	83
2월	285	1,890	56	2,231	4	14	18	5	4	9	43
3월	317	1,917	63	2,297	7	6	13	4	3	7	40
4월	380	2,028	14	2,422	4	7	11	4	4	8	31
5월	421	2,179	17	2,617	10	10	20	9	6	15	86
6월	355	1,999	20	2,374	18	8	26	11	5	16	49
7월	422	1,664	92	2,178	27	112	139	9	7	16	173
8월	361	2,134	23	2,518	4	8	12	12	1	13	35
9월	353	2,071	26	2,450	15	7	22	7	5	12	43
10월	673	2,526	124	3,323	19	7	26	11	4	15	64
11월	393	2,316	57	2,766	27	5	32	10	5	15	68
12월	378	2,418	27	2,823	16	6	22	10	5	15	54
합계	4,809	25,071	593	30,473	151	192	343	94	55	149	769

- 치료 현황(명)

	기타					골다공증		호르몬		
월	치료	영양제	타나민	하이알	레시노원	본비바	프롤리아	푸라몬	예나스테론	합계
1월	73	16	21	16	2	0	10	13	13	164
2월	57	13	22	7	5	3	12	6	5	130
3월	75	21	12	6	0	2	16	6	0	138
4월	104	33	6	4	1	2	22	5	13	190
5월	103	33	15	13	1	4	14	7	2	192
6월	74	29	4	2	0	3	18	6	5	141
7월	80	28	10	4	2	2	17	1	10	154
8월	67	30	7	2	0	8	11	0	1	126
9월	55	32	15	3	0	4	13	2	1	125
10월	68	19	12	6	3	1	15	1	1	126
11월	68	20	14	7	1	2	11	3	0	126
12월	57	23	25	4	0	8	22	7	4	150
월 평균	73명	24명	13명	6명	1명	3명	15명	4명	4명	146명

④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구분	요양서비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장기근속수당	보수교육 급여	소계	원주시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등	총계
1월	19,387,620	223,500	0	260,000	0	19,871,120	0	19,871,120
2월	14,653,180	238,350	0	260,000	0	15,151,530	0	15,151,530
3월	13,562,150	47,670	0	160,000	0	13,769,820	0	13,769,820
4월	15,534,710	0	0	260,000	0	15,794,710	0	15,794,710
5월	16,359,130	0	0	260,000	0	16,619,130	0	16,619,130
6월	15,708,950	0	0	160,000	285,000	16,153,950	380,240	16,534,190
7월	16,694,880	0	0	260,000	0	16,954,880	459,460	17,414,340
8월	15,793,330	0	0	260,000	0	16,053,330	620,700	16,674,030
9월	14,114,260	0	0	260,000	0	14,374,260	558,630	14,932,890
10월	14,441,760	0	0	200,000	0	14,641,760	517,250	15,159,010
11월	13,004,190	0	0	160,000	0	13,164,190	0	13,164,190
12월	14,926,170	0	0	260,000	0	15,186,170	874,800	16,060,970
총계	184,180,330	509,520	0	2,760,000	285,000	187,734,850	3,411,080	191,145,930

1)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구분(월)		방문요양(명)	방문간호(명)	방문목욕(명)
월별 이용 인원수 (연인원/명)	1월	16	-	1
	2월	14	-	1
	3월	14	-	1
	4월	13	-	-
	5월	14	-	-
	6월	14	-	-
	7월	14	-	-
	8월	13	-	-
	9월	13	-	-
	10월	13	-	-
	11월	12	-	-
	12월	12	-	-
월평균인원		13명	-	1명

2) 방문요양서비스 대상자 실 인원(요양+ 간호+ 목욕)

월별 서비스 대상자 인원(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17	15	15	13	14	14	14	13	13	13	12	12

3) 방문요양 및 간호서비스 신규계약 및 종결현황

구 분	신규계약	해지(시설입소포함)	사 망
방문요양	김○수, 김○순, 이○만 신○순, 문○석	윤○재, 김○흥, 이○순, 김○섭, 최○녀, 정○택, 서○식, 김○배	김○식
방문간호	-	-	-

3. 조합원 이용현황

구분	밝음의원			
	조합원+준조	비조합원	소계	조합원이용률(%)
1월	545	1,929	2,474	22
2월	341	1,890	2,231	15.2
3월	380	1,917	2,297	16.5
4월	394	2,028	2,422	16.2
5월	438	2,179	2,617	16.7
6월	375	1,999	2,374	15.7
7월	514	1,664	2,178	23.5
8월	384	2,134	2,518	15.2
9월	401	2,049	2,450	16.3
10월	797	2,526	3,323	23.9
11월	450	2,316	2,766	16.2
12월	405	2,418	2,823	14.3
총계	5,424명	25,049명	30,473명	17.64%

4. 출자금 현황

구분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1월	130,000	0 (이관) 1,090,000	-960,000	292,410,374
2월	80,000	50,000	30,000	292,440,374
3월	460,000	0	430,000	292,900,374
4월	310,000 (재이관) 2,726,500	3,750,000	-713,500	292,186,874
5월	1,730,000	50,000	1,680,000	293,866,874
6월	1,040,000	50,000	990,000	294,856,874
7월	340,000	0	340,000	295,196,874
8월	410,000	100,000	310,000	295,506,874
9월	650,000	50,000	600,000	296,106,874
10월	920,000	2,050,000	-1,130,000	294,976,874
11월	420,000	23,150,000	-22,730,000	272,246,874
12월	500,000	790,000	-290,000	271,956,874
누계	9,716,500	31,130,000	-21,443,500	

※ (이관) 1,090,000원 및 (재이관) 2,726,500원 : 아이쿱 관련 출자금 이관액, 2023년~2024년 아이쿱으로 이관한 출자금 총액은 3,252,000원(1차 2,162,000원 + 2차 1,090,000원), 차액 525,500원 중 520,000원은 아이쿱으로부터 미이관된 출자금이며(이광희 이사장), 나머지 잔액은 월조합비 미입금, 매장 이용 등으로 발생한 조합원별 출자금 증감액

5. 조합원 현황

1) 탈퇴 : 17명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4/02/29	임은경	220006	50,000	이용안함
2	2024/04/19	김경숙	200057	50,000	거주지 이전
3	2024/05/10	도수연	230010	50,000	이용 안함
4	2024/06/28	홍종덕	210004	50,000	거주지 이전
5	2024/08/13	이미자	230009	50,000	거주지 이전
6	08/16	조귀순	230053	50,000	이용안함
7	2024/09/02	김옥화	220057	50,000	사망
8	2024/10/08	권경희	200047	50,000	이용안함
9	2024/11/13	장태선	230004	50,000	이용안함
10	11/18	우창호	20076	100,000	거주지 이전
11	2024/12/04	곽선미	100021	90,000	거주지 이전
12	12/16	김지영	200042	50,000	이용안함
13	12/16	오영식	20020	100,000	거주지 이전
14	12/19	정병용	220031	50,000	사망
15	12/24	김종구	20004	300,000	사망
16	12/31	강은자	20108	100,000	거주지 이전
17	12/31	신태숙	140160	50,000	이용안함
합계				1,290,000	

2) 제명조합원(환급), 감좌 신청 : 4명 (제명(환급) 1명+ 감좌 신청 3명)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4/02/26	김영희	110375	30,000	제명대상, 즉시 환급
2	2024/04/25	최정환	20112	3,700,000	감좌
3	2024/10/22	조세훈	30069	2,000,000	감좌
4	2024/11/26	공인표	20315	23,000,000	감좌
합계				28,730,000	

3) 조합원 재가입 내역 : 1명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4/03/15	윤정진	60022	50,000	2018/12 제명 (30,000원) 2024/03 복원 (20,000원)
합계				50,000	

4) 조합원 지분 양도 : 2명 (사망 및 기타 사유)

조합원 지분양도 현황							
NO.	양도일	양도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양도금액	양수 조합원명	관계	비고
1	2024/04/29	고지곤	70135	50,000	고보경	자	사망
2	2024/11/25	최순례	100358	50,000	온경덕	배우자	사망

6. 이사회 주요 안건

NO.	개최일	주요 심의안건
제195차	24. 01. 11	(긴급 의안) 의료사협 요양시설 토지 매입 실패의 건 제1호 의안 2023년 12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 제2호 의안 춘천지역 의료기관 개설 승인의 건
제196차	24. 02. 14	제1호 의안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 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제197차	24. 02. 29	제1호 의안 (아이쿱)신규 조합비 조합원 가입 및 이용 승인 철회의 건 제2호 의안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의 건
제198차	24. 04. 18	제1호 의안 2024년 1월 ~ 3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 제2호 의안 연대 협력 중단에 따른 후속 조치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조합원 활동지원 상임이사(김유미) 임명 철회의 건 제4호 의안 상임 임원 호선 및 보수 결정의 건 제5호 진료지원실 직원 채용의 건

제199차	24. 06. 17	제1호 의안 2024년 4월 ~ 5월 신규 조합원 및 가족 조합 이용 승인 건 제2호 의안 (협동모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범사업 추진의 건 제3호 의안 상반기 “대의원 소통의 날” 추진의 건 제4호 의안 상임임원 보수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제5기 대의원” 선출 및 활성화를 위한 TF팀 승인의 건
제200차	24. 09. 04	제1호 의안 2024년 6월 ~ 8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제5기 임원 비전 워크샵 및 임직원 견학 진행의 건 제3호 의안 공생추진위원회 사업계획(안) 및 예산 승인의 건 제4호 의안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제5호 의안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채용의 건
제201차	24. 11. 12	제1호 의안 2024년 8월 ~ 10월 신규 가입 조합원의 가구원 이용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2024 상반기 감사보고서 승인의 건 제3호 의안 제5기 대의원 선출의 건 제4호 의안 예산 항목 간 조정(수정)의 건 제5호 의안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건 제6호 의안 연속 3회 불참 이사 불참사유서 동의 및 해임안(대의원 총회)상정의 건

7. 2024년 예산 대비 집행 실적(12월 말 기준)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1.매출액	2,074,374,000	1,865,351,980	89.9%	
의료사업부	1,811,833,000	1,674,206,050	92.4%	
밝음의원	738,839,000	386,136,410	52.2%	
진료수입	533,368,000	223,232,630	41.8%	
진료수입(비급여)	105,151,000	76,217,210	72.4%	
건강검진수입	3,441,000	4,524,930	131.5%	
촉탁의(계약의)	65,924,000	56,933,410	86.3%	
기타수입	30,955,000	25,228,230	81.5%	
장애인의료비	1,002,000	1,796,850	179.3%	
금연지원금	455,000	919,100	202.0%	
예방접종	29,498,000	22,512,280	76.3%	
재택의료센터	222,794,000	376,258,810	168.8%	
재택의료시범사업	215,416,000	216,866,640	100.6%	
왕진	0	42,825,950		2024년부터 의원 매출과 구분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0	108,717,530		2024년부터 의원 매출과 구분
기타수입	7,378,000	7,848,690	106.3%	
의사소견서	7,065,000	7,641,780	108.1%	
간호지시서	313,000	206,910	66.1%	
가정간호	850,200,000	911,810,830	107.2%	
원주센터	451,800,000	414,615,830	91.7%	
강릉센터	199,200,000	302,982,650	152.1%	2024/04~ 1인 증가
횡성센터	199,200,000	194,212,350	97.5%	
우리동네	0	0		
재가장기요양사업부	262,241,000	191,145,930	72.8%	
재가요양수입	259,121,000	188,100,930	72.5%	
방문요양	258,660,000	187,591,410	72.5%	
방문간호	0	0		2024년 휴면 상태
방문목욕	461,000	509,520	110.5%	2024/02까지 운영
기타수입	3,120,000	3,045,000	97.6%	장기근속수당 등
조합 교육비 수입	300,000	0		
2.매출원가	0	0		
3.수입(매출총이익)	2,074,374,000	1,865,351,980	89.9%	
4.지출	2,095,734,000	2,020,955,359	96.4%	
관리비	2,062,220,000	1,994,890,139	96.7%	
인건비	1,527,715,000	1,445,972,150	94.6%	
임원보수 (2명)	25,200,000	30,000,000	119.0%	(급여) 9,700천원 / (상여) 7,800천원 (재가) 2024/08~ 시설장 급여(2,500천원) 지급 시작
직원급여 (의원및조합)	1,169,712,000	1,115,779,520	95.3%	
의원 (11명)	711,608,000	348,203,550	48.9%	2024년부터 재택 인건비와 구분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재택의료 (4명)	0	257,221,880		2024년부터 의원 인건비와 구분
			(인건비 지원)	(33,999,000)	(33,999,200)	100.0%	(농촌) 1,300천원×11회 (네카) 1,641천원×12회
			가정간호 (5명)	382,590,000	439,963,090	115.0%	2024/04~ 1인 증가
			조합 (3명)	120,313,000	115,190,200	95.7%	
			통합춘천 (3명)	178,344,000	168,399,370	94.4%	
			(인건비 지원)	(189,144,000)	(179,199,370)	94.7%	(통합춘천) 14,862천원×12회 (통합춘천/수행기관지원) 900천원×12회
			직원급여 (길동무)	217,225,000	175,140,560	80.6%	
			사회복지사 (1명)	30,720,000	27,440,250	89.3%	
			요양보호사 (14명)	186,505,000	147,700,310	79.1%	
			퇴직급여 및 연차수당	115,578,000	125,052,070	108.2%	김원장님 퇴직금(47,466천원) 포함
			일반경비	308,028,000	315,026,935	102.2%	
			복리후생비	137,689,000	128,119,017	93.0%	
			4대보험료	140,219,000	115,612,320	82.4%	(업체부담분)
			(4대보험료 지원)	(18,030,000)	(15,454,930)	85.7%	(통합춘천/업체부담분)
			임직원 회식 및 다과	9,000,000	15,144,950	168.2%	퇴직자 송별회, 송년회 등 행사 증가
			임직원 선물 (명절 등)	2,400,000	4,145,420	172.7%	명절 외 행사 선물 증가
			임직원 진료비	3,000,000	2,657,200	88.5%	
			임직원 경조사비	400,000	1,168,900	292.2%	
			임직원 피복비	500,000	1,546,250	309.2%	직원 유니폼 구매 증가
			기타 복리후생비	200,000	3,298,907	1,649.4%	2024/05~ 강원장님 정기주차(1,080천원) 등
			여비교통비	6,000,000	7,877,370	131.2%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3,600,000	5,970,230	165.8%	거래처 경조사비(1,200천원) 의원이전관련 접대비 증가
			통신비	4,334,000	6,165,680	142.2%	
			전화 및 인터넷	2,220,000	2,394,730	107.8%	(전화/17회선 인터넷/2회선)
			업무용 휴대폰	924,000	1,099,040	118.9%	
			법인숙소	470,000	484,080	103.0%	2024/02 퇴거
			기타 통신비	720,000	2,187,830	303.8%	이전 개소식 관련 안내우편발송 증가 무선결제단말기 사용료(281천원) 증가 휴대용와이파이 사용료(176천원) 추가
			수도광열비	10,866,000	8,668,324	79.7%	
			전기요금	10,320,000	8,258,870	80.0%	
			상하수도요금	300,000	201,584	67.1%	
			법인숙소 련	132,000	131,870	99.9%	2024/02 퇴거
			난방용 가스 등	114,000	76,000	66.6%	
			세금과공과	900,000	447,310	49.7%	(원주시의사회) 120천원 (법인차량관련) 200천원 (각종세금 등) 94천원
			감가상각비	36,184,000	33,929,834	93.7%	신축 이전으로 의료기기, 사무집기 등 고정자산 증가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지급임차료	9,510,000	9,085,780	95.5%	
			의원 임차료	6,846,000	6,852,000	100.0%	~2024/03까지 해당
			법인숙소	600,000	300,000	50.0%	2024/02 퇴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1,716,000	1,716,000	100.0%	
			의원 정수기 등	348,000	217,780	62.5%	
			수선비	770,000	386,000	50.1%	
			보험료	4,764,000	5,346,250	112.2%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2,623,000	2,631,880	100.3%	
			의료배상공제 등	1,588,000	2,497,070	157.2%	(의사) 1,522천원 (방문간호사) 534천원 (요양보호사) 440천원
			기타 보험료	553,000	217,300	39.2%	(화재공제) 170천원 (기타) 46천원
			차량유지비	27,430,000	33,818,188	123.2%	
			법인차량 정기주차료	4,080,000	4,120,000	100.9%	
			법인차량 유류비	21,350,000	23,232,190	108.8%	(재택의료센터운행차량:법인) 3대 (가정간호센터운행차량:자가) 5대
			기타 차량유지비	2,000,000	6,465,998	323.3%	(가정간호센터운행차량:자가) 엔진오일 및 타이어 교체비 지원 증가
			운반비	1,021,000	2,361,060	231.2%	강릉가정간호센터 1인 증가와 연동
			교육훈련비	1,992,000	1,201,000	60.2%	
			도서인쇄비	1,260,000	1,803,000	143.1%	
			신문구독료	528,000	528,000	100.0%	
			기타 도서인쇄비	732,000	1,275,000	174.1%	(명함) 631천원 (감사패) 252천원 (도서) 240천원 (도장및명판) 152천원
			회의비	7,079,000	4,185,110	59.1%	전년 수준
			소모품비	18,620,000	21,113,950	113.3%	(의원이전관련소모품구입) 7,004천원 (컴퓨터&주변기기) 6,564천원 (김원장님 퇴직선물) 890천원 (각종문구용품 및 소모품) 500천원 (자판기커피관련) 730천원 (가처분소송 승소 답례품) 450천원 등
			지급수수료	26,211,000	34,015,439	129.7%	
			프로그램사용료	2,019,000	3,333,004	165.0%	(더존) 1,551천원 (MRM) 799천원 (뷰텍) 396천원 (포인트닉스) 352천원 ※2024/02까지사용 (이지케어) 174천원 등
			법인결산	2,233,000	2,233,000	100.0%	
			카드가맹점수수료	2,317,000	2,422,542	104.5%	
			길동무관련	2,156,350	2,291,530	106.2%	
			홈페이지및블로그관련	0	363,000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기타수수료	17,485,650	23,372,363	133.6%	(의원이전관련폐기물처리비용) 7,750천원 (최문수법률사무소) 3,300천원 (문자전송포인트충전) 2,766천원 (고객용주차권) 1,688천원 (햇뜨락관련) 1,430천원 (법무사한진구사무소) 1,116천원 (박우순공증사무소) 1,000천원 (의료폐기물처리) 600천원 (공익법인결산공시관련) 440천원 (밝음의원소독) 180천원 (에스원) 79천원 등
			조합이전비	3,000,000	0		
			광고선전비	2,107,000	5,766,250	273.6%	
			행사 및 프로그램 광고	1,045,000	2,495,675	238.8%	의원이전관련각종 안내물및명함제작 증가
			조합 광고	1,062,000	3,270,575	307.9%	신규의료기관(춘천) 지면홍보(1,700천원)
			대손상각비	911,000	18,967	2.0%	
			건물관리비	3,600,000	4,659,952	129.4%	
			의원(사무실) 관리비	3,600,000	4,698,682	130.5%	
			법인숙소 관리비	0	(38,730)		2024/02 퇴거, 장기수선충당금과 상계
			무형고정자산상각	166,000	0		전년 수준
			잡비	14,000	88,224	630.1%	전년 수준
		의료경비		226,477,000	233,891,054	103.2%	
			양방의약품비	154,005,000	145,736,639	94.6%	
			양방의료소모품비	36,236,000	53,174,987	146.7%	강릉가정간호센터 1인 증가와 연동
			외주용역비	36,236,000	34,979,428	96.5%	
	조합사업비			33,514,000	26,065,220	77.7%	
		조직활동비		25,700,000	15,920,320	61.9%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1,200,000	2,228,310	185.6%	(이사회) 1,681천원 (원장단회의) 547천원
			대의원 소통의날	1,400,000	1,113,300	79.5%	
			대의원 총회	0	4,454,300		(기념품) 1,934천원 (식대및다과) 1,433천원 (자료집) 1,000천원 등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1,000,000	0		
			임직원 워크샵	3,000,000	3,429,870	114.3%	
			건강반장활동	1,200,000	811,440	67.6%	(다과) 506천원 (대관) 305천원
			신규 조합원 홍보 자료	600,000	0		
			건강수다회	11,600,000	1,949,900	16.8%	(각종건강관련강좌) 1,563천원 (위기대응능력강화교육) 386천원
			건강소모임	4,200,000	1,846,200	43.9%	(똑똑건강반) 1,660천원 (PTC자기돌봄후속모임) 186천원
			자원봉사단 활동	1,500,000	87,000	5.8%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연대활동비	7,814,000	10,144,900	129.8%	
			각종 협회비	7,814,000	10,144,900	129.8%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	5,990,000	6,556,900	109.4%	599천원×10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	504,000	1,008,000	200.0%	42천원×12회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840,000	840,000	100.0%	70천원×12회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240,000	240,000	100.0%	20천원×12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0	900,000		100천원×9회 (신규)
			한국재택의료협회	0	70,000		70천원×1회 (신규)
			기타 회비	240,000	530,000	220.8%	문화의거리상인회, 빈의자의사회 등
		예비비		0	0		
5.영업이익				(21,360,000)	(155,603,379)	-528.4%	
6.영업외수익				346,560,000	355,033,010	102.4%	
		외부사업수입(조직활동비)		316,400,000	316,296,215	99.9%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80,000,000	271,541,265	96.9%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34,275,950	94.1%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0	10,479,000		2024년 신규((기금11,100천원+자부담 600천원)
		기타수입		30,160,000	38,736,795	128.4%	
			이자 및 배당금수익	14,841,000	2,697,069	18.1%	(사회적예탁금) 1,810천원 (정기예탁금 중도해지) 615천원 (보통예금) 222천원 (배당금) 50천원
			유형자산처분이익	0	0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후원금	5,513,000	12,179,000	220.9%	
			각종 지원금	7,650,000	19,450,000	254.2%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5,400,000	5,400,000	100.0%	450천원×12회
			고용안정장려금 등	2,250,000	14,050,000	624.4%	(육아휴직사업주지원) 9,150천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3,600천원 (원주밝음신협·슈퍼브레인) 1,300천원 등
			잡이익	2,156,000	4,410,726	204.5%	(원주시지역사회통합돌봄) 1,140천원 (자활근로참여자방문건강상담) 1,000천원 (의료용초음파진단기판매) 1,000천원 (장기요양기관패널경영실태조사) 300천원 (커뮤니티다학제실습관련) 270천원 (비급여보고자료행정비용지원) 100천원 등
7.영업외비용				325,200,000	337,660,787	103.8%	
		외부사업지출(조직활동비)		316,400,000	317,113,315	100.2%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80,000,000	271,541,265	96.9%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45,572,050	125.2%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0	0		
		기타지출		8,800,000	20,547,472	233.4%	
			이자비용	1,371,000	1,371,957	100.0%	강원상승(SE)융자사업이자

장	관	항	목	2024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달성율	예산집행내역
			기부금	2,929,000	4,350,000	148.5%	의원이전관련 후원 증가
			지역복지사업비	4,500,000	14,232,510	316.2%	(원주밝음신협임직원) 10,560천원 (빈의자의사회) 3,000천원 (기타) 672천원
			유형자산처분손실	0	593,005		2024년말 기준 내용연수 경과 비품 처분
			잡손실	0	0		
8.법인세차감전이익				0	(138,231,156)		
9.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99,271,650		수익 계정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용 계정
11.법인세등							
12.당기순이익					61,040,494		

재 무 상 태 표

제 2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3(당)기		제22(전)기	
	금 액		금 액	
자 산				
Ⅰ. 유 동 자 산		613,485,453		1,153,007,577
(1) 당 좌 자 산		584,603,276		1,132,638,499
보 통 예 금		255,163,690		441,542,660
정 기 예 . 적 금		134,000,000		450,000,000
외 상 매 출 금	188,125,349		186,228,635	
대 손 충 당 금	1,881,253	186,244,096	1,862,286	184,366,349
미 수 금		8,166,490		1,878,490
선 급 금		1,029,000		54,851,000
(2) 재 고 자 산		28,882,177		20,369,078
상 품		28,882,177		20,369,078
Ⅱ. 비 유 동 자 산		91,022,653		47,850,335
(1) 투 자 자 산		12,597,568		11,352,011
장 기 성 예 금		3,000,000		1,800,000
특 정 현 금 과 예 금		9,597,568		9,552,011
(2) 유 형 자 산		67,425,085		23,011,234
구 축 물	21,021,000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3,731,750	17,289,250		0
차 량 운 반 구	24,473,000		24,473,000	
국 고 보조금-차량운반구		0	5,996,496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8,428,368	6,044,632	7,466,247	11,010,257
비 품	29,572,310		14,021,509	
감 가 상 각 누 계 액	15,806,554	13,765,756	9,757,803	4,263,706
의 료 기 기 외-밝음의원	82,406,880		43,496,88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2,081,433	30,325,447	35,759,609	7,737,271
(3) 무 형 자 산		0		387,090
전 기 공 급 시 설이용권		0		387,09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11,000,000		13,100,000
임 차 보 증 금		10,000,000		13,000,000
기 타 보 증 금		900,000		0
전 신 전 화 가 입 권		100,000		100,000

재 무 상 태 표

제 2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 22기 2023년 12월 31일 현재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23(당)기 금액		제22(전)기 금액	
자산총계		704,508,106		1,200,857,912
부채				
Ⅰ.유동부채		109,643,994		434,915,541
외상매입금		24,744,992		24,309,973
미지급금		61,168,379		67,217,860
예수금		9,678,501		336,328,792
선수금		14,052,122		3,300,000
미지급세금		0		3,758,916
Ⅱ.비유동부채		366,695,188		577,400,441
장기차입금		38,566,397		50,000,0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		328,128,791		527,400,441
부채총계		476,339,182		1,012,315,982
자본				
Ⅰ.자본금		271,956,874		293,370,374
출자금		271,956,874		293,370,374
Ⅱ.자본잉여금		0		0
Ⅲ.자본조정		0		0
Ⅳ.기타포괄손익누계액		0		0
Ⅴ.결손금		43,787,950		104,828,444
미처리결손금		43,787,950		104,828,444
(당기순이익)				
당기 : 61,040,494 원				
전기 : 108,206,065 원				
자본총계		228,168,924		188,541,930
부채및자본총계		704,508,106		1,200,857,912

손 익 계 산 서

제 23(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3 (당)기		제22 (전)기	
	금 액		금 액	
Ⅰ.매 출 액		**1,865,351,980**		**1,543,887,360**
밝 음 의 원 매 출	762,395,220		747,522,630	
가 정 간 호 매 출	911,810,830		556,717,860	
교 육 비 수 입 금	0		300,000	
재 가 방 문 요양매출	191,145,930		239,346,870	
Ⅱ.매 출 원 가		**145,736,639**		**0**
상 품 매 출 원 가		**145,736,639**		**0**
기 초 상 품 재 고 액	20,369,078		0	
당 기 상 품 매 입 액	154,249,738		20,369,078	
기 말 상 품 재 고 액	28,882,177		20,369,078	
Ⅲ.매 출 총 이 익		**1,719,615,341**		**1,543,887,360**
Ⅳ.판 매 비 와 관 리 비		**1,875,218,720**		**1,490,820,630**
임 원 급 여	30,000,000		26,800,000	
직 원 급 여	1,271,920,080		978,234,940	
상 여 금	19,000,000		24,275,000	
퇴 직 급 여	125,052,070		2,793,108	
복 리 후 생 비	128,119,017		100,538,370	
여 비 교 통 비	7,877,370		6,290,951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5,970,230		6,932,483	
통 신 비	6,165,680		7,951,819	
수 도 광 열 비	8,668,324		11,090,824	
세 금 과 공 과 금	447,310		914,666	
감 가 상 각 비	33,929,834		14,309,112	
지 급 임 차 료	9,085,780		31,318,800	
수 선 비	386,000		770,050	
보 험 료	5,346,250		4,442,850	
차 량 유 지 비	33,818,188		6,329,110	
운 반 비	2,361,060		1,021,902	
교 육 훈 련 비	1,201,000		4,981,000	
도 서 인 쇄 비	1,803,000		2,338,500	
회 의 비	4,185,110		7,079,450	
소 모 품 비	21,113,950		14,515,925	
지 급 수 수 료	34,015,439		22,789,198	
광 고 선 전 비	5,766,250		3,169,760	

손 익 계 산 서

제 23(당)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제 22(전)기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 목	제23 (당)기		제22 (전)기	
	금 액		금 액	
대 손 상 각 비	18,967		911,729	
건 물 관 리 비	4,659,952		4,212,706	
무 형 고 정 자산상각	0		166,980	
잡 비	88,224		14,460	
조 합 사 업 비	26,065,220		31,567,730	
양 방 의 약 품 비	0		114,598,012	
양 방 의 료 소모품비	53,174,987		32,386,025	
외 주 용 역 비	34,979,428		28,075,170	
Ⅴ. 영 업 손 실		**155,603,379**		**-53,066,730**
Ⅵ. 영 업 외 수 익		**554,304,660**		**497,521,061**
이 자 수 익	2,651,512		30,530,554	
배 당 금 수 익	45,557		85,147	
전 기 오 류 수정이익	0		144,351,125	
고유목적사업준비금환입액	199,271,650		0	
각 종 보 조 금	316,296,215		301,784,710	
후 원 금	12,179,000		5,513,000	
각 종 지 원 금	19,450,000		13,100,000	
잡 이 익	4,410,726		2,156,525	
Ⅶ. 영 업 외 비 용		**337,660,787**		**430,160,840**
이 자 비 용	1,371,957		490,068	
기 부 금	4,350,000		2,929,100	
지 역 복 지 사 업 비	14,232,510		4,423,18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전입액	0		120,426,950	
유 형 자 산 처분손실	593,005		82,000	
각 종 보 조 금 비 용	317,113,315		301,809,542	
Ⅷ. 법 인 세 차 감 전 이 익		**61,040,494**		**120,426,951**
Ⅸ. 법 인 세 등		**0**		**12,220,886**
법 인 세 등	0		12,220,886	
Ⅹ. 당 기 순 이 익		**61,040,494**		**108,206,065**

결손금처리계산서

제 23(당)기 2024년 01월 0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부터 제 22(당)기 2023년 01월 0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부터

처분예정일 2025년 03월 13일부터 처분확정일 2024년 03월 31일부터

회사명 :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단위 : 원)

과목	제23 (당)기		제22 (전)기	
	금액		금액	
Ⅰ. 미처리결손금		43,787,950		104,828,444
1. 전기이월미처리결손금	104,828,444		213,034,509	
2. 회계변경의누적효과	0		0	
3. 전기오류수정이익	0		0	
4. 전기오류수정손실	0		0	
5. 중간배당금	0		0	
6. 당기순이익	61,040,494		108,206,065	
Ⅱ. 임의적립금등의이입액		0		0
1.	0		0	
2.	0		0	
합계		43,787,950		104,828,444
Ⅱ. 결손금처리액		0		0
1.임의적립금이입액	0		0	
2.기타법정적립금이입액	0		0	
3.이익준비금이입액	0		0	
4.재평가적립금이입액	0		0	
5.자본준비금이입액	0		0	
Ⅲ. 이익잉여금처분액		0		0
1.이익준비금	0		0	
2.기업합리화적립금	0		0	
3.배당금	0		0	
가.현금배당	0		0	
나.주식배당	0		0	
4.사업확장적립금	0		0	
5.감채적립금	0		0	
6.배당평균적립금	0		0	
Ⅳ. 차기이월미처리결손금		43,787,950		104,828,444

■ 24년 주요 활동

1. 조합(사무국)

- 1월 11일 제195차 이사회
- 1월 15일 한국수자원공사 본사 미팅(춘천 방문진료 프로젝트 관련) : 박준영, 신승훈
- 2월 14일 제196차 이사회
- 2월 29일 임시 이사회
- 3월 21일 제10차(통합 22차) 정기 대의원 총회
- 2월 6일 종합감사 실시(감사 : 박찬현, 정연우)
- 2월 15일 김종희 원장님 송별회(주최 : 원장단)
- 2월 19일 강원SE상승자금 모니터링(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2월 28일 김종희 원장님 임직원 송별회(민생회관)
- 3월 12일 일상돌봄바우처 업무협약서 체결(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3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설명회 참석 : 조주희
- 3월 30일 조합 이사(중앙로 85, 4층)
- 4월 4일 닥터지바고 미팅 – 의약품 등 재고 관리 관련
- 4월 9일 4월 원장단 회의
- 4월 18일 제198차 이사회
- 4월 20일 안성의료사협 30주년 기념행사 참석(박준영, 천혜란, 신승훈)
- 5월 1일 조합 견학 – 판교고등학교 방문
- 5월 2일 양평의료사협 모두의원 개원식 참석 : 신승훈, 염은경
- 5월 3일 조합 이전 개소식 개최 : 밝음신협 5층 대강당 100여명 참석
- 5월 14일, 16일, 17일 : 보건복지부 정기감사 실시
- 5월 20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진행 회의 : 신승훈, 조주희
- 5월 23일 메디푸드 업무협약 관련 미팅 : 물품 후원 및 할인 구매 등
- 5월 23일 해남사회적경제네트워크 방문
- 5월 28일 변동현 노무사 미팅 : 조합 인사 노무 관련 전반
- 6월 3일 (준)강원의료사협 노사협의회 설명회
- 6월 11일 원주시지역자활센터 “에코워싱” 사업장 개소식 참석 : 신승훈
- 6월 17일 제199차 이사회
- 6월 19일 안산의료사협 이용위원회 방문
- 6월 20일 슈퍼브레인 프로젝트 업무협약식
 (원주밝음신협, 밥상공동체복지관, 강원의료사협)
- 6월 28 ~ 29일 강원의료사협 임직원 워크샵
- 7월 2일, 30일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회의 :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 7월 3일, 12일, 26일 인사노무 컨설팅 진행(변동현 노무사)

- 7월 8일 ~ 7월 26일 2024 대의원 소통의 날 진행 109명 中 42명 참석
- 7월 11일 2024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수요처 간담회 참석 : 조주희
- 7월 17일 한국메디칼푸드 업무협약식 : 메디푸드(균형영양식) 후원 및 할인 제공
- 7월 26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진행 회의 : 신승훈, 조주희
- 7월 31일 7월 원장단 회의
- 8월 26일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회의 : 천혜란, 박준영, 최효심, 신승훈
- 8월 30일 2024 사회적경제컴퍼니 사회적책임부문 최우수상 수상
- 9월 3일 상반기 감사 진행 : 장동성 감사, 김달현 감사
- 9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추진상황 현장 점검 : 신승훈, 조주희
- 9월 4일 다회용기 협약식 참석(상지대학교 소셜캠퍼스 온)
- 9월 4일 제200차 이사회
- 9월 30일 모두웰후원회 회의(곽병은, 박준영, 신승훈, 홍윤숙)
- 10월 3일 치바 “바람의 마을” 조합 방문
- 10월 11일 SE상승자금 모니터링(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 10월 15일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임직원 견학(10명 참석)
- 10월 18일 제2차 노사협의회
- 10월 19일 2024 임원 비전 워크샵(10명 참석)
- 10월 30일 오사카부생협연합회 조합 방문
- 11월 5일 제6회 사회적경제박람회 참석(신승훈)
- 11월 6일 11월 원장단 회의
- 11월 12일 제201차 이사회
- 11월 14일 ~15일 사회적금융중개기관 전문가 양성교육 참석(신승훈)
- 11월 21일(1차), 12월 16일(2차), 12월 23일(3차) 제5기 대의원 선출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11월 22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수사례 시상식 참석(대상 수상)
- 11월 28일 오사카생협 조합 방문
- 12월 2일 제5기 대의원 선출 공고
- 12월 5일 원주시장애인가족지원센터 가족의 밤 참석
- 12월 11일 조합 임직원 송년회
- 12월 27일 제5기 대의원 명단 공고
- 12월 30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업무협약(원주시청 노인복지과, 밝음의원, 민내과)
- 12월 30일 원주시자립생활센터 업무협약(장애인 및 임직원 의료복지서비스)

2. 밝음의원(가정간호센터)

- 1월 3일 재택의료팀 김은화 간호사 면접
- 1월 4일 가정간호센터 1월 월례회의(공영훈원장님 부임 후 첫 참석)

- 1월 24일 김진숙 간호조무사(육아휴직) 대체인력 공고
- 2월 13일 신규 이전 장소 - 엑스레이 설치(디알텍)
- 2월 15일 가정간호센터 2월 월례회의
- 2월 26일 김진숙 간호조무사 육아휴직(24. 2. 26 ~ 25. 2. 25)
- 2월 26일 고보경 간호조무사(대체인력) 입사(2월 말, 개인사정으로 퇴사)
- 3월 14일 가정간호센터 3월 월례회(가정간호오더체계 보고양식서, 처치요청서통일)
- 4월 11일 가정간호센터 4월 월례회(안동반점)
- 4월 11일 홍윤숙 간호조무사(대체인력) 입사
- 4월 22일 박찬임 강릉센터장 입사(김수진, 박혜진, 배순찬, 도경숙, 박찬임)
- 4월 30일 배순찬 원주센터장 퇴사
- 5월 7일 오후2시 원주, 횡성센터장 회의(신협 지하1층 역사관)
- 5월 김은화 센터장 재택왕진+방문간호마무리 -> 배순찬센터장 후임
 *가정간호센터장 5명(김수진, 박찬임, 박혜진, 김은화, 도경숙)
- 6월 13일 가정간호센터 6월 월례회(가정간호처치요청서 기관 공문서 발송)
- 8월 8일 가정간호센터 8월 월례회
 (신규협약- 횡성청일, 강릉-한빛, 효, 해드림, 솔향의 집, 실버하우스)
- 9월 28일 <의료기관 가정간호 업무 편람> 가정간호사회 워크숍
- 10월 10일 가정간호센터 10월 월례회의(민생회관 근로계약서 재작성관련)
- 12월 11일 가정간호센터 12월 월례회
 (운영현황 : 강릉 34기관, 원주 27기관, 횡성 18기관)
 * 어르신사랑 종결, 원주 사랑마을 신규협약

3. 재택의료센터

- 1월 5일 경로장애인과 실무자 회의 (재택의료시범사업)
- 재가의료시범사업 사례회의: 1월9일, 2월6일 ,3월5일, 5월 16일 (염은경)
- 재택의료팀 월례회의: 2월 22일, 3월 27일, 4월 24일, 6월12일, 10월 22일
 (공영훈, 염은경, 장원주,이선영)
- 생애말기돌봄 실무회의 : 1월 31일, 2월 7일, 3월3일 (권상옥,염은경,김은화)
- 생애말기돌봄 갈바리의원 견학: 2월 15일 (권상옥,염은경,김은화)
- 생애말기돌봄 유관기관 미팅: 2월 28일 원주의료원 호스피스팀, 3월 8일 세브란스 혈액종양 내과, 3월 21일 세브란스 진료협력팀, 의료사회사업팀
 (권상옥,염은경,김은화)
- 장애인 건강주치의 유관기관 간담회: 2월 5일
- 일차의료개발센터 교육 사례회의 : 2월 6일 (염은경)
- 환자중심 방문의료 연구 모임 : 1월 27일, 2월 24일 ,3월 23일, 4월27일
 (공영훈, 염은경)

- 생애말기돌봄 교육 :5월 22일, 23일, 25일 (권상옥, 공영훈, 염은경)
- 4월 1일~26일: 방문의료 실습 원주연세대 의예과 총 16명
- 5월 10일 재택의료팀 이선영 간호사 면접
- 5월 24일~6월7일 : 한국커뮤니티케어보건의료협의회 4기 케어코디네이터 교육생 실습
- 6월12일 강원대재택의료지원센터 회의 (임인혁,공영훈,신승훈,염은경)
- 6월20일 신협 우리동네 어부바<수퍼브레인> 건강강좌 (염은경, 이선영)
- 6월20일: 강원도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자문회의 (염은경)
- 6월 24일~26일, 11월 11일~12일 : 원주시자활센터참여자 건강상담 (염은경,이선영)
- 7월8일~10일 양업토마스 천사작업장 건강검진
- <봉산에 살렵니다> 건강교육: 8월14일 (염은경) 8월14일, 9월12일 ,10월23일
- 7월 19일 ~8월 23일 강릉원주대 간호학과 실습(18명),7월 19일 OT, 8월 26일 평가회(염은경)
- 7월 31일 : 방문재활 사례회의 (양승완, 문광태, 공영훈, 염은경, 장원주, 이선영)
- 8월 27일 강원대재택의료지원센터 회의 (임인혁, 박유경, 고은별, 목재민, 유설애, 박현진, 정예진, 공영훈, 신승훈, 염은경)
- 10월 9일: 갈거리사협 거리축제 건강부스 :염은경
- 10월 10일 의료요양돌봄연계추진단 미팅(이광희, 박준영, 신승훈, 염은경)
- 10월 12일 두레생협생명나눔한마당 의료부스 지원(신승훈, 장원주)
- 10월 16일 장애인인권영화제 장애인건강주치의 부스 운영(신승훈, 이선영)
- 10월 29일 전주시 통합돌봄사업 견학(원주시청 복지국장 외 7명, 신승훈, 염은경)
- 10월 31일 생애말기학술대회 참석(신승훈, 염은경)
- 10월 31일: 한국장기요양학회 추계학술대회 생애말기 돌봄 토론 :염은경
- 11월 11일: 황지도시재생 서로이음 돌봄매니저 양성과정 강의(염은경)

4.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 1월 4일 최○녀 어르신 방문요양 재계약 체결
- 1월 10일 2024년 세입세출예산서 보고(원주시청)
- 1월 15일 윤○재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
- 1월 19일 김○흥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
- 1월 22일 이○순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
- 1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1월 25일 신연옥 요양보호사 생일상품권 지급(농협상품권)
- 1월 25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2월 어르신 명절선물 배부
- 2월 23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2월 24일 전옥수 요양보호사 퇴사
- 2월 29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3월 1일 최○녀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입소)
- 3월 5일 김○섭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해지(입원)
- 3월 8일 일상돌봄바우처 사업 회의 참석(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 3월 19일 김○중 어르신 방문요양 재계약 체결
- 3월 20일 하미숙 요양보호사 채용
- 3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3월 26일 2023년 세입세출결산 보고(원주시청)
- 3월 26일 김○수 어르신 방문요양 계약 체결
- 3월 28일 이상순 요양보호사 생일상품권 지급(농협상품권)
- 3월 28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4월 1일 김선옥 요양보호사 채용
- 4월 19일 김○순 어르신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계약 체결
- 4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4월 25일 이원희, 김덕연 요양보호사 생일상품권 지급(농협상품권)
- 4월 25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4월 29일 곽관영, 배미영, 하미숙 요양보호사 퇴사
- 5월 2일 이○만 어르신 가족요양 계약 체결
- 5월 3일 김미옥 요양보호사 채용
- 5월 4일 전은주 요양보호사 채용
- 5월 9일 전은주 요양보호사 퇴사
- 5월 13일 김덕연, 김선옥, 이원희 요양보호사 치매전문교육 신청
- 5월 19일 김덕연, 김선옥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 5월 21일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사업 신청
- 5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5월 25일 계지영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이수
- 5월 30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5월 30일 직원 복리후생 슬리퍼 배부
- 6월 4일 원주시청 지도점검
- 6월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공유회 참석(김지영)
- 6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6월 27일 길동무 폐업신고서류 제출(자료 일부 이관)
- 6월 27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6월 27일 황계순 요양보호사 생일상품권 지급(농협상품권)
- 6월 27일 요양보호사의 날 기념선물 지급

- 7월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일부 이관자료 제출, 접수증(폐업) 발급
- 7월 3일 원주시청 폐업 신고서 제출, 신규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서 및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 자료 제출
- 7월 10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김지영)
- 7월 17일 원주시청 경로복지과 팀장, 담당 주무관 현지조사
- 7월 24일 원주시청 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 수리 알림(공문)
- 7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7월 25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7월 26일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정정신고(재가방문요양센터 포함)
- 7월 31일 장기요양기관 길동무 폐업 신고 수리 알림(공문)
- 7월 31일 정○택 어르신 요양병원 입원으로 계약해지
- 8월 1일 재가방문요양센터 개업일(지정 유효기간 : 24.07.23~30.07.22.)
- 8월 2일 요양보호사 여름휴가비 지급
- 8월 12일 길동무 인력변경 퇴사처리(희망이음)
- 8월 13일 길동무 결산보고(~24.07.31.)(희망이음)
- 8월 14일 재가방문요양센터 입사처리(시설장 포함 17명-희망이음)
- 8월 20일 재가방문요양센터 예산서 보고(24.08.01.~)(희망이음)
- 8월 21일 농촌 사업 주거환경개선 이동식 에어컨 지원(지○순 어르신)
- 8월 26일 장기요양기관 평가불가 사실 확인서(팩스발송)
- 8월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급여 제공자료 공단이관 신청서 및 이관자료 제출
- 8월 29일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진행(조합 교육장)
- 8월 31일 고○만님 방문요양 재계약 채결
- 9월 6일 유승남 요양보호사 입사
- 9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9월 26일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 10월 1일 김지영 사회복지사 퇴사
- 10월 5일 김○식 어르신 계약 해지
- 10월 5일 이재완 요양보호사 퇴사
- 10월 10일 신○순 어르신 신규 계약 체결
- 10월 10일 김혜숙 요양보호사 입사
- 10월 17일 이○원 어르신 재계약 체결
- 10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10월 27일 김○배 어르신 계약 해지
- 10월 31일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 11월 4일 심혜경 요양보호사 입사
- 11월 6일 유진영 사회복지사 면접

- 11월 7일 김○영 님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계약 체결
- 11월 11일 유진영 사회복지사 입사
- 11월 18일 유승남 요양보호사 퇴사
- 11월 22일 진○용 님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계약 체결
- 11월 25일 김혜숙 요양보호사 포상급 지급(수급자 유치)
- 11월 25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11월 29일 문○석 어르신 방문요양 신규 계약 체결
- 11월 29일 강금자 요양보호사 입사
- 11월 28일 월례회의 및 직원교육 실시
- 12월 6일 진○용 님 일상돌봄 서비스 계약 해지
- 12월 9일 임○옥 님 일상돌봄 서비스 신규 계약 체결
- 12월 13일 2024년 직무 만족도 조사계획 실시
- 12월 13일 2024년 서비스 만족도 조사계획 실시
- 12월 19일 일상돌봄서비스 권역별 업무회의
- 12월 24일 이○원 어르신 재계약 체결
- 12월 24일 신○순 어르신 재계약 체결
- 12월 24일 복지포상 태그100% 수당 지급
- 12월 26일 월례회의 실시
- 12월 27일 2025년 방문요양 세입세출 예산서 원주시 제출

5.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건강지원사업(NH투자증권)

- 건강반장집담회 진행 : 1월 27일, 2월 21일, 3월 19일, 4월 22일, 5월 22일, 6월 21일, 7월 23일, 8월 26일, 9월 23일, 10월 25일
- 신규 건강반장 교육 : 1월 16일, 2월 20일
- 방문간호 & 방문재활 진행
- 사업 배분신청서 제출: 사업기간 24년 2월 1일 ~ 25년 1월 31일
- 방문재활 실무팀 미팅: 2월 22일 (양승완, 염은경, 임미선)
- 8월 23일 중간결과보고서 발송 및 2차 지원금 신청 (염은경)

②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원주시의사회 빈의자)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의사회는 “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 의사회” 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위한 의료지원을 하고 있으며, 밝음의원은 상담창구로의 역할을 하고 있음.
- 24년 건강지원 대상 인원수 : 49명, 지출금액 : 17,019,450원 지원

③ 춘천 방문진료 프로젝트(한국수자원공사 소양강댐지사)
- 예산 : 2억 8천만원
- 기간 : 24. 1. 1 ~ 12. 31
- 대상지역 : 북산면, 신북읍, 사북면, 동면, 동내면 거주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100명 이상)

6. 지역사회서비스(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 3월 8일 일상돌봄바우처 사업 회의 참석(두루바른사회적협동조합)
- 5월 8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미팅(김지영)
- 5월 30일 일상돌봄 서비스 사업 미팅(김지영)
- 6월 18일 원주시청 현장실사(일상돌봄 재가돌봄가사서비스)
- 7월 25일 일상돌봄 사업 회의 참석(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 8월 5일 제공인력 등록완료

7. 조합 활성화(조합 활동)

- 1월 8일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원봉사자 사전교육(1명)
- 1월 10일 원주 PTC-1기 건강소모임(17명)
- 1월 16일 1차 신규 건강반장교육(2명)
- 1월 24일 1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1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11건)
- 2월 20일 2차 신규 건강반장교육(2명)
- 2월 21일 2월 건강반장역량강화교육(30명)
- 2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9건)
- 3월 6일 원주 PTC-1기 건강소모임(12명)
- 3월 19일 3월 건강반장집담회(30명)
- 3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4건)
- 4월 22일 4월 건강반장 집담회(29명)
- 4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3건)
- 5월 21일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 1강(11명)
- 5월 22일 5월 건강반장 집담회(28명)
- 5월 23일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 2강(10명)
- 5월 25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사업 오리엔테이션(72명)
- 5월 28일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 3강(11명)
- 5월 30일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 4강(11명)
- 5월 30일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 이수(12명)
- 5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4건)

- 6월 15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교육(17명)
- 6월 21일 6월 건강반장 역량강화교육(30명)
- 6월 27일 원주밝음신협 및 강원의료사협 조합원 대상 응급처치교육(10명)
- 6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4건)
- 7월 5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1기 오리엔테이션(3팀, 16명)
- 7월 23일 7월 건강반장 집담회(28명)
- 7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활동(9회, 17명)
- 7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3건)
- 8월 26일 8월 건강반장집담회(27명)
- 8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활동(11회, 20명)
- 8월 29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건강교육 자원봉사(1건, 봉사자4명, 대상자12명)
- 8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3건)
- 9월 23일 9월 건강반장집담회(26명)
- 9월 28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가족관계 소통교육 :
 고추장만들기(18가정)
- 9월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3건)
- 9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활동(8회, 19명)
- 10월 12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가족관계 소통교육 :
 나무그릇만들기(16가정)
- 10월 16일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존엄을 지키는 케어(24명)
- 10월 23일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누구도 고립시키지 않는 마을 만들기(15명)
- 10월 24일 똑똑건강반 간담회-어차피 스마일(5명)
- 10월 25일 10월 건강반장집담회(28명)
- 10월 30일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꿈꾸는 집”설립 과정과 현황(21명)
- 10월 30일 똑똑건강반 간담회-맨발의 책수다(4명)
- 10월 플라워럼프 자원순환가드닝교육 연계(26명)
- 10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활동(9회, 18명)
- 11월 6일 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돌봄수다회(11명)
- 11월 9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가족관계 소통교육-김장(18가정)
- 11월 12일 응급처치교육-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16명)
- 11월 14일 똑똑건강반 간담회-바르게 걷기(5명)
- 11월 18일 11월 건강반장 집담회(27명)
- 11월 20일 그림책으로 살펴보는 나의 삶, 나의 죽음-웰에이징, 웰다잉교육 1회기(17명)
- 11월 23일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성과공유회(34명)
- 11월 25일 노인공동생활가정 추진위원회 회의
- 11월 27일 그림책으로 살펴보는 나의 삶, 나의 죽음-웰에이징, 웰다잉교육 2회기(11명)

- 11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활동(3회, 18명)
- 12월 10일 12월 건강반장 집담회(20명)
- 12월 11일 노인건강돌봄서비스 자원봉사 활동(1건)

8.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1월 19일 연합회 경영위원회 참석 : 신승훈
- 1월 31일 연합회 이사회 참석 : 이광희
- 2월 17일 연합회 총회 참석 : 이광희, 천혜란, 신승훈, 신현경
- 5월 22일 연합회 경영위원회 참석 : 신승훈
- 7월 10일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새날의원 개원식 참석 : 신승훈
- 8월 29일~30일 연합회 경영위원회 워크샵 참석(아우내쉼플스테이) : 신승훈
- 9월 25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30주년 심포지엄 :
 이광희, 신승훈, 김달현, 염은경, 장원주
- 12월 19일 ~ 21일 경영위원회 워크샵 참석(제주도 일원) : 신승훈

9. 연대 활동 및 기타

- 1월 8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1월 정기 모임 : 신승훈
- 1월 12일 제15회 반딧불장애인야학 수료식 : 신승훈
- 1월 16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신승훈
- 1월 23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2월 2일 일상돌봄바우처 사업 회의 : 신승훈
- 2월 5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나눔행사 : 신승훈
- 2월 15일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총회 : 박준영, 이광희
- 2월 19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총회 : 신승훈, 이광희
- 2월 23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총회 : 박준영, 신승훈
- 3월 7일 양평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방문 : 신승훈
- 3월 14일 원주시지역통합돌봄센터 운영위원회 : 신승훈
- 3월 28일 서울대학교 지리교육학과 견학 : 신승훈
- 4월 16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4월 18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신승훈
- 4월 26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5월 7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신승훈
- 5월 13일 5월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 신승훈
- 5월 24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돼지주물럭 행사 : 신승훈
- 6월 12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신승훈
- 6월 14일 원주시지역통합돌봄센터 운영위원회 : 신승훈

- 6월 14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6월 21일 ~ 22일 :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워크샵 : 신승훈
- 7월 8일 7월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 신승훈
- 7월 12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삼계탕 봉사 : 신승훈
- 7월 18일 문화의 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7월 31일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신승훈
- 8월 19일 지정면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 : 신승훈
- 9월 7일 원주시사회복지대축제 : 신승훈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획분과 위원)
- 9월 9일 9월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회의 : 신승훈
- 9월 20일 갈거리사회적협동조합 20주년 기념행사 : 박준영, 신승훈
- 10월 11일 문화의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12월 9일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송년회 : 이광희, 신승훈
- 12월 13일 문화의거리 상인회 이사회 : 신승훈

■ 2024년 원주시의사회 “빈의자”(빈곤층 의료지원 자원봉사의사회) 지원 현황

월	월인원(명)	지원금액(원)	비고
1	63	506,660	
2	63	394,980	
3	44	2,420,860	
4	35	331,080	
5	70	1,626,240	
6	57	2,267,230	*2024년 의뢰인원 : 51 명
7	55	2,030,020	- 시청 및 읍면동 29 명
8	57	481,250	
9	54	3,586,670	- 유관기관 22 명
10	64	482,000	
11	47	2,117,150	
12	49	384,380	
약제비		390,930	
총계	658	17,019,450	

※ 조합 2024년 후원금 : 2,559,470원 -> “빈의자” 초기 상담 창구로 “총무” 역할.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연간 지원규모 및 현황

년도	연인원	신규인원	지원금액
2014	214명	51명	11,652,620원
2015	836명	75명	16,287,080원
2016	1,103명	59명	9,673,130원
2017	832명	32명	10,361,163원
2018	1,181명	40명	12,739,050원
2019	1,215명	39명	8,872,510원
2020	1,223명	52명	10,629,830원
2021	1,180명	47명	11,066,370원
2022	756명	24명	6,586,990원
2023	713명	39명	5,594,740원
2024	658명	49명	17,019,450원
총계	9,911명	507명	120,482,933원

■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회원 단체 현황

2024년 말 기준 26개 의료기관

종합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 병 원 : 내안에병원, 원주우리병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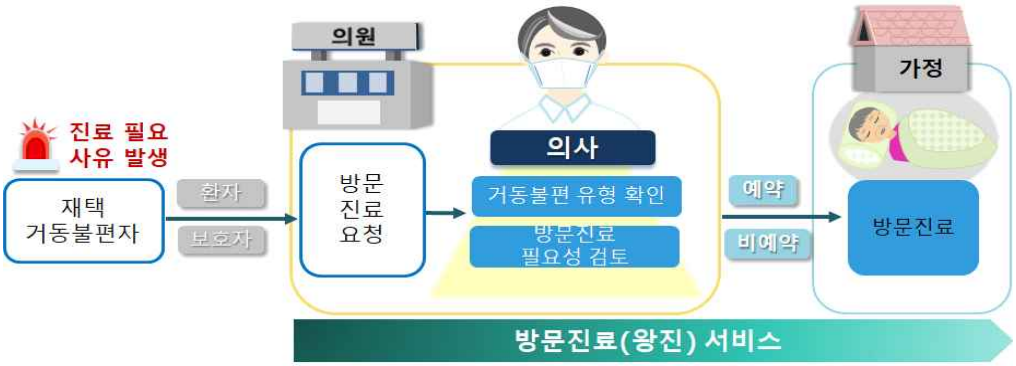
의원 :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앤권이비후과의원,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최경훈내과, 창문외과, 연세민내과의원, 좋은마음정신의학과, 횡성중앙의원,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치 과 :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 안 과 : 연세안과 / 한의원 :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2024 방문의료팀 활동 사업 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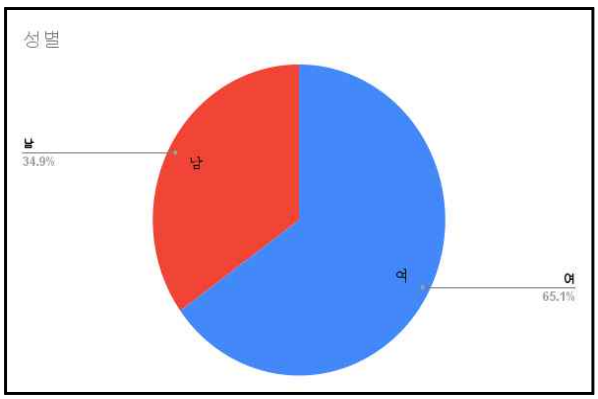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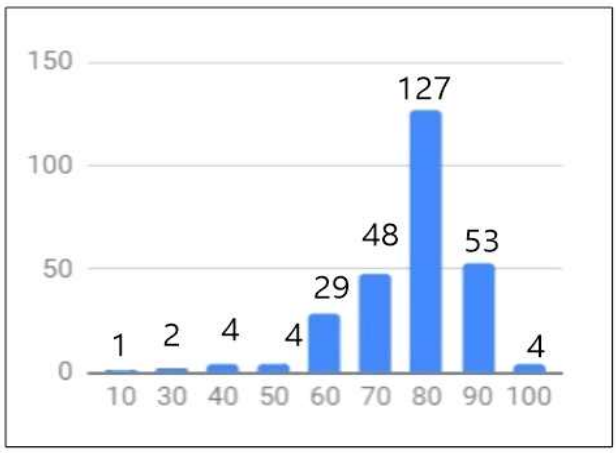
1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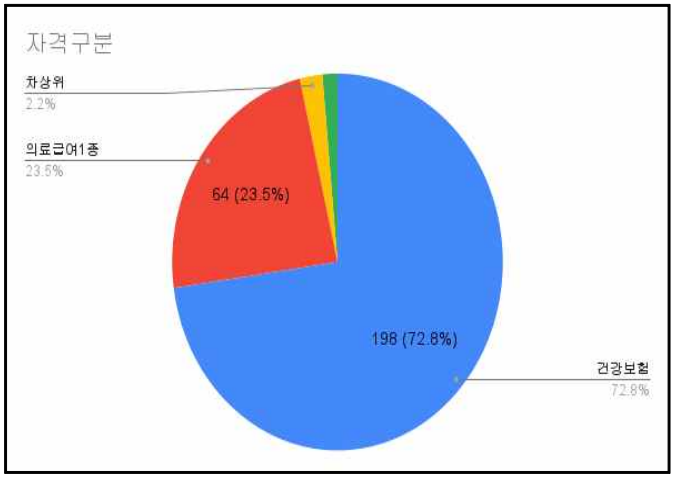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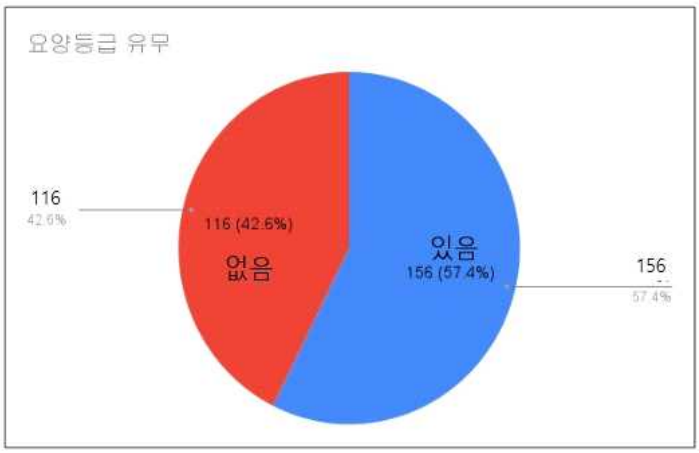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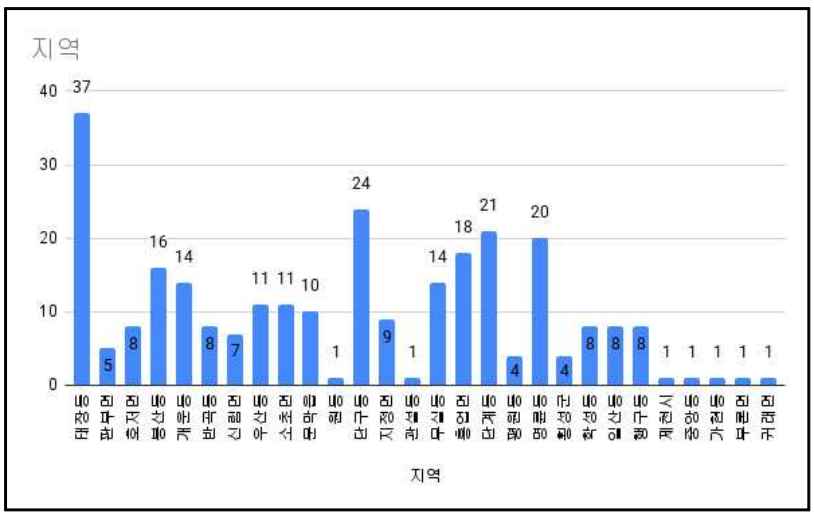
1) 사업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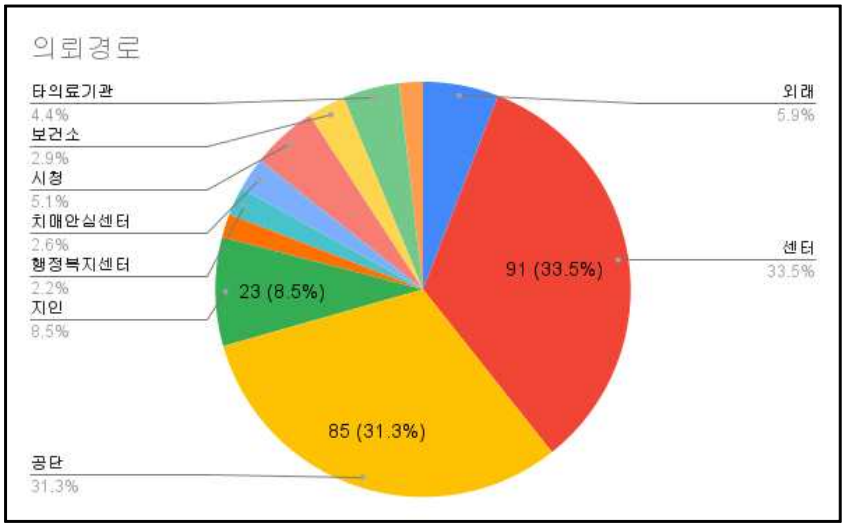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일차의료 방문진료 시범사업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내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가 직접 방문진료서비스 제공 
운영시기	1월~12월
사업대상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하여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 **【대상자 유형(예시)】** ① 마비(하지·사지마비·편마비 등) ② 수술직후 ③ 말기 질환 ④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⑤ 신경계 퇴행성 질환 ⑥ 욕창 및 궤양 ⑦ 정신과적 질환 ⑧ 인지장애 등 * 단,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진료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기준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입소자 제외 <예외>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환자도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방문진료를 실시할 수 있으나, 방문진료료 시범수가 전액을 환자가 부담

구 분	내 용	
방문진료 세부 서비스	진찰	문진, 시진, 청진, 타진, 촉진 등을 실시
	처방	구강섭취약, 연고, 좌약 등에 대한 처방
	질환관리	만성질환, 단순한 급성 · 아급성 질환 등에 대한 관리
	검사	혈압계, 산소포화도측정기, 이경 등을 활용한 기본검사 등
	의뢰	필요 시 적절한 전문 의료기관으로의 의뢰
	교육상담	질병 상태 및 관리계획에 대한 환자 · 보호자 교육 실시
	기타	검체 채취, 투약, 주사, 응급처치 등에 대한 교육 등 ※ 환자의 필요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가능

2) 사업수행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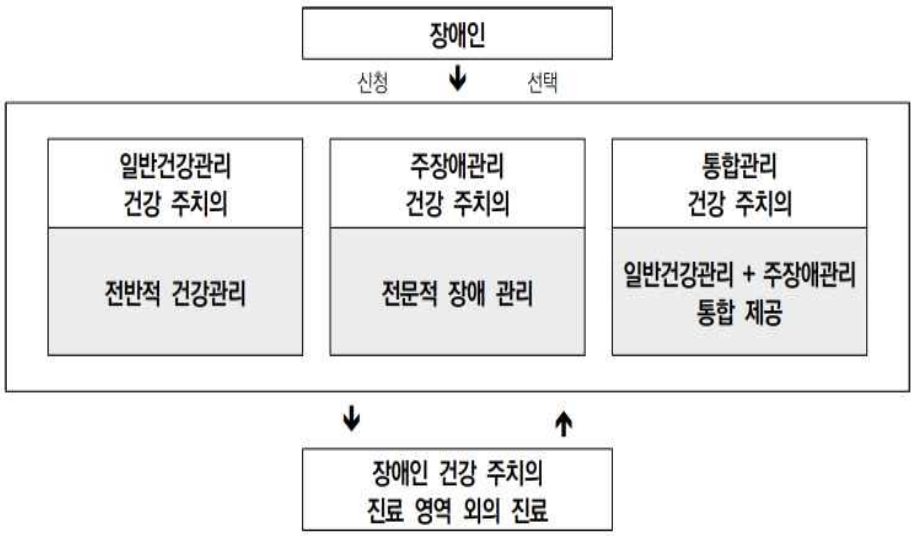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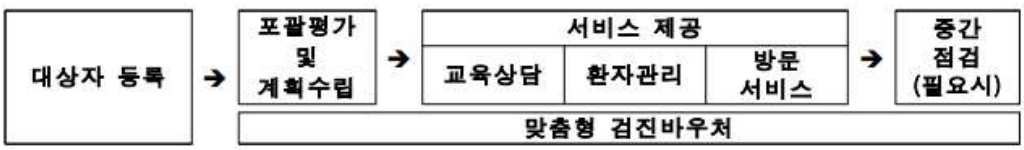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참 여 자	272명(재택의료시범사업으로 정규 방문하는 대상자 제외)
방문건수	총 319건(재택의료시범사업으로 방문한 건수 제외)
성별비율	남성 95명 (34.9%), 여성 177명 (65.1%) 
연령별 인원	80대(127명) > 90대(53명) > 70대(48명) > 60대(29명) 

자격구분	건강보험(198명)>의료급여 1종(64명)>차상위(6명)>의료급여 2종(4명) 
요양등급 유무	있음: 156명 (57.4%) > 없음: 116명(42.6%) 
지 역 별 인 원	태장동 >단구동 >단계동 >명륜동 > 흥업면 > 봉산동 > 개운동, 무실동 

지역사회 및 조합연계	장기요양기관 > 센터: 91명(33.5%) > 건보공단: 85명 (31.3.%) 

2 장애인건강주치의 시범사업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장 애 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장애인이 건강 주치의로 등록 신청한 의사를 일반건강관리 또는 주장애관리건강 주치의로 선택하여 전반적 건강관리(일반건강관리)나 장애관련 건강상태(주장애관리) 등을 지속적·포괄적으로 관리받는 제도 ※ 경증장애인은 일반건강관리만 참여 가능
운영시기	1월~12월
장 애 인 건강주치의 제도모형	
2024년 등록장애인	총 47명(1년간)
서 비 스 유 형	일반건강관리(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또는 모든 장애의 일반적관리)
서 비 스 제공절차	

2) 사업수행 결과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포괄평가	9	2	5	-	3	5	2	3	14	6	2	2
중간점검표	-	-	1	1	1	-	-		-	-	1	-
방문진료	13	5	21	2	2	14	15	9	17	16	12	15
방문간호	37	11	37	5	28	21	33	32	32	29	26	28
환자관리료	17	3	3	2	10	6	13	13	14	5	1	1

□ 총평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은 많은 측면에서 바람직한 일차의료의 특성을 갖고 있음. '주치의'란 개념을 명시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포괄적이고 연속적인 방문진료를 지원함.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의 혁신요소>

- 환자 등록과정에서 포괄적 돌봄계획 수립을 지원함(포괄평가료)
- 연간 18회 이하로 의사의 방문진료 활동을 가능하게 함(방문진료료)
- 다학제 팀(의사, 간호사) 구성을 지원함(방문간호료)
- 월 1회 전화상담을 통한 연속적 돌봄을 지원함(환자관리료)
- 교육상담을 통해 환자의 자가관리를 지원함

수요자 측면	- 교육상담 대상이 '장애인 당사자'로 한정되어 보호자 도움 없이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의 경우, 상담에 한계가 있음. - 제공 서비스 중 방문서비스의 수요가 높은 장애인 당사자의 경우 연 24회의 서비스 종료 시 서비스 중단 또는 추가적인 비용 발생으로 만족도 저하
공급자 측면	소요 노력 대비 낮은 수가로 인센티브의 부족

3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사업보고

1) 사업 개요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재가의료 급 여 시범사업</td><td>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td></tr>
<tr><td>운영시기</td><td>1월~12월</td></tr>
<tr><td>주무부서</td><td>원주시청 생활보장과</td></tr>
<tr><td>사업인원</td><td>총 21명 (24년 12월 기준)</td></tr>
<tr><td>사업대상</td><td>31일 이상 장기입원하였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td></tr>
<tr><td>지원내용</td><td>욕구에 따른 돌봄 서비스 (5가지 서비스 중 의료지원 서비스 담당)
<table>
<tr><td>의료지원</td><td>요구도 평가, 맞춤형 케어플랜수립, 영양상담, 서비스 이용 모니터링</td></tr>
<tr><td>돌봄지원</td><td>일상 생활유지에 필수적인 가사지원 및 간병서비스 제공</td></tr>
<tr><td>식사지원</td><td>복지관, 민간 식사제공기관을 활용하여 대상자 필요에 따라 1-3식 제공</td></tr>
<tr><td>이동지원</td><td>병원외래진료 및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td></tr>
<tr><td>주거지원</td><td>주거지 수리등 기능 보강 및 비품구입등</td></tr>
</table></td></tr>
<tr><td>지원기간</td><td>대상자 종결시에서 대상자 선정 후, 2년까지만 서비스 제공</td></tr>
</table>

2) 사업수행 결과

- 24년 1월 5일 : 생활보장과 실무자 회의
- 24년 1월~12월 : 월 대상자 사례회의 진행

□ 총평

원주시청 의료급여관리사와의 협업을 통해 강원의료사협에 대한 신뢰 강화 및 타 부서와의 협업 시 의료서비스는 강원의료사협과 먼저 협의하는 네트워크 구축함. 서비스 대상자는 1년~2년 서비스 기간 후 의료서비스 제공 뿐만아니라 강원의료재가 돌봄방문센터 사업소를 통해 원스톱 서비스 제공까지 확장될 것으로 기대함.

또한 매월 1회 원주시 재가의료급여팀 의료급여관리사, 강원의료사협의 사례회의를 통해 서비스 대상자의 교차 모니터링이 가능했고 의료급여 대상자의 지역사회 복귀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졌고 2024년 본사업으로 전국 확대됨.

4 “농촌 및 시내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사업보고
(NH투자증권 임직원 지정기탁사업)

1) 사업 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목적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으로 2차 장애 예방 및 건강 격차 해소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건강반장활동가 양성 및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회적 돌봄 구축 - 대상별 특화: 재가 거동 불가능 환자, 주기적 검진이 필요한 만성질환자, 자가 건강관리 가능 환자등 대상별 특화로 건강증진 효율성 증대 -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예방적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적 입원을 예방함
사 업 의 필 요 성	- 지역별 인구 변화에 따른 군 지역 인구 감소, 농가인구의 지속적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농촌 소재 의료기관의 경영 여건 악화 - 민간에 의존하고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 구조로 인해 도농간 의료서비스 제공 인프라 격차는 점차 확대 - 도농간 의료자원의 격차는 의료인력 분포의 측면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 의사의 절반 이상(52.1%)이 수도권에 분포하고 있고, 군지역에서 활동하는 의사는 전체의 5.7%, 농촌지역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비율도 전체의 8.6%(보건복지부, 2018)에 불과 - 농촌 주민은 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낮아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현실이며 우리나라는 의료정책은 불평등 해소보다는 전체 평균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 왔으며, 의료의 평균 향상을 위한 정책은 의료취약지 해소 등 일부에 국한됨. - 8차년도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이 지역주민을 서로 돌보는 사회적 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원주시 8개 지역의 노인일자리 사업인 건강반장활동가를 연계하였고 의료 및 복지 취약 참여자를 발굴, 낙상예방 환경 조성, 질병예방 활동, 건강소통체계 마련 등 의료복지 취약계층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음. - 9차년도 사업에선 신체허약 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능상태 증진을 위한 맞춤형 운동프로그램 실천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9차년도 사업에서 해당 지역 특성 및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서비스 활동을 이어가고자 하며 초고령화사회에 진입을 앞두고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 증가로 병원 진료를 직접 받거나 검사를 받지 못하여 건강상태 확인이 어려운 대상자 증가로 검사 및 치료비를 추가 지원하여 건강증진 향상을 기대해 볼 수 있겠음.

2) 사업수행 결과(8차년도사업)[1)]

구 분	내 용	
사회적 돌봄서비스	건강반장 인원	28명
	건강반장 집담회 및 교육	월 1회 (총12회)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대상자 사례회의	14회
맞춤형 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70회
	방문재활서비스	10명, 총 100회
	환경수정 및 운동보조기 지원	7회
	기초생계지원	16회
	의약품지원 대상자(건수)	21명(24회)

□ 총평

건강보험 제도권 이외에 있는 방문재활 서비스 시도를 통해 재활 뿐만 아니라 환경 수정, 보조도구 지원을 통해 맞춤 및 통합 서비스 지원으로 참여자의 만족도를 높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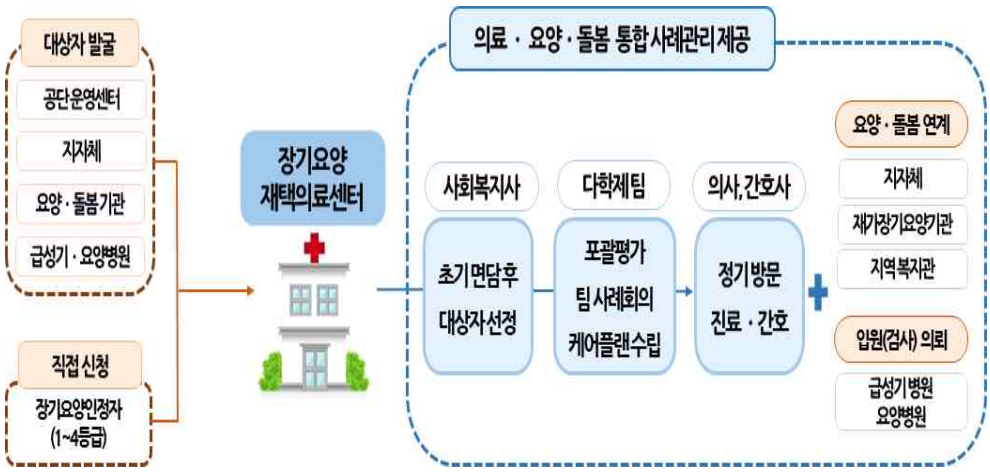
일상생활 보조도구	재활영역에서 기능 장애의 보조수단으로 개발된 여러 보조도구를 전문가에 의해 장애 정도에 따라 유익한 보조도구를 선택함으로 환자의 일상생활수행능력을 증진시킴.
환경수정	환자와 환경 사이에 중재 방법을 사용하여 물리적 환경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바꾸어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을 증진 시킴.
수정된 일상생활 수행방법 교 육	뇌졸중·골절 등으로 인하여 한쪽 상지의 기능에 문제가 있는 환자에게 특별한 방법을 교육. 환자의 일상생활활동 수행의 잠재력을 알아내고 습득을 촉진 시킬 수 있는 적당한 교육방법을 찾아 적용

방문간호: 건강보험 건강보험 및 장기요양 제도권 이외에 있는 대상자에게 간호 제공으로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함.

1) 2024.01.01.~2024.12.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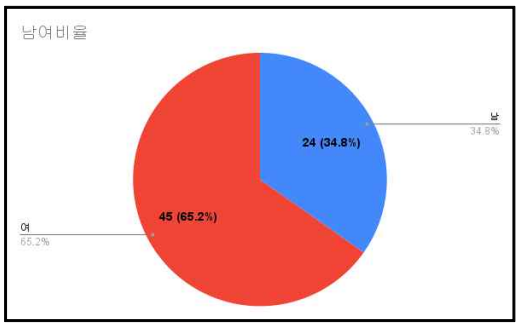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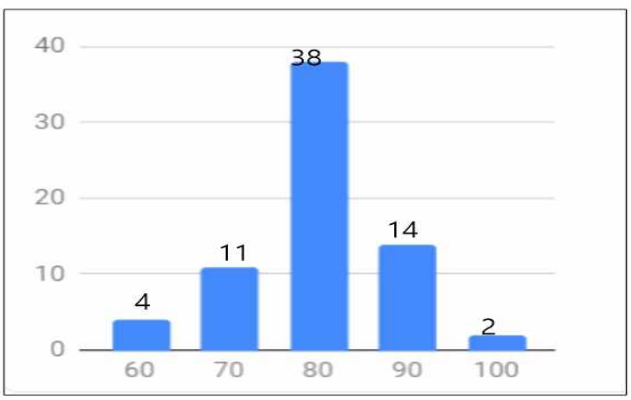
5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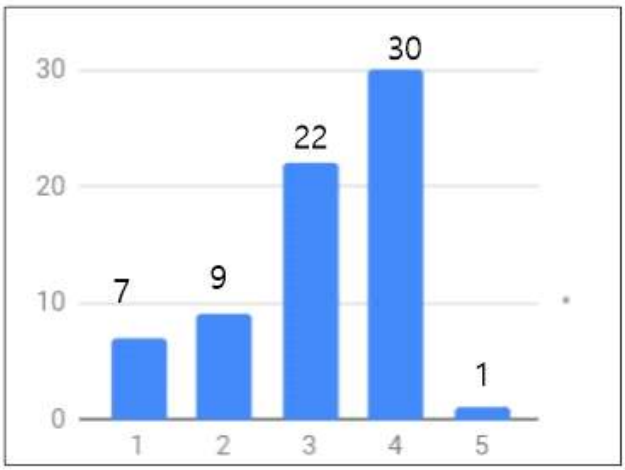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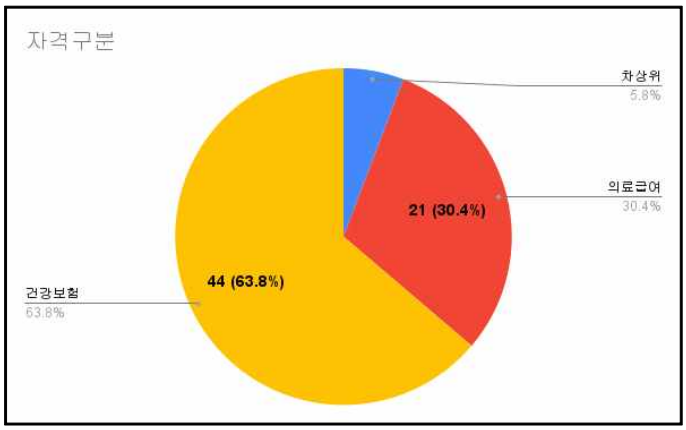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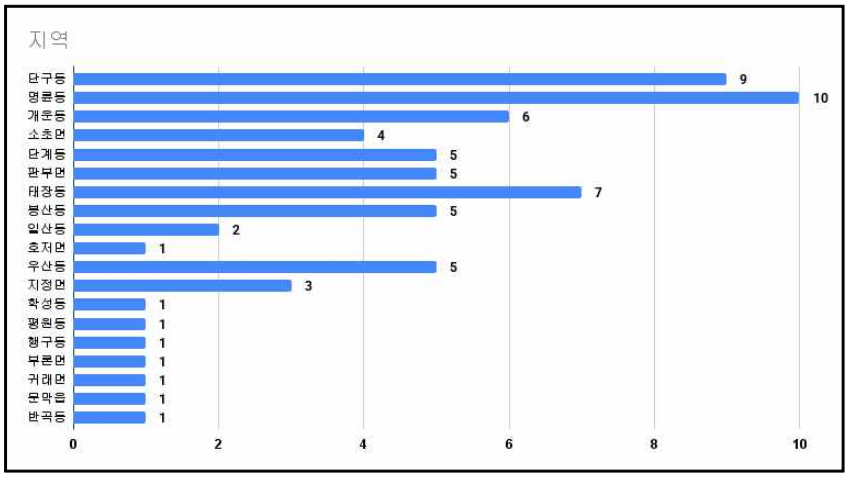
1)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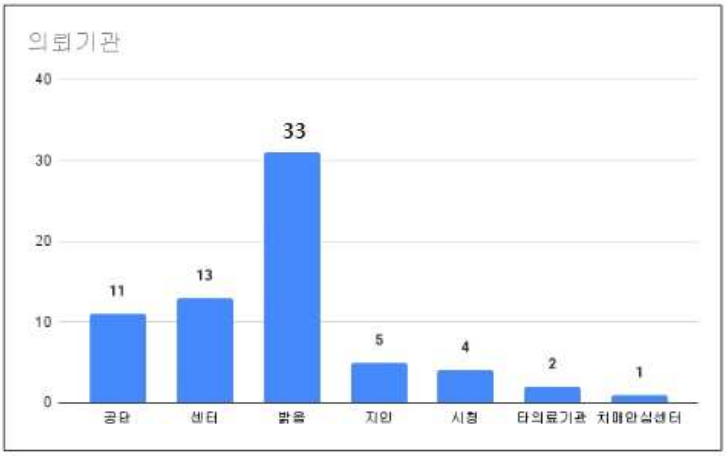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사업배경	- 노인들은 자신이 살던 집에서 계속 거주하고 싶어도 거동불편과 복합 질환으로 돌봄과 의료욕구가 제대로 충족되지 못하여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요양시설이나 의료 기관에 입소 또는 입원하는 경우가 많음. - 원하지 않는 시설입소나 예기치 못한 반복적인 의료기관 방문 및 입원은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노년기 보건복지 비용의 증가와 비효율을 유발하게 됨. - '지역사회 계속 거주'의 지원을 위해서는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대상 노인에게 '의료' 와 '요양' 을 아우르는 통합적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장기요양 재가서비스의 질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음. - 초고령사회를 앞둔 시점에서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재가서비스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문형 재택의료·돌봄서비스의 확충이 필수적임.
운영시기	1월~12월
사업목적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접근성이 제한된 상태의 재가 장기요양노인 대상으로 다학제 통합서비스가 가능한 재택의료센터를 마련하여,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 해당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 연계를 적절하게 제공.
사업세부서비스내용	

<table>
<tr><td></td><td>
<table>
<tr><td colspan="6">다학제 팀 공통 역할</td><td rowspan="2">의사</td><td rowspan="2">간호사</td><td rowspan="2">사회
복지사</td><td rowspan="2">다학제팀
점검 및
평가</td></tr>
<tr><td colspan="2">포괄평가</td><td colspan="2">사례회의
(주1회)</td><td colspan="2">케어플랜
수립</td></tr>
<tr><td colspan="2">•일반사항
•건강 및 질병
•기능상태
•의료·간호 욕구
•사회·환경 상태</td><td colspan="2">•문제목록 검토
•우선순위 선정
•해결방안 모색
•역할분담 논의</td><td colspan="2">•방문 횟수
•건강·질병관리
•의료·간호계획
•자원연계계획
•가족과 공유</td><td>•방문진료
(월 1회)
•약물조정
•투약처방
•간호지시</td><td>•방문간호
(월 2회)
•건강관리
•영양관리
•간호처치</td><td>•자원연계
(수시)
•협력체계
구축
•일정관리</td><td>1년 단위
포괄평가
↓
케어플랜
재수립</td></tr>
</table>
</td></tr>
</table>

2) 사업수행 결과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참 여 자</td><td colspan="2">69명(24년 12월 기준)</td></tr>
<tr><td rowspan="2">방문건수</td><td>방문진료</td><td>총 602건</td></tr>
<tr><td>방문간호</td><td>총 1384건</td></tr>
<tr><td>성별비율</td><td colspan="2">여성 45명 (65.2%) >남성 24명 (34.8%)

</td></tr>
<tr><td>연 령 별
인 원</td><td colspan="2">80대 > 90대 > 70대 > 60대 > 100대

</td></tr>
</table>

장기요양 등 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5등급 
자격구분	건강보험 44명(63.8%)> 의료급여 21명 (30.4%) > 차상위 4명 (5.8%) 
서비스신청	명륜동 >단구동> 태장동 

서비스 신청 의뢰기관	밝음의원> 장기요양센터> 공단 

2024 사무국 주요 활동 사업 보고

1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사업보고

1) 건강반장이란?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주민참여형 돌봄 모델로 지역, 마을 주민들의 건강 돌봄 및 의료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발굴·연계하는 마을의 건강활동가

2) 돌봄대상 : 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취약가정 노인 등

3) 활동내용

: 말벗, 안부확인, 건강관리, 보건예방활동(정서지원, 놀이활동 등), 의료복지취약 대상자 발굴 및 연계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3">내 용</th></tr>
<tr><td>목 적</td><td colspan="3">-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운영을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도모
- 건강반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및 건강반장 발굴·육성 ·확대</td></tr>
<tr><td rowspan="9">활 동</td><td>운영시기</td><td colspan="2">1월~12월</td></tr>
<tr><td>건강반장 인원</td><td colspan="2">총 31명</td></tr>
<tr><td rowspan="8">활동 지역 및 명단</td><td>신림2리 (11명)</td><td>최태인, 조규봉, 이정옥, 조영식, 김한기, 김충열, 이순준, 김중옥, 임복규, 이명배, 윤정숙</td></tr>
<tr><td>황둔(3명)</td><td>백낙진, 안봉녀, 최종은</td></tr>
<tr><td>봉산동(8명)</td><td>권순덕, 김기월, 정순옥, 이동자, 차순분, 조재호, 지순자, 임영희</td></tr>
<tr><td>단구동(4명)</td><td>김영신, 김기로, 한정자, 정진옥</td></tr>
<tr><td>개운동(2명)</td><td>안정옥, 강부선</td></tr>
<tr><td>명륜동(1명)</td><td>홍성진</td></tr>
<tr><td>문막읍(2명)</td><td>김선동, 김양수</td></tr>
</table>

일 자	진행	참여인원	실인원
신규건강반장교육	2회	4명	4명
건강반장 집담회	2회	60명	30명
역량강화교육	10회	270명	30명

집담회 및 교육

- 신규건강반장교육
· 활동 매뉴얼 안내(지역사회 내 건강반장 역할 및 활동 내용 등)
· 실습(혈압기 사용방법 등)
· 활동 물품 지급(혈압기, 색연필, 활동지 등)

- 건강반장 집담회
· 건강반장 활동 관련 안내 및 질의응답
· 신규건강반장 소개, 서식 배부, 서류 작성 등
· 건강교육
: 통증, 진통제, 올바른 약복용, 고혈압, 당뇨, 여름철 식중독 예방, 탈수, 요실금, 섬망, 치매, 노년기 우울증, 낙상예방
· 건강활동 교육 : 건강 건강약속 정하기, 두뇌운동, 건강체조(맨몸, 라텍스)
·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및· 건강반장활동 질의응답

- 역량강화교육
· 노인인권교육,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
· 건강반장활동 공유 및 건의사항 나눔

□ 총평

- 총 14회 진행. 2024년 한 해에 31명 활동.
- 신규 건강반장의 최초 활동 시작 전, 건강반장의 사업 취지, 활동 매뉴얼 등을 안내하여 지역사회 내 건강반장 역할과 활동 내용을 숙지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함.
- 정기적인 집담회와 역량강화교육으로 건강 교육, 노인인권교육, 생활 속 응급처치 교육 , 건강체조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 건강반장에게 교육을 하고, 건강반장은 교육받은 것을 대상자에게 전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 건강반장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체력 저하, 질병, 낙상 등의 이유로 그만 두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음.
- 대상자의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대상자의 사망, 요양병원 입원, 요양원 입소 등의 이유로 건강반장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음.

2 강원도특별자치도 양성평등기금사업
‘시니어가 선생님이 되고 우리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사업보고

1) 시니어 텃밭 선생님 육성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농업과 가사의 중심이었던 시니어 여성들이 친환경 농업, 돌봄, 영양, 지역 먹거리 등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 지역 내 건강가족사업 현장에서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력 양성</td></tr>
<tr><td>정 의</td><td>시니어 텃밭 선생님
: 농업과 가사 중심이었던 시니어 여성으로 친환경 농업, 돌봄, 영양, 지역 먹거리 등에 대한 지식과 건강 돌봄에 대한 지식을 숙지하여 지역 내 건강가족사업 현장에서 숙련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자.</td></tr>
<tr><td>활 동</td><td>대상 | 시니어 여성
교육 이후, 젊은 부부와 미성년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을 대상으로 텃밭 상시교육(안전교육, 텃밭 기초 상담 등), 가족관계소통교육 등 보조, 돌봄 진행
<table>
<tr><th>일자</th><th>교육 내용</th><th>강사</th></tr>
<tr><td>5/21(화)</td><td>나와 지역을 돌보는 건강한 생활</td><td>구현석
(횡성농부발자국 영농조합 대표)</td></tr>
<tr><td>5/23(목)</td><td>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농업과 농촌 돌봄 공동체</td><td>구교선
(원주생명농업협업농장 운영위원장)</td></tr>
<tr><td>5/28(화)</td><td>여성과 농업, 연대하는 살림 공동체</td><td>한영미
(횡성여성농업인센터대표)</td></tr>
<tr><td>5/30(목)</td><td>우리 마을의 돌봄을 생각하다.</td><td>천혜란
(위드커뮨협동조합이사장
/사회복지학박사)</td></tr>
</table></td></tr>
</table>

2) ‘우리 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텃밭 활동과 더불어 텃밭 기초교육, 안전교육, 가족관계소통교육, 성과공유회(앨범증정)를 통한 가족관계 증진, 지역 먹거리 인식 개선 도모

<table>
<tr><td rowspan="3">활 동</td><td>대상</td><td>미성년 자녀를 둔 18가정</td></tr>
<tr><td>내용</td><td>
<table>
<tr><th>일 자</th><th>활동</th><th>참석인원</th></tr>
<tr><td>5월~11월</td><td>‘정겨운 텃밭’운영(수시)</td><td>18가정, 67명</td></tr>
<tr><td>5/25</td><td>텃밭오리엔테이션
(안전교육 및 기초 영농교육)</td><td>18가정, 72명</td></tr>
<tr><td>6/15</td><td>영농교육(친환경 농약,
미생물제재 관련 교육)</td><td>17명</td></tr>
<tr><td>9/28</td><td>고추장 만들기</td><td>18가정, 35명</td></tr>
<tr><td>10/12</td><td>나무그릇 만들기</td><td>16가정, 39명</td></tr>
<tr><td>11/9</td><td>김장 담그기</td><td>18가정, 40명</td></tr>
<tr><td>11/23</td><td>성과공유회(앨범증정)</td><td>33명</td></tr>
</table>
</td></tr>
<tr><td>활동</td><td>- 텃밭 활동, 텃밭 기초교육
- 안전교육, 가족관계소통교육, 성과공유회(앨범증정)
- 네이버 활동을 통한 텃밭 가족-시니어 텃밭 선생님 교류
(텃밭 활동, 정보, 질의응답, 텃밭활동 후 요리, 가족간 소통활동 등)</td></tr>
</table>

□ 총평

-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은 4회, 12명 이수함.
- 우리 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사업은 18가정(67명) 참여함.
- 시니어 텃밭 선생님 양성교육은 교육 기간이 짧았다는 의견과 함께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이었고 실습 활동이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의견이 많았음.
- 우리 가족 건강이 자라는 정겨운 텃밭 사업은 오리엔테이션 때, 18가정이 모두 참석하였고, 가족이 함께 텃밭을 일구고 좋은 먹거리를 가꾸며 다양한 가족관계 소통교육이 이루어져 가족들의 호평을 받았음.
- 맞벌이 가정, 어린 자녀들의 양육으로 인해 일정 조정이 어려워 최대한 많은 가정의 참여를 위에 같은 교육을 2~3회를 진행하였음.

3 강원의료사협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사업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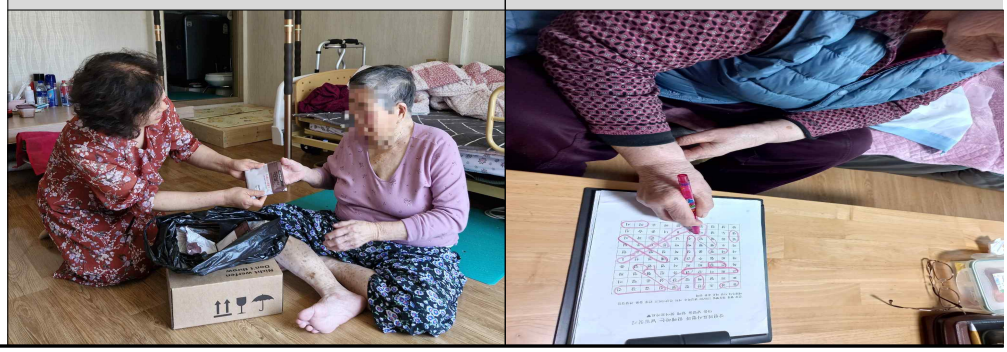
구 분	내 용
목 적	- 조합원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 증진 - 조합원 간 지지체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습관화를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조합원 간 관계증진을 통한 조합과의 관계 및 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

<table>
<tr><td>정 의</td><td colspan="3">똑똑건강반
: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관심을 가진 최소 5명의 조합원들이 스스로 모여 행복한 건강 활동을 하며 건강자치력을 기르는 강원의료사협의 건강소모임.</td></tr>
<tr><td rowspan="3">활 동</td><td>운영시기</td><td colspan="2">7월~11월</td></tr>
<tr><td>대상</td><td colspan="2">최소 5명의 조합원</td></tr>
<tr><td>현황</td><td colspan="2">
<table>
<tr><th rowspan="2">똑똑건강반</th><th rowspan="2">인원</th><th colspan="2">활동</th></tr>
<tr><th>필수활동</th><th>선택활동</th></tr>
<tr><td>바르게 걷기</td><td>6명</td><td>바르게 걷기,
맨발걷기, 근력운동</td><td>건강한 맛집 탐방</td></tr>
<tr><td>맨발의 책수다</td><td>5명</td><td>맨발 걷기</td><td>책독후, 건강맛집
탐방</td></tr>
<tr><td>어차피 스마일</td><td>5명</td><td>걷기</td><td>각종 건강활동</td></tr>
</table>
<table>
<tr><th></th><th>맨발의 책수다</th><th>바르게 걷기</th><th>어차피스마일</th></tr>
<tr><td>오리엔테이션</td><td>3명</td><td>5명</td><td>5명</td></tr>
<tr><td>사전검진</td><td colspan="3">7월 전체 참여</td></tr>
<tr><td>네이버 밴드</td><td>13회</td><td>14회</td><td>5회</td></tr>
<tr><td>활동</td><td>15회</td><td>15회</td><td>8회</td></tr>
<tr><td>조합행사</td><td>1회</td><td>1회</td><td>1회</td></tr>
<tr><td>간담회</td><td colspan="3">11월~12월 전체 참여</td></tr>
<tr><td>사후검진</td><td colspan="3">11월 전체 참여</td></tr>
</table>
</td></tr>
</table>

□ 총평

- 2024년 처음 시작한 똑똑건강반은 강원의료사협의 건강소모임으로 세 팀이 시작함.
- 2주에 1회 만나는 것을 목표로 하였으며 세 팀은 열심히 활동을 진행하였음.
- 똑똑건강반원들은 사전, 사후 검진을 통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알아보고 건강에 대해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함.
- 네이버 밴드에 활동 내용 업데이트와 활동일지 작성이 의무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라는 의견과 활동 규정을 더욱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공존하였으며 활동비에 검진비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이를 참고하여 2025년 똑똑건강반 2기를 모집할 예정임.

4 노인건강돌봄서비스 봉사활동 사업보고

<table>
<tr><th>구 분</th><th colspan="2">내 용</th></tr>
<tr><td>목 적</td><td colspan="2">노인건강돌봄지도사가 지역 어르신의 안부확인, 말벗, 인지활동,
약 전달 및 약 복용 확인 등 이웃돌봄 실천을 통한 지역사회에 기여</td></tr>
<tr><td>정 의</td><td colspan="2">노인건강돌봄지도사
: 노인과 돌봄에 대한 보건·의료·복지 분야 상식 수준의 지식을 숙지하고 건강돌봄의 실천에 대한 이론을 습득하여 돌봄현장에서 숙련되게 수행가능한 직무능력을 갖춘 자</td></tr>
<tr><td rowspan="4">활 동</td><td>운영
시기</td><td>상시</td></tr>
<tr><td>대상</td><td>독거, 조손가정, 거동불편, 경증치매, 건강취약가정 노인 등</td></tr>
<tr><td>활동</td><td>기본 주민돌봄(말벗, 안부확인). 건강돌봄, 보건프로그램(낙상예방 교육 등), 정서 프로그램 등을 접목한 통합돌봄프로그램 진행.
필요시, 의료복지 취약대상자 발굴 및 연계(주 1~2회 가정방문)
- 대상자 인원: 대상자 3가정
- 장소: 대상자 가정
- 봉사내용 : 가정방문을 통한 노인건강돌봄프로그램 진행
(말벗, 안부확인, 건강증진활동 등)
<table>
<tr><th>월</th><th>횟수</th><th>시간</th><th>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원봉사자 수</th></tr>
<tr><td>1</td><td>11회</td><td>17시간</td><td>4명</td></tr>
<tr><td>2</td><td>9회</td><td>13시간 30분</td><td>3명</td></tr>
<tr><td>3</td><td>4회</td><td>3시간</td><td>1명</td></tr>
<tr><td>4</td><td>3회</td><td>3시간</td><td>2명</td></tr>
<tr><td>5</td><td>4회</td><td>2시간 30분</td><td>1명</td></tr>
<tr><td>6</td><td>4회</td><td>2시간</td><td>1명</td></tr>
<tr><td>7</td><td>3회</td><td>2시간</td><td>1명</td></tr>
<tr><td>8</td><td>3회</td><td>1시간 30분</td><td>1명</td></tr>
<tr><td>9</td><td>3회</td><td>1시간</td><td>1명</td></tr>
<tr><td>12</td><td>1회</td><td>1시간 30분</td><td>1명</td></tr>
<tr><td>총</td><td>45회</td><td>47시간</td><td>16명</td></tr>
</table></td></tr>
<tr><td>활동
사진</td><td colspan="2">약 전달 및 약 복용확인 / 인지활동(건강 관련 단어 찾기)
</td></tr>
</table>

□ 총평

- 조합에서 진행한 '노인건강돌봄지도사' 과정을 이수하고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한 노인 '건강돌봄지도사' 자격을 갖춘 봉사자 4명이 세 가정에 방문하여 진행함.
- 봉사자는 주로 말벗, 안부확인, 환경점검 등 기본적인 활동과 더불어 건강체조, 약 전달, 약 복용 확인, 인지 활동 등을 수행하였으며 3명의 어르신은 봉사자와 함께 건강활동을 진행하며 마음건강과 신체 건강은 돌봄에 만족하였음.
 보호자 또한 홀로 계신 모친의 안부를 확인하고 건강을 돌보아 주는 봉사에 만족하였음.
- '노인건강돌봄지도사'과정 이수 후, 지역, 취업, 본업 등으로 봉사활동 대상 매칭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어려워 현재는 1명만 활동하고 계심.

2024년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사업보고

■ 총평

-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재가노인복지시설, 시설코드 2번,2-51130-00465)로 변경, 구)재가장기요양기관 강원의료사협 길동무(시설코드 3번), 2024년 8월 1일. 사회복지사업법상 노인복지시설로 전환하여 비영리적 성격을 더 명확히 함. 시설 변경에 따른 센터장을 신옥경에서 박준영으로 변경함.
- 24년 1월 대상자 15명(파트 11명, 가족 5명(목욕 중복))으로 시작했으나, 24년 12월 말 기준 13명(파트 10명, 가족 3명)으로 감소함.
 이에 따른 사회복지사 가산청구 조건이 미충족되어 운영에 차질이 발생함.
- 기존 김지영 사회복지사가 퇴사(24. 9. 30.)하고 신규로 유진영 사회복지사 입사(24. 11. 11.)함. 사회복지사 변경에 따른 업무 공백(대상자 관리 및 신규 요양보호사 채용 등)이 발생함.
- 24년 11월 중순부터 대상자 모니터링 강화 및 관리 체계 변화를 통하여 시설 안정화에 노력을 가함.
- 24년 8월부터 원주시청 일상생활돌봄 바우처 사업에 원주권역 5개 사회적경제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참여하여 19이상 65세 이하의 청년 및 중장년에게 서비스를 제공함.

1. 사업현황

1) 직원현황: 총 20명

(대표자1명, 시설장1명, 사회복지사1명, 간호사1명, 요양보호사16명)

이름	담당업무	직위	자격 및 비고
이광희	▪법인 대표	이사장	업무 총괄
박준영	▪사업계획, 운영관리 ▪사업지도 및 감독	시설장	신옥경(24. 8. 1.자 변경)
유진영	▪교육 및 상담 ▪가산업무 ▪서비스 계약 및 관리 ▪자원연계 ▪요양직원업무관리 ▪행정	직원	김지영(24. 11. 11. 자 변경) 사회복지사 1급
신현경	▪행정, 회계	직원	조합 총무(겸임)
염은경	방문 간호	직원	간호사(겸임)

2) 요양보호사 16명 근무현황

이 름	담당업무	직위	자격
계지영, 김미옥, 이은희(3명)	가족요양	요양직원	요양보호사 1급
강금자, 김경옥, 김덕역, 김선옥, 김연화, 김옥자, 김혜숙, 신연옥, 심혜경, 이상순, 이원희, 전옥수, 황계순(13명)	방문요양		

- 비급여 : 이선미, 한경남,
- 일상돌봄 : 유승남

3) 방문요양서비스 이용현황

서비스구분(월)		방문요양(명)	방문간호(명)	방문목욕(명)
월별 이용 인원수 (연인원/명)	1	15	-	1
	2	14	-	1
	3	14	-	1
	4	14	-	-
	5	14	-	-
	6	14	-	-
	7	14	-	-
	8	13	-	-
	9	13	-	-
	10	12	-	-
	11	12	-	-
	12	12	-	-
월평균인원		13명	-	1명

4) 대상자 이용현황 (방문요양 기준)

- 파트요양(9명) : 고0만(기초), 김0수(기초), 김0자, 신0순, 이0원, 이0추, 지0순(기초), 함0길(기초), 문0석(기초)
- 가족요양(3명) : 김0중(가족), 이0만(가족), 한0석(가족)
- 방문목욕(1명) : 정0택

2. 사업내용

1) 상담

- 대상자 가정 정기방문 및 서비스 상담 180건,

2) 교육 및 회의

-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길동무 전체 직원 월례회의 및 교육 (해당 지침 및 법정의무교육 포함)

3) 자원연계
- 신협사회공헌재단(연탄지원, 24년 11월): 김0식,
- 농촌 사업 주거환경개선 이동식 에어컨 지원(지○순 어르신, 8월 21일)

4) 서비스연계
- 장애인주치의사업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연계(장애인주치의사업에 등록한 분)
- 강원통합돌봄사업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연계
- 원주시청 재가 의료급여 연계

5) 사례관리
- 매월 월례회의를 통한 대상자 상태변화보고 및 조치
- 대상자 및 보호자 전화상담
- 장기요양보험 이용 및 등급인정 문의자
- 등급신청 도움 및 상담 20명

6) 운영회의 및 기타
- 법인 이사회 대체 운영
- 법인 내 직원회의 등 공유

제3호 의안 : 정관 개정(안)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 안건 제안 배경

- **의료기관 세부 주소지 명시, 조합의 지사무소 등 개정**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등 개정 및 보완 사항 반영**
- **사업의 종류 추가**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정관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 4층에 둔다.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복지부 고시에 따른 의료기관 세부 주소지 명시 조합의 지사무소 및 제 2 진료소 삭제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18조(출자)**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제19조 개정 사항 반영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 중에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기간을 정하도록 하던 것을 선거일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해당 행위가 금지되도록 법정화되었음.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12. (신설) 차입금을 통한 기본 자산의 취득과 처분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조문 준용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휴업 또는 계속 3. 조합원의 제명 4. (신설) 탈퇴 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협동조합기본법 제29조 조문 준용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③ (신설) 임원의 결원에 따른 보궐선거는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④ (신설) 임원의 임기만료 또는 사임으로 제45조에 따른 임원의 정수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퇴임한 임원은 새로운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 임원의 권리 의무가 있다. ⑤ (신설) 제1항~제4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임원의 결원에 따른 정관 내용이 없으므로 보완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③ (신설)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는 제51조에 정한 순서대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신설) 임원의 해임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해당 임원은 의결에 참가할 수 없다.	임원의 해임에 대한 보완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 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지역사업형으로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가. (신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나. (신설) 1.(가~아)의 사업 활성화 및 통합을 위한 지원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지역사업형으로 수입지출예산서 및 사업결과보고서 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으로 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조문 반영, 주사업 유형 문구 및 방식 등 추가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③ 제2항에 따른 총 공급량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총 공급량을 산정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조문 반영

제4호 의안 : (아이쿱 연대협력 선출) 임원 해임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협동조합기본법 제31조(대의원총회)**

⑥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다만, 대의원총회는 협동조합의 합병·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1.>

※ 대의원(조합원) 102명 中 5분의 1이상 인 24명이 총회 안건으로 해임안 상정 동의

■ 제안배경

1. 2024년 3월 21일 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제3호 의안 “건강한 지역사회 운동을 위한 연대협력 비전 결의 중단의 건” 승인 함.

2.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다음과 같이 요청함.

- 아이쿱 몫으로 제9차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들의 사임 요청

3. 아이쿱 연대 협력 중단에 따른 이사 사임 현황(총 9명 중 6명 사임)

- 안승혜(춘천) : 사임일자 - 23. 8. 28
- 양종천(춘천) : 사임일자 - 24. 4. 9
- 강숙임(춘천) : 사임일자 - 24. 4. 9
- 도수연(충주) : 사임일자 - 24. 4. 9
- 장태선(충주) : 사임일자 - 24. 4. 9
- 김소민(원주) : 사임일자 - 24. 5. 23
- 사임거부 : 김유미(원주), 차윤정(원주), 김은주(원주)

4. 보건복지부 정기 감사 지적 사항 받음.

- 제48조 임원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사항

※임원은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음. (연속 불참 임원 조치 요구함.)

3. 임원에 관한 사항

○ **임원의 의무와 책임과 관한 사항**

- 정관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임원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할 것을 정하고 있음
- 하지만 '21.4. ~ '24.3. 총 24회의 이사회가 개최되었고 그 중 이사 이○호, 서○남은 연속 3회 불참, 최○심 연속 4회 이상 불참, 변○수 연속 5회 불참, 도○연 연속 6회 이상 불참, 안○혜 연속 10회 등으로 이사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붙임 참고
- 이사회의 적절한 운영 및 임원의 책임을 다하도록 조합 내 조치 등이 필요함

조합 정관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보건복지부 감사 지적 사항 조치 실시

· 제200차(24. 9. 4) 이사회에서 이사회 운영 규정 개정의 건 승인 함.

현행	개정안	개정사유
제8조 (불참통보) ② 2회 이상 연속 불참 시에는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불참통보) ② 연속 3회 이상 불참시에는 그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사회의 동의를 얻지 못할 때에는 사임한 것으로 한다. ③ 해임의 경우 총회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사회의 적정한 운영 및 임원의 책임 강화

5. 이사회 참석 안내 및 연속 불참(연속 3회 이상)에 따른 불참사유서 제출 요청함.

- 이사회 참석 안내하였으나 지속적 불참 및 이사장, 전무의 문자, 전화 수신거부,
- 연속 3회 이상 불참에 따른 불참사유서 작성 제출 요청(공문(등기우편), 문자 발송)
- 1차 발송(9월 11일) : 김은주(수취거부), 차윤정(장기 미수령으로 인한 반환), 이창호(방문수령), 김유미(등기수령)
- 2차 발송(9월 24일) : 김은주(수취거부), 차윤정(수취거부)
- 불참사유서 미제출자 : 김은주, 차윤정, 김유미 / 불참사유서 제출자 : 이창호

■ 의결 주문 사항

- (아이큡 연대 협력 선출) 김유미, 김은주, 차윤정 이사 3인의 해임을 승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제5호 의안: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 의결 주문 사항

아래의 2025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승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내가 살던 곳에서 의료+복지+요양+돌봄을 통한 인간적 돌봄 실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2025년 사업계획(안)

사회적기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목적 및 활동

1 설립목적

1)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2)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3)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2 조합의 사명

지역주민이 조합원으로 참여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며 믿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통하여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조합원과 함께하는 보건·복지·건강마을 만들기 활동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조합원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지역사회를 이루는데 기여한다.

3 주요 활동

1)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2) 조합원 및 지역주민 건강유지, 증진에 기여.
3)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
4) '건강한 마을 만들기'에 기여
5)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으로 운영
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기여하는 협동조합인을 양성

4 20주년 슬로건

1) 인간과 노동 그리고 존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2) 조합원의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책임지는 조합 실현
3) 의원급 주치의제와 함께 병원급 주치의제 구현
4) 의료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기본 현황

1 조직도 및 직원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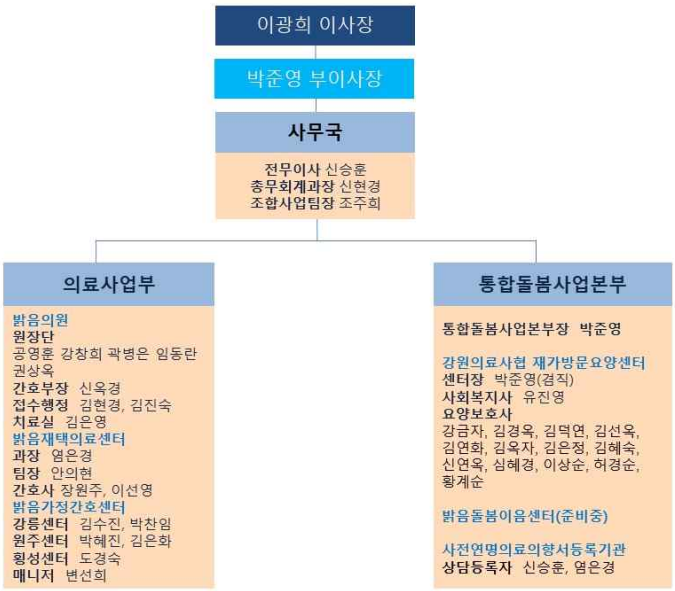
1) 조직도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조직도(25. 2)



2) 직원현황

직 원 현 황(25. 2)



2 분장사무

구분	부서	직함	성명	담당업무	비고
	이사장		이광희	이사장	
	부이사장 (통합돌봄사업본부장)		박준영	조합 운영 지원 및 대외협력 업무 통합돌봄사업본부 업무 총괄	
사무국	전무이사		신승훈	조합 실무 총괄 이사회 운영 원장단 운영 대외협력업무 기획사업 및 프로젝트	
	총무회계과장		신현경	법인세무관리(법인세, 소득세) 직원 입퇴사 관리, 연차관리 직원급여, 연말정산, 원천세 신고 출자금관리 결산(이사회 자료작성, 재가센터 매출내역)	
	조합사업팀장		조주희	조합원 관리 및 조합 홍보 조합 활동 및 소모임 등 운영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운영 법정의무교육	
의료 사업부	밝음의원 원장단	대표원장	공영훈	가정의학과, 예방의학과	외래, 방문진료, 촉탁의
		의사	강창희	재활의학과	외래, 촉탁의
		의사	곽병은	마취통증의학과	방문진료 전담
		의사	임동란	영상의학과	방문진료 전담
		의사	권상옥	소화기내과	방문진료 전담 (생애말기)
	밝음의원 간호부	부장	신옥경	간호파트 총괄	
		간호조무사	김현경	외래(접수, 수납, 청구 등)	
		간호조무사	김은영	외래(치료실)	
		간호조무사	김진숙	외래(접수, 수납)	
	밝음가정 간호센터	센터장	공영훈	가정간호센터 운영 총괄	
		가정전문 간호사	김수진	강릉지역센터장	
			박찬임		
			박혜진	원주지역센터장	
			김은화		
			도경숙	횡성지역센터장	
		매니저	변선희	가정간호센터 행정 전담 촉탁 요양시설 관리	

	밝음재택의료센터	센터장	공영훈	재택의료센터 운영 총괄	
		과장	염은경	재택의료센터 실무 총괄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NH기탁사업(농촌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생애말기돌봄시범사업	
		팀장	안의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생애말기돌봄시범사업	
		간호사	장원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장애인건강주치의사업	
			이선영		
통합돌봄사업부	강원의료사협재가방문요양센터	센터장	박준영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 총괄	
		사회복지사	유진영	계약 체결 및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등급인정기간 및 서비스 제공관리 대상자 및 보호자 상담 관리 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 월례회의 운영	
		요양보호사	강금자	일선 요양서비스 제공 대상자 및 보호자, 사무실과 수시 소통 신체활동지원(개인위생, 식사 및 이동 도움 등) 인지활동 및 인지관리 지원 정서지원(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김경옥		
			김덕연		
			김선옥		
			김연화		
			김옥자		
			김은정		
			김혜숙		
			신연옥		
			심혜경		
			이상순		
			허경순		
			황계순		
	밝음돌봄이음센터			준비중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상담등록자	신승훈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자신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연명의료중단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	
			염은경		

사 업 계 획

1 2025년 중점방향

1) 재택의료사업을 중심으로 의료사업소와 돌봄사업소의 통합돌봄사업 연계 강화

2) 돌봄통합지원법(약칭) 시행('26.3.)에 따른 지자체,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

3) 건강, 돌봄에 대한 조합원의 관심과 참여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강화

4) (건강반장), 공공형(공익활동)에서 사회서비스형으로, 건강한 주민 돌봄의 전환 준비

5) 지역사회(유관기관)와 함께 만들어가는 건강·돌봄 프로그램 확산

6) 조합원 참여(재능기부, 자원봉사 등)를 통한 다채로운 활동 시도

7)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확대

8) 협동조합형 노인공동생활가정 설립을 위한 조합원 참여 및 자본 조성 추진

2 주요사업계획(안)

구 분	주 요 사 업 내 용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① 건강주치의(질환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② 예방접종사업(대상포진, 폐렴 ,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③ 재택의료센터 (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주사)
	④ 가정간호센터(원주센터, 강릉센터, 횡성센터)
	⑤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① 신규 대상자 확대
	② 서비스 질 향상 및 모니터링 강화
	③ 요양보호사 교육 및 소통 확대
	④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① 농촌, 시내 경계 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NH증권)
	② 빈곤층 건강 지원 협력(노숙인 센터,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③ (균형영양먹거리 응원)모두웰 후원회(행정지원)
	④ “건강한 삶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보탬비(후원금) 운영
조합 운영 및 관리	①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② 유관기관 간담회(복지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
	③ 대의원 “소통의 날”
	④ 대의원 역량강화교육(견학 프로그램)
	⑤ 임직원 역량강화교육(의료진, 직원, 임원)
	⑥ 임직원 워크샵
조합 활성화	① 조합 홍보(온라인, 오프라인)
	② 원주건강수다(다양한 주제의 강의)
	③ 조합원 스킨십 강화(신규 조합원 교육, 조합원 간담회)
	④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⑤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 건강반”
	⑥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⑦ 강원의료사협 자원봉사단
	⑧ 공생추진위원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지역사회 연계 협력	①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복지관 등)
	②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③ 밝음신협과 함께하는 밝음건강학교

세 부 사 업 계 획

1 일차의료기관 “밝음의원”

1) 건강주치의(질환 예방, 건강 증진, 만성질환 관리)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조합원과 조합원 가족의 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돌보는 의사로서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 예방, 건강 증진, 만성 질환 관리 등 포괄적인 건강 관리를 제공</td></tr>
<tr><td>운영시기</td><td>상 시</td></tr>
<tr><td>대 상 자</td><td>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밝음의원 환자 등</td></tr>
<tr><td>사업내용</td><td>○ 맞춤형 건강 관리
개인의 건강 상태, 생활 습관, 가족력 등 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계획 수립
정기적인 건강 검진과 상담을 통해 질병을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
○ 만성 질환 관리
고혈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 만성 질환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합병증을 예방
환자의 생활 습관 개선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지원
○ 건강 상담 및 교육
건강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건강 습관 교육
정신 건강 문제나 스트레스 관리 등 건강 전반에 대한 상담을 제공
○ 지역사회 건강 관리:
지역사회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 수행
지역사회 보건의료 자원을 연계 활용하여 효율적 건강관리 시스템 구축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 rowspan="3">건강검진</td><td>신체 검사</td></tr>
<tr><td>체성분 검사</td></tr>
<tr><td>암, 심혈관계 질환, 간 질환, 당뇨병, 결핵 등 검사</td></tr>
<tr><td>만성질환관리</td><td>고혈압·당뇨병 환자의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 교육 상담, 검사 등</td></tr>
</table>
</td></tr>
</table>

2) 예방접종사업(대상포진, 폐렴, 독감, 코로나19 백신 등)

구 분	내 용
목 적	개인에서의 감염병 발생 자체를 방지 또는 중증 감염병으로의 진행을 줄여 입원 및 사망률을 낮춤으로써 개인, 가족의 부담 최소화
운영시기	상시
대 상 자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밝음의원 환자 등
사업내용	-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사업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사업 - 독감, 대상포진, 폐렴 예방접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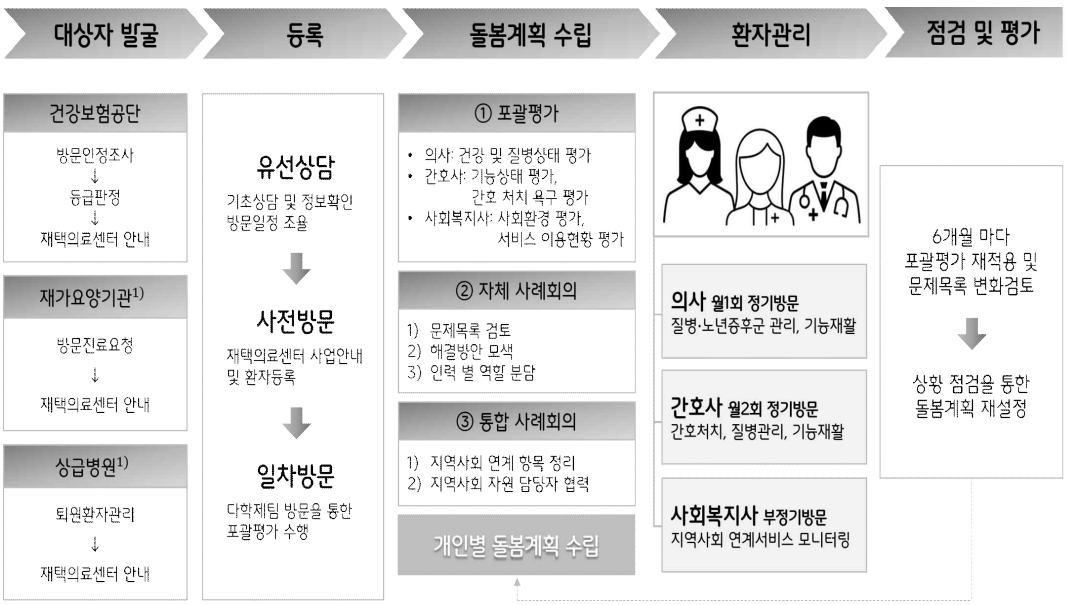
성인용 예방접종 일정

표준 예방접종 일정표 (성인용) 자세히보기

대상감염병	19~29세	30~39세	40~49세	50~64세	65세 이상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처음 1회 Tdap, 이후 10년마다 Td 1회		처음 1회 Tdap, 이후 10년마다 Td 1회 (Tdap은 65세 이하에서만 접종)		
인플루엔자	매년 1회			매년 1회	
A형간염	2회 (0, 6개월)	항체 검사 후 접종 (0, 6개월)		항체 검사 후 접종 (0, 6개월)	
B형간염	항체 검사 후 접종			항체 검사 후 접종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위험군 대상 최소 1회 접종				
수두	위험군 대상 항체 검사 후 2회 접종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여성 대상 접종				
수막구균	위험군 대상 1회 또는 2회 접종				
폐렴구균	위험군 대상 1회 접종				1회
대상포진				1회	1회

3) 재택의료센터(재택의료+ 방문진료+ 장애인건강주치의)

-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구 분	내 용
목 적	만성복합질환과 거동불편 등의 이유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재가장기요양 노인을 대상으로 재택의료센터가 수행할 업무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해당 노인의 건강관리와 돌봄연계가 적정하게 제공되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가 가능하도록 함
운영시기	상시
대 상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자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 방문이 어렵고 만성질환 및 건강문제로 재택의료가 필요하다고 의사 및 의료팀이 판단한 사람
사업내용	- 대상자의 전반적 상태와 욕구에 대하여 포괄적 평가 결과에 따른 케어 플랜 수립, 방문진료 및 간호,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통합 사례관리 제공 - 의사는 월 1회 이상 방문진료, 간호사는 월 2회 이상 방문간호 제공 - 사회복지사는 비정기적 수시 상담을 통한 요양·돌봄 수요발굴 및 서비스 연계 

<table>
<tr><td rowspan="2">산정지침</td><td>방문
진료료</td><td>방문진료료는“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따름
<table>
<tr><th colspan="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th><th>전액</th><th>청구액</th><th>본인부담금(원)</th></tr>
<tr><td rowspan="3">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td><td>일반보험(100/15부담)
※ 장기요양 1,2등급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상자 15%로 경감</td><td rowspan="3">162,650</td><td>138,260</td><td>24,390</td></tr>
<tr><td>일반보험(100/30부담)</td><td>113,950</td><td>48,700</td></tr>
<tr><td>보호1,2종,차상위
(100/5부담)</td><td>154,520</td><td>8,130</td></tr>
<tr><td colspan="3"></td><td colspan="2">※ 기초생활 수급자는
건생비에서 우선 차감</td></tr>
</table></td></tr>
<tr><td>재택의료
급여
비용기준
및 금액</td><td>
<table>
<tr><th>분류</th><th>기준</th><th>금액(원)</th></tr>
<tr><td>재택의료기본료</td><td>수급자 1인당 월 1회</td><td>140,000</td></tr>
<tr><td>지속 관리료</td><td>수급자 1인당 6개월 단위</td><td>60,000</td></tr>
<tr><td>추가 간호료</td><td>방문당 (월 3회 한정)</td><td>52,310</td></tr>
</table></td></tr>
</table>

-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구 분	내 용
목 적	거동불편자의 의료접근성 향상 및 커뮤니티케어 기반 확보
운영시기	상시
대 상 자	질병·부상 및 출산 등으로 인하여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한 환자 예시) 마비(하지. 사지마비, 편마비 등), 수술직후, 말기질환, 의료기기 등 부착(인공호흡기 등), 신경계 퇴행성 질환, 욕창 및 궤양, 정신과적 질환,인지장애, 기타 거동 불편 등
사업내용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기 어렵다고 의사가 판단한 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의원의 의사가 직접 왕진 의료서비스를 제공 대상자 ⇨ 왕진요청 방문진료 (의사, 간호사) ⇨ 서비스 제공 재택 (가정) 서비스 내용: 진찰, 처방, 질환관리, 검사, 교육상담 등

<table>
<tr><td>이용금액</td><td>
<table>
<tr><th colspan="2">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th><th>전액</th><th>청구액</th><th>본인부담금(원)</th></tr>
<tr><td rowspan="3">의사와 간호사
동반 방문시</td><td>일반보험(100/15부담)
※ 장기요양 1,2등급
산소치료, 인공호흡기
대상자 15%로 경감</td><td rowspan="3">162,650</td><td>138,260</td><td>24,390</td></tr>
<tr><td>일반보험(100/30부담)</td><td>113,950</td><td>48,700</td></tr>
<tr><td rowspan="2">보호1,2종,차상위
(100/5부담)</td><td>154,520</td><td>8,130</td></tr>
<tr><td colspan="2">※ 기초생활 수급자는
건생비에서 우선 차감</td></tr>
</table>
</td></tr>
</t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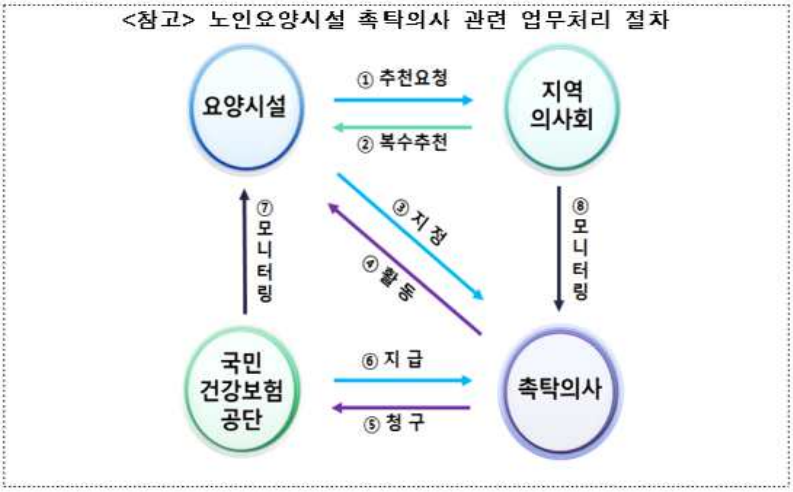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24.2부터 4단계 진행)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장애인들의 만성질환 또는 장애 등 전반적인 건강관리 계획을 세워 교육·상담, 방문 등 지속적 관리를 통한 건강한 삶 증진</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 자</td><td>모든 장애인으로 확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참여 대상자는 중복 참여 불가.</td></tr>
<tr><td>사업내용</td><td>- 장애인-주치의 상호 등록을 통한 지속적 건강관리
- 장애, 일상적 건강문제, 질병 예방, 만성질환 등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 방문의료, 전화상담 등을 통한 거동 불편 장애인의 의료 접근성 개선</td></tr>
<tr><td>항목별
수가
(25년 기준)</td><td>- 모든 장애인 방문 , 중증: 24회, 경증 4회
<table>
<tr><th>구 분</th><th>수 가</th></tr>
<tr><td>가. 포괄평가 및 계획수립료</td><td>62,950</td></tr>
<tr><td>나. 중간점검료</td><td>35,410</td></tr>
<tr><td>다. 교육 상담료 I</td><td></td></tr>
<tr><td>(1) 10분 이상 20분 미만</td><td>14,620</td></tr>
<tr><td>라. 환자관리료</td><td>10,470</td></tr>
<tr><td>마. 방문료</td><td></td></tr>
<tr><td>(1) 방문진료 I</td><td>192,090</td></tr>
<tr><td>(2) 방문진료 II</td><td>152,840</td></tr>
<tr><td>(3) 방문간호</td><td>79,810</td></tr>
</table>
</td></tr>
</table>

4) 가정간호센터(원주센터, 강릉센터, 횡성센터)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 의료취약계층(독거노인, 거동이 불편한 사람, 중증대상자, 만성노인성 질환)에 대해 재가 가정간호서비스 제공
- 급증하는 노인층의 건강실태와 장기요양 의료수요에 맞는 의료서비스 제공</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td><td>만성질환자, 뇌혈관 질환자, 호스피스 환자, 기타 거동불편자 등</td></tr>
<tr><td>사업내용</td><td>간호서비스 제공: 비위관 교환, 정체도뇨관 교환, 기관지관 교환 및 관리, 욕창치료, 단순상처치료, 염증성처치, 봉합선 제거, 방관 및 요도 세척, 수액 등</td></tr>
<tr><td>비 용</td><td>-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 진료행위별 수가(치료/재료비)로 구성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20%), 희귀/중증·난치질환자(10%), 암환자(5%)</td></tr>
<tr><td>지역센터별 간호서비스 제공현황</td><td>
<table>
<tr><th>구 분</th><th>가정간호서비스 이용 요양원(24년 말 기준)</th></tr>
<tr><td>원주센터 (26개소+재가)</td><td>은혜요양센터, 소망요양원, 흥업요양원, 행복요양원, 평심원노인요양원, 믿음요양원, 소담 요양원, 가온요양원, 노블레스 요양원, 성문노인전문요양원, 보훈요양원, 산고대노인요양센터, 천사요양원, 로얄요양원, 영월군노인요양원, 실버요양센터, 상애노인전문요양원, 상애 양로원, 행복의집, 행복둥지요양원, 보노마더스요양원, 상지요양센터, 가족요양원, 바른요양원, 보금자리요양원, 사랑마을요양원,</td></tr>
<tr><td>강릉센터 (33개소)</td><td>참좋은마을요양원, 다금요양원, 강릉부모사랑, 회산부모사랑, 다솜요양원, 우리요양원, 마루요양원, 강릉 사랑의 뜰안 요양원, 가정강릉요양원, 가애노인요양시설, 은영노인요양시설, 임영요양원, 효담요양원, 강릉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갈바리 노인 요양원, 소돌요양원, 주문진요양원, 강동요양원, 행복마을요양원, 우리시니어스요양시설, 햇빛요양원, 강릉천사요양원, 강릉노인요양시설, 드림요양원, 솔향의 집, 실버하우스, 율곡요양원, 장수마을요양원, 정한요양원, 치유재활요양원, 한빛마을요양원, 해드림, 효도마을</td></tr>
<tr><td>횡성센터 (18개소)</td><td>횡성매화실버요양원, 횡성군소규모요양원, 한결공동생활, 스마일카운티양로원, 스마일카운티요양원, 아름다운 요양원, 횡성재가노인, 골든포레스트, 횡성행복마을, 목천요양원, 시애노전문요양센터, 원주축복의집, 별자리요양원, 둔내요양원, 엘림요양원, 청일요양원, 초원의 집, 횡성효요양원</td></tr>
</table>
</td></tr>
<tr><td>기대효과</td><td>- 건강으로 고립된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간호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 및 건강한 노후 생활을 보장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
- 수요자를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의료협동조합으로서의 정체성 확립</td></tr>
</table>

5) 노인요양시설 촉탁의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목 적</td><td>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강화를 통한 질 향상 및 안정화 도모</td></tr>
<tr><td>운영시기</td><td>상시</td></tr>
<tr><td>대 상</td><td>요양원</td></tr>
<tr><td>사업내용</td><td>진찰, 처방 및 건강관리</td></tr>
<tr><td>추진체계</td><td><참고> 노인요양시설 촉탁의사 관련 업무처리 절차

</td></tr>
<tr><td>촉탁의 현황</td><td>
<table>
<tr><th>원 장</th><th>담 당</th></tr>
<tr><td>공영훈</td><td>보훈요양원, 로얄요양원</td></tr>
<tr><td>강창희</td><td>산고대요양원, 천사요양원</td></tr>
<tr><td>곽병은</td><td>로얄요양원</td></tr>
</table>
</td></tr>
<tr><td>대상자수 (24년 기준)</td><td>195명(천사 50, 산고대 25, 보훈 50, 로얄 70)</td></tr>
<tr><td>추진계획</td><td>입소자별 환자의 건강상태 및 치료에 따른 맞춤형 의료서비스 제공</td></tr>
</table>

2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1) 신규대상자 확대

구 분	내 용
목 적	요양서비스 신규 대상자 확대를 통한 사업 매출 증대
운영시기	상시
대 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1~5)을 받은 어르신
장기요양 대상자현황	20234 말 기준 서비스대상자 12명, 요양보호사 16명
25년 대상자 목표	방문요양 25명(파트20명, 가족5명)
추진계획	- 조합원 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 및 서비스 내용 홍보 - 방문진료 및 방문간호 대상자 집중 홍보 - 건강반장 및 유관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 강화 - 경로당 및 노인관련여가시설 등 홍보

2) 서비스 질 향상 및 모니터링 강화

구 분	내 용
목 적	모니터링 강화 실시, 월 1회 월례회의 실시를 통한 서비스 질 향상 도모
추진계획	- 월 1회, 최소 20분 이상의 관리자 방문상담 및 모니터링 - 수시 전화 모니터링 실시 - RFID 태그 전송율 향상 도모 - 월례회의를 통한 case 서비스 내용 공유 및 요양보호사들의 노하우 공유 - 4, 5등급 어르신 방문가산 시 다양한 인지활동 교구 및 출력물 활용

3) 요양보호사 교육 및 소통 확대

구 분	내 용
목 적	직무교육과 법정의무교육 외 역량강화을 위한 워크숍, 공동체 교육 등 참석 기회를 부여하고 전문성 향상을 도모
대상자	담당자 및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소속 “요양보호사”
추진계획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출생년도 기준, 격년) - 자체 및 온라인 법정의무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힐링 나들이 - 밝음의원을 통한 응급상황 대응 및 심폐소생술, 욕창 예방 및 관리 교육
소요예산	1,000천원

4) 일상돌봄서비스 사업(사회서비스투자사업)

구 분	내 용
목 적	- 청년 및 중장년의 일상생활 회복을 위한 사회서비스 바우처 사업 참여 - 사회적경제 조직의 컨소시엄을 통한 비즈니스 역량 강화
대상자	- 바우처 제공 서비스에 해당되는 19-64세 원주시민
추진계획	- 원주시청 사회서비스 운영 계획에 따른 탄력적 운영 - 강원도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와 협조를 통한 대상자 매칭 및 서비스 연계
사업규모	돌봄대상자 10명 확보

[참고] 2025년 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운영안

① 사업운영방안

<table>
<tr><th>구 분</th><th>내 용</th></tr>
<tr><td>장기
요양
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금</td><td>
아래 재가장기요양급여 단가는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95호(2023.12.3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것이며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 관련 법령의 개정 및 추가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소득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납부[일반은 15%, 감경대상자 9%(기타의료급여수급권자·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는 감경60%), 6%(건강보험료 순위 25~50%는 감경40%, 기초생활수급자 0%]
<table>
<tr><td>수
가</td><td>작년대비 평균 3.93% 인상
(방문요양 1.89%, 방문간호 2.34%, 방문목욕 2.14%)</td></tr>
<tr><td>인건비
(파트)</td><td>- 파트요양 기본급 10,330원, 주휴수당 2,070원(연차수당 별도)
- 가족요양: 90분 27,600원 가족요양 60분 18,800원/ 목욕 60분 이상 : 15,900원
- 4대보험, 입사 1년 후 퇴직연금 가입, 자체 중증수급자 수당(1등급)
- 명절수당, 대상자 당 교통비 50,000원, 태그100% 수당 20,000원
- 장기근속수당 6만원, 8만원, 10만원
- 사회복지수당(만 60세 이하, 월 60시간 이상 근무) 5만원</td></tr>
<tr><td>복
지</td><td>법인 내 병의원 진료비 지원, 생일 상품권 지급</td></tr>
</table>
【장기요양등급별 월한도액 및 본인부담율】
<table>
<tr><th>장기요양
등급</th><th>1등급</th><th>2등급</th><th>3등급</th><th>4등급</th><th>5등급</th><th>인지지원
등급</th></tr>
<tr><td>월한도액
(2024년)</td><td>2,069,900</td><td>1,869,600</td><td>1,455,800</td><td>1,341,800</td><td>1,151,600</td><td>643,700</td></tr>
<tr><td>월한도액
(2025년)</td><td>2,306,400</td><td>2,083,400</td><td>1,485,700</td><td>1,370,600</td><td>1,177,000</td><td>657,400</td></tr>
<tr><td>(증가액)</td><td>236,500</td><td>213,800</td><td>29,900</td><td>28,800</td><td>25,400</td><td>13,700</td></tr>
</table>
※ ① 일반대상자15%, ② 감경대상자9, 6%, ③ 기초생활수급자 0%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1.89% 인상】
<table>
<tr><th>분류</th><th>금액(원)</th><th>분류</th><th>금액(원)</th><th>분류</th><th>금액(원)</th></tr>
<tr><td rowspan="2">30분
이상</td><td>16,630(‘24)</td><td rowspan="2">120분 이상</td><td>41,380</td><td rowspan="2">210분
이상</td><td>60,530</td></tr>
<tr><td>16,940(‘25)</td><td>42,160</td><td>61,670</td></tr>
<tr><td rowspan="2">60분
이상</td><td>24,120</td><td rowspan="2">150분 이상</td><td>48,250</td><td rowspan="2">240분
이상</td><td>66,770</td></tr>
<tr><td>24,580</td><td>49,160</td><td>68,030</td></tr>
<tr><td rowspan="2">90분
이상</td><td>32,510</td><td rowspan="2">180분 이상</td><td>54,320</td><td rowspan="2"></td><td rowspan="2"></td></tr>
<tr><td>33,120</td><td>55,350</td></tr>
</table>
</td></tr>
</table>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2.34% 인상】

분류	금액(원)
30분 미만	40,760('24)
	41,71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52,310
60분 이상	61,490
	62,930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 2.14% 인상】

분류	금액(원)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 내 목욕)	86,48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 내 목욕)	77,9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8,690

【방문요양, 방문간호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

서비스 제공시각	금액(원)
평일 22시 이후 06시 이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급여는 제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에 제공한 급여	급여비용의 30% 가산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제공한 급여	급여비용의 50% 가산

【방문요양급여 중증 수급자 가산】

- 요양보호사가 1등급 또는 2등급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을 1회 180분 이상 제공하는 경우 수급자자 1인당 일 3,000원을 가산

(가산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가산비용을 해당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운영기준

-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 중 인건비 지급권장수준을 지켜야 한다. (장기요양급여비용총액이란 1년간 공단으로부터 받은 급여비용과 수급자의 본인 부담금의 합계를 말한다.)
- 장기요양요원 인건비지출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인건비지출 비율(%)	2024년	86.6	49.8	60.4
	2025년	86.6	49.6	60.1

※ 관련근거 : 고시 제11조의2

- 장기요양기관 재무회계자료는 매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한다.

<table>
<tr><td>대상자
관리</td><td colspan="2">- 장기요양1~5등급 대상자와의 ‘계약서(장기요양급여 표준약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동의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를 전담관리자가 직접 방문하여 작성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등록한다.
- 전담관리자는 대상자를 매월 1회 이상 방문하여 심신건강상태를 확인하며, 욕구사정 기록지(재가용), 공인된 척도(낙상, 욕창, ADL, 인지선별검사 CIST)를 활용한 사정평가 및 욕구변화를 파악하여 장기요양급여계획에 반영한다.
- 대상자 변화에 대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기관 평가매뉴얼에 기준에 적합하게 기록하고 5년간 보관 관리한다.
-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의료급여)수급권자는 입소·이용신청서와 재가서비스이용내역서를 지자체 승인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매년 새해 수가변동에 따른 갱신 要)
- 대상자는 방문요양 25명, 방문목욕 포함 최소 25명 이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td></tr>
<tr><td>요양보호사
관리
및 교육</td><td colspan="2">-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 1년 이상 경력을 보유한 자에 한해 서류전형과 면접을 통해 채용한다.
- 요양보호사가 치매전문교육 이수를 희망하는 경우 각 교육회차별 대상자를 선정하여 이수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 법정의무교육, 요양보호사 근무지침과 직업윤리교육, 사회적협동조합교육, CS(Customer Service) 교육 등을 실시한다.
- 매월 1회 월례회의를 진행하여 요양직원과 업무를 공유하도록 한다.
- 대상자 상태와 문제에 관한 심신상태기록지를 주1회 제출하도록 관리한다.
-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2년간 1회 의무적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한다.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보관한다. 건강검진서 1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노인학대, 장애인학대) 2부를 업무를 시작하기 전 받아서 보관하도록 한다.
- 기관은 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신규직원교육을 진행한다.
- 기관은 직원이 업무를 시작하기 전, 전문인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다.
- 기관은 운영규정, 취업규칙, 급여제공지침, 고충처리지침, 고충처리함 등을 상시 게시 및 비치하고, 직원은 이를 숙지하여야 한다.
- 기관은 요양직원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사회보험, 퇴직연금 등을 가입하도록 한다.</td></tr>
<tr><td rowspan="5">기관운영</td><td>인사관리
및 교육</td><td>신규직원교육, 치매전문교육,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노인인권교육, 법정의무교육, 자체 및 온라인 교육</td></tr>
<tr><td>업무관리
및 회의</td><td>- 이사회보고, 요양직원 월별대상자 상태보고 및 조치관련 사례회의
- 서비스모니터링에 따른 서비스 질 향상방안 논의</td></tr>
<tr><td>요양직원
관리</td><td>- 직무상담, 고충상담, 관련교육 실시
- 신규대상자 발굴 및 연계 시 독려
- 신규 요양보호사 발굴(인력Pool 구축)
- 기존 요양보호사 역량강화</td></tr>
<tr><td>대상자관리 및
신규대상자 발굴</td><td>- 월 1회 사회복지사 가정방문 및 급여제공 상황 확인, 기관장 및 관계자 방문상담, 복지자원 및 의료서비스(수급자에게 해당하는 사업의 방문진료, 방문간호, 가정간호, 재택의료시범사업 등) 연계
- 신규대상자 발굴(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 밝음의원 내원자 대면홍보, 인적네트워크 구전홍보, 원주협동사회네트워크 회원단체 공문발송, 방문진료로 의사소견서 발급 시 대면 홍보 등), 조합원 및 지역 잠재 대상자 발굴</td></tr>
<tr><td>자원 및
서비스</td><td>- 조합자원(NH투자증권 임직원 지정기탁사업-농촌사업)
- 장애인주치의사업, 일차의료기관 방문진료사업, 장기요양재택의료</td></tr>
</table>

	연계	센터 등 의료사업 연계 - 지역자원연계(원주의료원 공공의료복지지원팀, 밝음신협 사회공헌사업, 관내 행정복지센터 등 연계) - 기타 후원 및 협약단체 서비스 연계
	서비스 관리	- 대상자 사례관리 회의 실시(연 2회 상, 하반기) - 수급자 및 보호자 서비스만족도 조사 실시(연 2회 상,하반기) - 요양보호사 직무 워크숍 실시(연 1회) - 노인인권교육 및 법정의무교육 참석 지도(연 1회) - 사회복지사 법정 보수교육 참석 지원(연 1회)
	사례관리	- 월별상태 및 문제에 따른 적정조치 - 집중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관리 - 반기별 방문요양 사례회의 실시

② 사업수행 인력 및 담당업무

NO	직위	성명	직급	성별	연령	자격면허증	담당업무	비고
1	대표자, 이사장	이광희	이사장	남	48	사회복지사1급	사업총괄, 홍보, 인사관리, 예산관리, 서비스 총괄관리	겸임
2	시설장	박준영	관리책임자	남	52	사회복지사1급	사업지도 및 감독	전임
3	직원	유진영	사회복지사	여	46	사회복지사1급	사업계획, 교육, 실적 및 서비스관리, 사례관리, 가산방문, 직원고충상담	전임
4	직원	신현경	회계팀장	여	53		행정, 사무, 회계담당	겸임
5	직원	염은경	방문간호사	여	43	간호사	방문간호 담당	겸임
소 계		총 5명						

③ 주요일정

월	내 용
1월	신년회, 근로계약 체결
2월	보수교육 및 법정의무 교육 안내
3월	신규 대상자 홍보
4월	건강 검진 상반기 확인
5월	직원 워크숍
6월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집행 계획 점검
7월	하반기 대상자 홍보
8월	여름철 건강관리 유의사항 점검
9월	하반기 건강 검진 체크
10월	보수교육 및 법정의무 교육 확인
11월	운영위원회 회의 점검
12월	사업 평가 및 신년 계획 수립

3 의료복지 사각지대 돌봄

1)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 사업(NH투자증권 기탁)

구 분	내 용	
목 적	- 농촌 및 시내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속적 자기 건강 관리 강화 - 지역 내 건강반장 양성을 통해 지역사회 건강안전망 구축 강화 - 맞춤형 서비스를 통한 건강 효율성 증대 및 건강증진서비스 전개 - 지역사회 건강증진교육을 통한 질병예방과 관리	
사업내용	사회적 돌봄 체계 구축	- 지역 내 건강문제를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치 조직의 집담회 지원 - 신체, 사회적 취약성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적 분포로 인한 낮은 의료접근성에 처한 주민 발굴하여 의료서비스 및 자원 연계 등 주민 돌봄 구축 및 강화 - 참여 대상 : 만 65세 이상, 노령연금대상자 - 주요 활동 · 연 1회 건강반장양성교육 수료 · 월 1회 집담회 (보수교육 및 활동 나눔 및 자원연계) · 가가호호 방문을 통한 주민 건강 안부 묻기
	맞춤형 서비스	- 농촌 및 시내 경계지역 의료사각지대 신규 참여자 30명 발굴 - 건강 상황에 따른 맞춤형 방문간호 및 방문재활 서비스로 건강 효율성 증대 - 의료사각지대 참여자의 기초생계지원 - 참여자 사례회의를 통해 필요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 제공하여 질병 관리 및 합병증 예방 - 의약품 지원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지속적 건강기능 유지 지원 - 주거 환경수정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추진계획	- 유관기관 등 홍보 : 2025. 3~ - 건강반장 활동 속 취약계층 발굴 : 2025. 3~ - 맞춤형서비스(방문간호 및 방문재활프로그램) : 2025. 3~	
사업예산	36,400천원	

2) 빈곤층 건강지원 협력(노숙인센터, 원주시의사회 빈의자)

① 노숙인센터와 건강 예방 관리 연계 강화

구 분	내 용
목 적	노숙인센터 이용자들의 건강 예방 및 관리·증진을 통한 건강한 삶 실현
사업내용	- 입소검진(엑스레이, 소변, 혈액검사, 문진 등) -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 건강관리 - 질병에 따른 치료 - 예방접종을 통한 사전 감염 예방
추진계획	- 이용자에 따른 입소 검진 실시 - 고혈압, 당뇨 등 증상정도에 따른 질환 관리 지속 - 추적관리를 통한 주치의 관계 형성

② 원주시의사회 소속 “빈의자의사회” 일차 상담 창구 지속

구 분	내 용
목 적	의료비가 없어서 병을 키우고 있는 의료사각지대 이웃을 지원하여 사회적, 신체적 자립 도모
회원 의료기관	**총 27개 의료기관**(밝음의원은 일차 상담 창구 역할)

종합병원	금액(원)
종합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원주의료원
병 원	내안에병원, 원주우리병원
의 원	원주영상의학과의원, 이규남신경과의원, 홍성국신경과의원, 김남두피부비뇨기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연세플러스비뇨기과의원, 홍앤권이비인후과, 박규래정형외과의원, 백피부과의원, 미래산부인과의원, 우리들소아과의원, 도홍림이비인후과, 민내과, 최경훈내과, 창문외과, 좋은마음 신경정신과, 횡성중앙의원,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
치 과	부부치과, 최영권치과
안 과	연세안과
한 의 원	경희한의원, 모아한의원

대상자	의료사각지대 건강 빈곤층
추진계획	- 일차 상담 창구 지속 - 상담 후 질병에 따른 회원기관 연계
소요예산	3,000천원

③ (균형영양먹거리 응원)모두웰 후원회(행정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음식 섭취가 어려운 이웃에게 균형영양식품(유동식)을 통한 먹거리 돌봄 실현으로 모두가 건강한 지역사회를 실현
사업내용	균형영양식품(미니웰, 유동식)을 구입하여 필요한 분들에게 제공
대상자	먹거리 돌봄이 필요한 조합원 및 밝음의원 환자
추진계획	대상자 발굴 대상자 영양 관리 지속 주기별 추적관리를 통한 관계 형성 지속
(현)후원액	6,700천원(24년 말 기준)

④ “건강한 삶이 필요한 이웃을 위한” 보탬비(후원금) 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원의 건강과 더불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주민들의 건강한 삶 추구
사업내용	고립된 이웃 진료 지원 사업 조합원 건강증진활동 지역주민 보건예방활동
대상자	조합원 및 지역주민 등
추진계획	대상자 발굴 및 선정 통합사례회의 건강 돌봄 프로그램 기획 운영
(현)후원액	22,450천원(24년 말 기준)

4 조합운영 및 관리

1)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 사업 운영 및 경영에 관한 정기적 회의를 통한 경영 안정화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회의별 각 6회(격월), 총 12회 *격월로 운영(긴급 안건의 경우 예외 적용)
	회의내용	- 이사회 회의: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조합 운영사항 등 - 원장단 회의: 밝음의원 운영 및 매출 관리, 대외협력 사업 등
소요예산	2,400천원(200천원×12회)	

2) 유관기관 간담회

구 분	내 용	
목 적	- 복지관, 사회적기업, 공공기관 등과 개별 간담회를 마련하여 조합의 활동 소개 및 지역사회욕구 반영 - 지역사회 내 긴밀한 네트워크 구성하여 조합에 대한 관심도 제고 및 협력 증진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운영(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주요내용	지역사회 욕구 조사, 연계 및 협력, 활동 소개
소요예산	600천원(300천원×2회)	

3) 대의원 “소통의 날”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의 주요 활동내용을 공유하고 소통을 통해 임직원 및 대의원 간 친밀도를 높이고 활동 참여 및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하반기 각 1회, 총 2회 운영(상반기 6월, 하반기 11월)
	주요내용	조합 주요활동내용, 중점 추진사항 등 자문
소요예산	1,500천원(750천원×2회)	

4) 대의원 역량강화 교육(선진지 견학)

구 분	내 용	
목 적	의료복지, 돌봄 등 관련 되어 있는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관련 지식 및 조합 운영에 대한 관심과 참여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1회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동체, 돌봄, 건강 등
소요예산	1,500천원(1,500천원×1식)	

5) 임직원 역량강화 교육

구 분	내 용	
목 적	- 의료진을 대상으로 스터디, 견학, 실습 등을 통한 의료진의 역량강화 - 임·직원을 대상으로 의료복지, 돌봄, 사회적 경제 등 교육을 통한 의료협동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알아야 할 지식과 자긍심 제고 및 역량 강화	
세부계획	운영시기	- 의료진 : 연 5회 - 직원 : 2개월 1회 - 임원 : 연 2회
	주요내용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공동체, 돌봄, 건강, 팀빌딩 등
소요예산	2,000천원(2,000천원×1식)	

6) 임·직원 워크샵

구 분	내 용	
목 적	임·직원을 대상으로 직무 스트레스와 긴장을 해소하는 재충전의 기회를 마련하여 업무 능력 제고 및 열린 경영 실천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1회
	주요내용	힐링프로그램(독서, 산책, 명상, 웃음치료 등)
소요예산	4,000천원(4,000천원×1식)	

◆ 조합운영 및 관리 추진일정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이사회		○		○		○		○		○		○
	원장단 회의	○		○		○		○		○		○	
유관기관 간담회							○					○	
대의원 “소통의 날”							○					○	
대의원 역량강화교육										○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의료진 역량강화교육			○		○		○		○		○	
	직원 역량강화교육		○		○		○		○		○		○
	임원 역량강화교육				○					○			
임직원 워크샵										○			

5 조합 활성화

1) 조합 홍보

① 조합 홈페이지, 네이버 블로그 운영

구 분	내 용	
목 적	온라인에서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게 조합 소식·조합원 활동 안내함으로써 조합에 대한 관심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시
	주요내용	조합 소식 및 조합 활동 상시 공지 및 안내

② 조합 홍보 활동

구 분	내 용	
목 적	직접적인 대면 홍보 활동을 통한 조합 및 조합 사업소 홍보	
세부계획	운영시기	분기별 1회
	주요내용	- 장소: 5일장(원주 풍물시장 등)인구 밀집 지역 - 대상: 조합원 및 지역주민 - 활동내용: 홍보물 배포를 통한 조합 홍보 - 추진방법: 대의원 및 임직원이 조합 조끼를 착용 후, 인구 밀집 지역에 방문하여 조합 홍보물 배포 등 조합 홍보
소요예산	2,000천원(2,000천원×1식)	

2) 원주건강수다

구 분	내 용
목 적	- 의료, 요양,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주제의 강좌를 통하여 조합원 중심의 건강 공동체를 형성하고 조합원 간 신뢰 형성을 통한 조합원 활동 활성화 도모 - 원장님이 함께하는 강좌를 통한 질병 예방에 대한 중요성 인식 및 건강생활 실천 의지 향상 - 다양한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역량 강화 및 건강에 대한 관심 향상 -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과 죽음을 준비하는 경험을 통한 앞으로의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에 대한 의지 향상 및 긍정적인 삶에 대한 역량 강화

<table>
<tr><td rowspan="3">세부계획</td><td>운영시기</td><td colspan="3">3~12월</td></tr>
<tr><td>주요내용</td><td colspan="3">의료, 요양, 복지, 돌봄 등 다양한 주제를 통한 강좌 및 자조모임
※ 회차별 심화 과정 진행 가능.
<table>
<tr><th>주제</th><th>분류</th><th colspan="2">교육내용(예시)</th></tr>
<tr><td rowspan="5">의료</td><td rowspan="3">원장님이 함께하는 건강강좌</td><td colspan="2">- 질병 예방 및 건강관리의 필요성
- 근골격계질환의 이해(어깨와 손, 허리와 골반, 다리)
- 신경계 질환의 이해(뇌졸중, 파킨슨, 치매)
- 영양제와 허와실, 항생제의 모든 것
-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와 가정환경 수정</td></tr>
<tr><td>노년기에 꼭 알아두어야 할 증상 및 질병</td><td>· 심근경색의 예방과 관리
· 이상지질혈증의 예방과 관리
· 낙상과 골다공증</td></tr>
<tr><td>자조모임
(만성질환)</td><td>·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등)에 대한 이해
· 건강 실천(사전, 사후 건강검진)</td></tr>
<tr><td rowspan="2">건강강좌</td><td>응급처치 교육</td><td>· 심폐소생술,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 생활 속 응급처치
: 약물중독, 열사병, 저혈당, 질식(기도이물 폐쇄: 하임리히법) 등</td></tr>
<tr><td colspan="2">- 구강 관련 교육(노년기 및 성인)</td></tr>
<tr><td colspan="2">요양/복지/돌봄</td><td colspan="2">- 장년기 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방법
- 재택호스피스와 생애말기 돌봄
- 웰 홈다잉과 법적이슈</td></tr>
<tr><td colspan="2" rowspan="2">요양/복지/돌봄</td><td>치매 예방교실</td><td>뇌강화훈련(치매선별검사, 음악, 미술 등의 활동을 통한 인지프로그램)</td></tr>
<tr><td colspan="2">- 건강한 식생활 교육(1인 가구 등)</td></tr>
<tr><td colspan="2" rowspan="3">돌봄</td><td>웰다잉
(삶-죽음 고찰)</td><td>- 잘 살고 잘 죽는 법
- 인생 회고 및 묘비명 작성하기
- 죽음을 위한 준비(유언, 상속 등)
- 내가 그리는 장례식
(사전장례의향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행복한 노년을 위한 실천과 마음가짐</td></tr>
<tr><td>돌봄</td><td>- 휴머니튜드(가족/돌봄종사자)</td></tr>
<tr><td>신체</td><td>- 바르게 걷기 교육</td></tr>
</table></td></tr>
<tr><td>소요예산</td><td colspan="3">15,000천원(300천원×50회)</td></tr>
</table>

3) 조합원 스킨십 강화

① 신규조합원 환영회(새싹환영회)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이해도를 넓히며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조합 활동 참여 증진 및 조합과의 관계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3회
	주요내용	신규조합원과 조합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기존 조합원을 대상으로 의료협동조합 소개(미션과 비전, 조합원 권리와 의무, 진행 사업, 조합원 가입 혜택 등), 체험 행사, 소정의 선물제공 등 진행
소요예산	900천원(300천원X3회)	

② 지역별 조합원 간담회

구 분	내 용	
목 적	조합의 주요 활동 내용 공유와 소통을 통한 조합원 간 친밀감 향상 도모 및 조합 활동 참여에 대한 관심도 제고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상·하반기)
	주요내용	조합 주요 활동 내용 공유 및 소통 개선사항, 건의사항 등 의견 수렴
소요예산	500천원(250천원×2회)	

4)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구 분	내 용	
목 적	- 찾아가는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인식 및 건강증진·질병 예방 - 접근성이 향상된 강좌를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필요성 인식, 건강증진, 질병 예방으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5회 이상
	주요내용	- 대상: 유관기관 내 이용자 (자립생활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 내용: 건강강좌 (구강교육 등 건강 관련 강좌, 따뜻한 자기 돌봄 강좌)
소요예산	3,500천원(350천원×10회)	

5) 조합원 건강활동모임 “똑똑 건강반”

구 분	내 용	
목 적	- 조합원의 만성질환예방 및 신체·정신 건강증진 - 조합원 간 지지체계 형성과 지속적인 건강증진 활동의 습관화를 통한 건강자치력 향상 - 자발적인 건강증진 활동 참여로 조합원 간 관계 증진을 통한 조합과의 관계향상 및 공동체 의식 향상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3월~11월
	대 상	조합원(모임별 최소 5명~10명)/ 총 6개 팀 선발
	주요내용	- 신체 건강, 정신 건강 증진 관련한 활동을 하는 건강소모임예) 맨손체조, 등산, 자전거, 탁구, 독서, 토론, 반찬만들기, 텃밭활동 등 - 필수 활동: 연 활동 사전, 사후검사(인바디 측정, 혈압, 혈액) , 건강상담(건강정보 안내 및 상담) 총 2회 실시, 건강반 간담회 등 관련 행사 참석, 정기적인 활동
소요예산	8,000천원(100천원×1년×80명) *모집 인원 수에 따라 예산 상이	

6)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① 건강반장 집담회

구 분	내 용	
목 적	- “주민이 주민을 돌보는” 건강반장 집담회를 통한 건강한 지역공동체 확산 도모 - 정기적인 집담회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건강반장 간 상호학습 증진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10회(역량강화교육 하는 달 2회 제외)
	대 상	25년 건강반장
	주요내용	시기별 보건교육 및 정보교환, 마을활동 공유 및 활동점검, 활동일지 점검 등
소요예산	500천원(50천원×10회)	

② 건강반장 역량강화교육

구 분	내 용	
목 적	건강반장 역량강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체계 마련 및 건강반장의 돌봄 역량 강화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대 상	25년 건강반장
	주요내용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노인인권교육, 생활 속 응급처치교육
소요예산	100천원(50천원×2회)	

③ 건강반장 활동물품지원

구 분	내 용	
목 적	물품지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통한 건강반장 및 지역주민들의 정서함양 및 인지향상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 2회
	대 상	25년 건강반장 및 지역주민
	주요내용	- 건강반장이 지원 물품을 활용하여 주민들과 인지·정서 활동 진행 - 지원물품: 인지활동 교구 및 정서지원물품 지원(비소모성 물품은 대여방식으로 진행) 예) 원예활동, 만들기, 보드게임 등
소요예산	600천원(300천원×2회)	

7) 강원의료사협 자원봉사단

구 분	내 용	
목 적	- 조합원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 참여 증진, 조합과 밀접한 관계 - 자원봉사자들의 지역사회에 대한 애착심 및 자존감 향상 - 자발적으로 하고 싶은 활동에 대한 토론으로 만들어나가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자존감 향상 및 지역사회 역할수행에 대한 자긍심 고취 - 자원봉사 활동 관리 및 인증을 통한 자원봉사자들의 정기적 봉사활동 참여 유도 - 자원봉사자 데이터 구축을 통한 체계적 관리	
세부계획	운영시기	상시
	주요내용	- 보건증진, 환경보전, 의료복지사각지대, 돌봄, 공익 및 주민복리 증진 등 관련 활동

		-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는 모든 활동 예)원주밝음신협, 원주한살림, 원주생협 등과 자원봉사 협력 및 연계
	추진방법	- 자원봉사자 모집 및 등록(자원봉사자 관리) - 자원봉사자 모집 재능/일반 자원봉사자 모집→ 사전 신청자 확인→ 맞춤 자원봉사활동 배정 및 사전 교육→ 자원봉사활동→ 인증 및 관리 - 자원봉사자 간담회 - 자원봉사자 필요물품지원
소요예산	1,000천원(100천원×1식)	

8) 공생추진위원회(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구 분	내 용	
목 적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설립 준비를 위한 위원회 활동으로 의료협동조합의 가치 실현	
세부계획	운영시기	2025년 4월 ~ 12월
	주요내용	- 공동생활가정 추진 캠페인 및 교육 - 위원회 추가 구성 - 유휴공간 리서치
	추진방법	[캠페인] - 조합원 설명회 및 간담회 (총2회) - 부모님 돌봄 수기 공모전(1) - 내가 바라는 우리 마을 돌봄의 모습은? 공모전(1) - 활동 : 함께걷기 등 [강좌] - 건강돌봄관련 커뮤니티케어 강좌 진행 (3회차씩 2회) - 임직원 대상 강좌 : 타 의료사협 사례
소요예산	3,000천원 간담회 및 설명회 200천원(100천원×2회) 강좌 2,100천원(700천원×3회), 수기공모전(700천원×1식)	

6 지역사회 연계 협력

1)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원주시 복지관 등)

구 분	내 용	
목 적	- 이웃과 함께하는 원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 구현 - 지역자원을 활용한 민·관·학 협력 케어 시스템 정착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중
	주요내용	- 병원에서 가정으로 통합 사회서비스 제공 (방문형 건강관리 및 의료서비스) - 이웃과 함께하는 케어 전달체계 구축 - 원주형 커뮤니티케어를 위한 민·관·학 협력 환경 조성 -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등 대상 의료돌봄 교육
	추진방법	복지관 및 유관기관 (가톨릭, 밥상공동체, 명륜, 원주, 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2)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원주시청 생활보장과)

구 분	내 용	
목 적	퇴원 가능한 장기 입원 의료급여 수급자가 집에서도 불편함 없이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의료, 돌봄, 식사 등의 재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세부계획	운영시기	연중
	주요내용	- 환자 중심의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수립 - 대상자의 상태 변화, 투약 여부, 신규 질환 등 모니터링 및 의료서비스 지원
	추진방법	- 원주시 생활보장과 · 대상자 발굴 및 연계 · 주거 개선이나 냉난방 지원 등 자원 연계

3) 밝음신협과 함께하는 밝음건강학교

구 분	내 용	
목 적	밝음신협 조합원(가족)을 대상으로 “질병예방 및 건강관리 능력 향상”, “건강 상태 개선 및 유지”, “건강한 노년 생활 방법과 가족 돌봄” 등 건강한 삶을 만들어가기 위한 맞춤형 의료, 건강,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조합원과의 친밀감 증대와 조합 활성화를 도모	
세부계획	운영시기	2025. 4 ~ 11
	(예시) 주요내용 (프로그램명)	- 노년기에 꼭알아두어야 할 증상 및 질병 - 근골격계 질환 및 신경계 질환의 이해 - 응급처치 교육 - 밝음건강 체조교실 - 구강교육 - 치매예방교실 - 건강한 식생활교육 - 웰다잉(삶-죽음고찰)
	추진방법	- 원주밝음신협과 프로그램 및 일정 확정 추진

◆ 2025 조합 활성화 추진계획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조합홍보	조합 홈페이지 및 블로그 운영	○	○	○	○	○	○	○	○	○	○	○	○
	조합 홍보 활동			○		○				○		○	
원주건강수다	원장님이 함께하는 건강강좌				○	○						○	
	자조모임(만성질환)				○	○	○	○	○	○	○	○	○
	응급처치교육					○	○					○	
	구강교육					○					○		
	장자노부(장년기자녀들이 노부모를 모시는 방법)				○								
	치매교실					○	○						
	건강한 식생활 교육				○	○	○	○	○	○	○	○	○
	웰다잉(삶-죽음 고찰)										○	○	
	휴머니튜드									○			
	바르게 걷기				○					○			
신규조합원 환영회(새싹환영회)					○			○			○		
지역별 조합원 모임								○					○
찾아가는 밝음건강 강좌						○	○				○		
건강소모임 “똑똑 건강반”				○	○	○	○	○	○	○	○	○	○
건강반장 집담회		○	○	○	○	○	○	○	○	○	○	○	○
건강반장 역량강화교육					○					○			
건강반장 활동물품지원					○			○					
강원의료사협 자원봉사단				○	○	○	○	○	○	○	○	○	○
공생추진위원회					○	○	○	○	○	○	○	○	○
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		○	○	○	○	○	○	○	○	○	○	○	○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	○	○	○	○	○	○	○	○	○	○	○
밝음건강학교(원주밝음신협)					○	○	○	○	○	○	○	○	

2025년 수지예산(안)

1.예산총칙

제 1 조 : 본예산의 회계연도는 2025년 1월 1일 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 조 : 2025년 총 예산 규모는 다음과 같다.

▶ **수 입 총 액** : 2,215,926,000원
▶ **지 출 총 액** : 2,243,829,000원
▶ **수 지 차 액** : -27,903,000원
▶ **영업외수입** : 70,773,000원
▶ **영업외비용** : 42,870,000원
▶ **당기순이익** : 0원

제 3 조 : 이 예산의 수입 및 지출 명세는 별첨 수지 예산서와 같다.

제 4 조 : 이 예산의 목간 전용은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 5 조 : 예산의 항간 전용과 예비비의 사용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6 조 : 사업량의 증감, 세율변동, 급격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예산 조정은 이사회의 결의로 집행 할 수 있다.

제 7 조 : 추가경정 예산은 확정된 사업계획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집행하고 차기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는다.

■ 2025년 예산(안)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1. 매출액				2,215,926,000	1,865,351,980	
	의료사업부			1,967,857,000	1,674,206,050	
		밝음의원		474,521,000	386,136,410	전년 대비 20% 상향
			진료수입	279,040,000	223,232,630	
			진료수입(비급여)	91,460,000	76,217,210	
			건강검진수입	5,429,000	4,524,930	
			촉탁의(계약의)	68,320,000	56,933,410	
			기타수입	30,272,000	25,228,230	
			장애인의료비	2,156,000	1,796,850	
			금연지원금	1,102,000	919,100	
			예방접종	27,014,000	22,512,280	
		재택의료센터		490,346,000	376,258,810	
			재택의료시범사업	309,417,000	216,866,640	80명×322,310원×12개월
			왕진	50,534,000	42,825,950	전년 대비 18% 상향
			장애인건강주치의시범사업	121,763,000	108,717,530	전년 대비 12% 상향
			기타수입	8,632,000	7,848,690	전년 대비 10% 상향
			의사소견서	8,405,000	7,641,780	
			간호지시서	227,000	206,910	
		가정간호		1,002,990,000	911,810,830	
			원주센터	456,077,000	414,615,830	전년 대비 10% 상향
			강릉센터	333,280,000	302,982,650	전년 대비 10% 상향
			횡성센터	213,633,000	194,212,350	전년 대비 10% 상향
	통합돌봄사업본부			248,069,000	191,145,930	
		재가장기요양수입		243,806,000	187,734,850	국민건강보험공단
			방문요양	240,000,000	184,180,330	2,000만원×12개월
			방문목욕		509,520	2024/02까지만 운영
			기타수입	3,806,000	3,045,000	장기근속수당 등(전년대비 25% 상향)
		기타돌봄사업수입		4,263,000	3,411,080	일상돌봄서비스사업 등(전년대비 25% 상향)
	조합 교육비 수입					자기돌봄(PTC)교육 등
2. 매출원가						
3. 수입(매출총이익)				2,215,926,000	1,865,351,980	
4. 지출				2,243,829,000	2,020,955,359	
	관리비			2,172,986,095	1,994,890,139	
		인건비		1,614,769,000	1,445,972,150	급여, 상여, 연차수당, 퇴직금
			임원보수	600,000	9,700,000	(이사장)상여금, (부이사장보수→재가방문요양센터)
			직원상여(의원및조합)	1,243,183,000	1,098,879,520	
			의원(6명)	245,975,000	343,003,550	
			재택의료(8명)	306,675,000	252,621,880	
			(인건비지원)	(16,282,000)	(33,999,200)	(농촌)1,300천원×10회 (네카)1,641천원×2회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가정간호(6명)	566,655,000	435,363,090	
			조합(3명)	140,160,000	112,690,200	
			통합춘천사업단		168,399,370	2025년 사업 중단(한국수자원공사)
			(인건비지원)		(179,199,370)	2025년 사업 중단(한국수자원공사)
			직원급여(재가방문요양센터)	249,813,000	185,540,560	
			시설장(1명)	30,000,000	12,500,000	
			사회복지사(1명)	28,800,000	27,440,250	
			요양보호사(12명)	191,013,000	145,600,310	통합돌봄매출액×77%(전년집행율적용)
			직원상여	14,400,000	26,800,000	24명×200천원×3회(설날, 여름, 추석)
			퇴직급여(연금)	106,773,000	125,052,070	인건비총액(임원제외)×(1÷12)×85%
		일반경비		312,234,970	315,026,935	
			복리후생비	147,591,000	128,119,017	
			4대보험료	120,591,000	115,612,320	(업체부담분)인건비×8%(전년집행율적용)
			(4대보험료 지원)		(15,454,930)	2025년 사업 중단(한국수자원공사)
			임직원 식음료대 및 회식	10,500,000	15,144,950	25명×35천원×12회
			임직원 선물(명절, 직원포상 등)	8,500,000	4,145,420	(명절)2,000천원×2회 (직원생일선물)25명×100천원 (포상)2,000천원×1회
			임직원 진료비	3,000,000	2,657,200	250천원×12회
			임직원 경조사비	1,000,000	1,168,900	전년 수준
			임직원 피복비	1,000,000	1,546,250	전년 수준
			기타 복리후생비	3,000,000	3,298,907	전년 수준
			여비교통비	7,000,000	7,877,370	전년 수준
			접대비(기업업무추진비)	9,600,000	5,970,230	(이사장활동비)300천원×12회 (거래처식사)400천원×12회 (거래처경조사)100천원×12회
			통신비	4,592,000	6,165,680	
			전화 및 인터넷	2,160,000	2,394,730	(전화/19회선,인터넷/2회선)180천원×12회
			업무용 휴대폰	1,008,000	1,099,040	7대×12천원×12회
			법인숙소		484,080	2024/02 퇴거
			기타 통신비	1,424,000	2,187,830	(각종우편) 800천원 (무선결제단말기)3대×11천원×12회 (휴대용와이파이)19천원×12회
			수도광열비	8,110,000	8,668,324	
			전기요금	7,800,000	8,258,870	650천원×12회
			상하수도요금	240,000	201,584	20천원×12회
			법인숙소(전기, 가스, 수도)		131,870	2024/02 퇴거
			기타 수도광열비	70,000	76,000	전년 수준
			세금과공과	448,000	447,310	(원주시의사회)120천원 (법인차량관련)200천원 (기타각종세금)128천원
			감가상각비	27,229,970	33,929,834	고정자산관리대장 참고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지급임차료	2,064,000	9,085,780	
			의원(사무실) 임차료		6,852,000	무상(원주밝음신협)
			법인숙소		300,000	2024/02 퇴거
			사무실 복합기 임차료	1,716,000	1,716,000	143천원×12회
			기타 임차료(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348,000	217,780	(정수기)14천원×12회 (공기청정기)18천원×10회
			수선비	300,000	386,000	전년 수준
			보험료	4,880,000	5,346,250	전년 수준
			법인차량 자동차보험	2,500,000	2,631,880	전년 수준(3대)
			전문인배상책임보험	2,330,000	2,497,070	(의사)6명×200천원 (간호사)4명×170천원 (요양보호사)450천원(전년수준)
			기타 보험료(화재보험 등)	50,000	217,300	(복지시설안전배상공제)32천원 (기타)18천원
			차량유지비	42,180,000	33,818,188	법인차량 정기주차료, 유류비 등
			법인차량 정기주차료	4,320,000	4,120,000	(3대)360천원×12회
			법인차량 유류비	31,140,000	23,232,190	(재택의료운행차량:법인)3대×65천원×12회 (가정간호운행차량:자가)5대×480천원×12회
			기타 차량유지비(타이어 교체 등)	6,720,000	6,465,998	(재택의료운행차량:법인)3대×70천원×12회 (가정간호운행차량:자가)5대×70천원×12회
			운반비	2,400,000	2,361,060	200천원×12회
			교육훈련비	14,000,000	1,201,000	(해외연수지원)15명×800천원×1회 (각종보수교육등)2,000천원
			도서인쇄비	753,000	1,803,000	
			신문구독료	528,000	528,000	(3사)44천원×12회
			기타 도서인쇄비(명함 제작 등)	225,000	1,275,000	(명함)25천원×5건 (도서)50천원 (도장및명판)50천원
			회의비	500,000	4,185,110	(이사장관련→업무추진비 이관) (임직원회의→조직활동비 이관) (각종회의)500천원
			소모품비	9,330,000	21,113,950	(복합기소모품)3,000천원 (컴퓨터&주변기기)2,000천원 (각종문구용품)1,500천원 (각종소모품)1,500천원 (자판기커피관련)780천원 (재가방문요양센터관련)550천원
			지급수수료	20,097,000	34,015,439	
			프로그램사용료	2,907,000	3,333,004	(더존)1,551천원 (MRM)800천원 (뷰텍)396천원 (이지케어)160천원
			법인결산수수료	2,500,000	2,233,000	전년 수준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카드가맹점수수료	2,500,000	2,422,542	전년 수준
			재가방문요양센터 관련 수수료	2,000,000	2,291,530	전년 수준(원주시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고객용 주차 관련 수수료	1,800,000		150천원×12회
			문자전송 포인트 충전 수수료	1,500,000		125천원×12회
			퇴직연금 운용 수수료	1,200,000		1,200천원×1회
			홈페이지및블로그 관련 수수료	370,000	363,000	홈페이지 호스팅 비용
			기타 지급수수료 (송금수수료 등)	5,320,000	23,372,363	(박우순공증사무소)1,000천원 (에스원)930천원 (법무사사무소)700천원 (의료폐기물처리)600천원 (직원채용공고)600만원 (공익법인결산공시관련)440천원 (CMS이용수수료)370천원 (밝음의원소독)180천원 (기타각종수수료)500천원
			광고선전비	6,000,000	5,766,250	전년 대비 50% 차감
			대손상각비	20,000	18,967	전년 수준
			건물관리비	5,040,000	4,659,952	
			의원(사무실) 관리비	5,040,000	4,698,682	420천원×12회
			법인숙소 관리비		(38,730)	2024/02 퇴거
			잡비	100,000	88,224	전년 수준
		의료경비		245,982,125	233,891,054	
			양방의약품비	167,267,845	145,736,639	의원매출액×8.5%
			양방의료소모품비	39,357,140	53,174,987	의원매출액×2%
			외주용역비	39,357,140	34,979,428	(혈액검사)의원매출액×2%
	조합사업비			61,400,000	26,065,220	
		조직활동비		51,740,000	15,920,320	전년 수준
			이사회 및 원장단 회의	3,600,000	2,228,310	(이사회)200천원×6회 (이사회참석수당)10명×20천원×6회 (원장단회의)200천원×6회
			유관기관 간담회	600,000		300천원×2회
			대의원 소통의날	1,500,000	1,113,300	750천원×2회
			대의원 역량강화교육	1,500,000		(선진지견학)1,500천원×1식
			임직원 역량강화교육	2,000,000		2,000천원×1식
			임직원 워크샵	4,000,000	3,429,870	4,000천원×1식
			대의원 총회	3,040,000	4,454,300	(식대및다과)15천원×80개 (자료집)13천원×80부 (기념품)8천원×100개
			임직원 회의	2,400,000		(사업소별월례회의)200천원×12회
			원주건강수다	15,000,000	1,949,900	(각종의료및돌봄강좌)300천원×50회
			조합원 스킨십 강화	1,400,000		(신규조합원환영회)300천원×3회 (지역별조합원간담회)250천원×2회
			찾아가는 밝음건강강좌	3,500,000		(PTC자기돌봄강좌등)350천원×10회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건강소모임	8,000,000	1,846,200	(똑똑건강반)100천원×80명
			건강반장활동	1,200,000	811,440	(집담회)50천원×10회 (역량강화교육)50천원×2회 (활동물품지원)300천원×2회
			자원봉사단 활동	1,000,000	87,000	1,000천원×1식
			공생추진위원회	3,000,000		(간담회및설명회)100천원×2회 (강좌)700천원×3회 (수기공모전)700천원×1식
		연대활동비		9,660,000	10,144,900	
			한국의료복지사협연합	6,000,000	6,556,900	600천원×10회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		1,008,000	2025년 납부 중단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840,000	840,000	70천원×12회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240,000	240,000	20천원×12회
			강원사회적경제연대회의	1,200,000	900,000	100천원×12회
			한국재택의료협회	840,000	70,000	70천원×12회
			기타 협회비	540,000	530,000	(문화의거리상인회)20천원×12회 (빈의자의사회)200천원×1회 (기타)100천원
	예비비			9,442,905		
5.영업이익				(27,903,000)	(155,603,379)	
6.영업외수익				70,773,000	355,033,010	
	외부사업수입(조직활동비)			36,400,000	316,296,215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71,541,265	2025년 사업 중단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34,275,950	전년 수준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10,479,000	
	기타수입			34,373,000	38,736,795	
		이자 및 배당금수익		5,373,000	2,697,069	(정기예탁금)100,000천원×연3.92% (사회적예탁금)20,000천원×연3.10% (정기적금)24,000천원×연4.1% (보통예금)250천원 (배당금)50천원
		유형자산처분이익				
		후원금		8,000,000	12,179,000	(모두웰후원)3,000천원 (기타후원)5,000천원
		각종 지원금		19,000,000	19,450,000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	5,400,000	5,400,000	450천원×12회
			고용안정장려금 등	13,600,000	14,050,000	(육아휴직사업주지원)10,000천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3,600천원
		잡이익		2,000,000	4,410,726	전년 대비 50% 차감
7.영업외비용				42,870,000	337,660,787	
	외부사업지출(조직활동비)			36,400,000	317,113,315	
		통합돌봄사업지원금(춘천)			271,541,265	2025년 사업 중단

장	관	항 목	2025년 예산액	2024년 집행액	예산 세부 내역
		농촌건강지원사업비	36,400,000	34,275,940	전년 수준
		양성평등기금지원사업		11,296,110	
	기타지출		6,470,000	20,547,472	
		이자비용	970,000	1,371,957	강원상승(SE)융자사업 이자
		기부금	2,000,000	4,350,000	전년 대비 50% 차감
		지역복지사업비	3,500,000	14,232,510	(빈의자의사회)2,000천원 (기타)1,500천원
		유형자산처분손실		593,005	
		잡손실			
8.법인세차감전이익				(138,231,156)	
9.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액				199,271,650	수익 계정
10.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					비용 계정
11.법인세등					
12.당기순이익				61,040,494	

제6호 의안 : 차입금 최고한도액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0.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 의결 주문 사항

- 2025년 조합의 신규 차입금 최고한도액(안)을 20억 원으로 한다.

제7호 의안 :
2024년 (탈퇴, 제명, 감좌) 조합원 출자금 환급 및 지분양도, 출자금 변동 승인의 건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 의결 주문 사항

- 2024년 1월~12월까지 탈퇴(제명)조합원 명단 및 출자금 환급 승인
- 2024년 조합원 지분(사망자)을 가족에게 양도 승인
- 2024년 말 기준 출자금 변동 승인

■ 2024년 탈퇴 조합원 명단

- 탈퇴 조합원 17명, 제명 조합원 1명, 감좌 조합원 3명, 지분양도 2명
- 출자금 환급금 30,020,000원(탈퇴, 제명)

- 탈퇴조합원 : 17명

조합원 탈퇴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4/02/29	임은경	220006	50,000	이용안함
2	2024/04/19	김경숙	200057	50,000	거주지 이전
3	2024/05/10	도수연	230010	50,000	이용 안함
4	2024/06/28	홍종덕	210004	50,000	거주지 이전
5	2024/08/13	이미자	230009	50,000	거주지 이전
6	08/16	조귀순	230053	50,000	이용안함
7	2024/09/02	김옥화	220057	50,000	사망
8	2024/10/08	권경희	200047	50,000	이용안함
9	2024/11/13	장태선	230004	50,000	이용안함
10	11/18	우창호	20076	100,000	거주지 이전
11	2024/12/04	곽선미	100021	90,000	거주지 이전
12	12/16	김지영	200042	50,000	이용안함
13	12/16	오영식	20020	100,000	거주지 이전
14	12/19	정병용	220031	50,000	사망
15	12/24	김종구	20004	300,000	사망
16	12/31	강은자	20108	100,000	거주지 이전
17	12/31	신태숙	140160	50,000	이용안함
합계				1,290,000	

- 제명조합원(환급), 감좌 신청 : 4명 (제명(환급) 1명+ 감좌 신청 3명)

조합원 제명, 감좌 현황					
NO.	접수일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금액	비고
1	2024/02/26	김영희	110375	30,000	제명대상, 즉시 환급
2	2024/04/25	최정환	20112	3,700,000	감좌
3	2024/10/22	조세훈	30069	2,000,000	감좌
4	2024/11/26	공인표	20315	23,000,000	감좌
합계				28,730,000	

- 조합원 지분 양도 : 2명 (사망 및 기타 사유)

조합원 지분양도 현황							
NO.	양도일	양도 조합원명	조합원번호	양도금액	양수 조합원명	관계	비고
1	2024/04/29	고지곤	70135	50,000	고보경	자	사망
2	2024/11/25	최순례	100358	50,000	온경덕	배우자	사망

■ 출자금 변동 현황(24년 말 기준) : **271,956,874원**

구분	출자액	반환액	잔액	출자금총액
1월	130,000	0 (이관) 1,090,000	-960,000	292,410,374
2월	80,000	50,000	30,000	292,440,374
3월	460,000	0	430,000	292,900,374
4월	310,000 (재이관) 2,726,500	3,750,000	-713,500	292,186,874
5월	1,730,000	50,000	1,680,000	293,866,874
6월	1,040,000	50,000	990,000	294,856,874
7월	340,000	0	340,000	295,196,874
8월	410,000	100,000	310,000	295,506,874
9월	650,000	50,000	600,000	296,106,874
10월	920,000	2,050,000	-1,130,000	294,976,874
11월	420,000	23,150,000	-22,730,000	272,246,874
12월	500,000	790,000	-290,000	271,956,874
누계	9,716,500	31,130,000	-21,443,500	

※ (이관) 1,090,000원 및 (재이관) 2,726,500원 : 아이쿱 관련 출자금 이관액,
2023년~2024년 아이쿱으로 이관한 출자금 총액은 3,252,000원
(1차 2,162,000원 + 2차 1,090,000원), 차액 525,500원 중 520,000원은 아이쿱으로부터
미이관된 출자금이며(이광희 이사장), 나머지 잔액은 월조합비 미입금, 매장 이용 등으로 발생한
조합원별 출자금 증감액

제8호 의안 : 기타 의안

■ 관련 근거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9.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안건 제안 배경

-

-

■ 의결 주문 사항

-

-

〈부 록〉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연혁

2001. 10. 30	**원주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준비위원회 결성**
2001. 12. 15	**발기인대회**
2002. 5. 4	**법인창립총회**
2002. 6. 5	**법인설립인가(강원도 제7호)**
2002. 11. 16	**밝음의원, 밝음한의원 개원(원주시 중앙동 122번지)**
2003. 2. 15	**제1차 정기총회 개최**
2003. 3	일본오사카 의료생협 견학, 제1회 보건학교 운영
2003. 6	원주협동조합운영협의회(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가입, 상지대학교와 교류협력 체결,
2003. 6	한국의료생협연대(현,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가입
2004. 6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재가케어복지사업 실시**
2005. 1	호저지역 농민 보건의료환경 조사
2005. 3	**노동부 사회적 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멋살림'출범**
2005. 7	사회적적일자리 교육문화워커즈 멋살림 '어린이방과후학교'운영
2006. 3.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경로당사업 '농촌어르신 행복찾기' 시작**
2006. 4.	실업극복지원사업 '지역주민 조사사업' 실시
2007. 10. 29	**노동부 제 2007-13호로 사회적기업 인증**
2008. 2. 13	**밝음요양보호사 교육원 강원도 제10호로 인가 받음**
2008. 3	**2008년 위-스타트 강원도 마을 신규선정 지역으로 확정**
2008. 5	**재가장기요양기관 설립**
2008. 7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 서비스 개시
2008. 9	밝음의원이 영유아건강검진기관으로 인가 받음
2009. 1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을 받아 원주주거복지센터 운영**
2010. 2. 26	**제8차 정기총회(제2차대의원 총회)**
2010. 4	국민건강보험 지정 건강검진기관 개설
2011. 2. 25.	**제9차 정기총회(제3차대의원 총회)**
2011. 3. 27.	우리동네의원 개원(제2진료소, 단구동)
2012. 3. 26.	**제10차 정기총회(제4차대의원 총회)**
2013. 3. 4.	밝음의원 재개원(곽병은, 임동란 원장 부임)
2013. 3. 28.	**제11차 정기총회(재5차대의원 총회)**
2014. 3. 21.	**제12차 정기총회(재6차대의원 총회)**
2014. 5. 4.	조합 창립 12주년
2014. 6. 11.	**강원도 사회적경제 선도기업 선정**
2014. 7. 16.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전환/창립 총회**
2014. 10. 30.	보건복지부 비영리법인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
2015. 2. 27.	**제1차(통합13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5. 4.	우리동네의원 지점 폐원
2015. 6. 1.	장애인주치의사업,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3. 10.	**제2차(통합14차) 대의원총회 개최(제2기 임원 선출)**
2016. 5. 15.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2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16. 10. 1.	조합원 작품 전시 밝음갤러리 오픈
2016. 10. 21	**2016 Making More Health 체인지메이커 심사위원 특별상 수상 (한국베링거인겔하임 및 아쇼카재단 주관)**
2016. 12. 20.	조합 사회적기업 비영리법인 지정기부금단체 국세청 등록

2017. 3. 15.	**제3차(통합15차) 대의원총회 개최**
2017. 6. 28.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사회적기업 10주년 우수 사회적기업 공로 인정)**
2018. 3. 15.	**조합 제4차(통합 16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 사협 제3기 임원(이사7명, 감사2명)선출 임원 및 대의원 임기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2018. 5. 14.	**보건복지부 주관 장애인주치의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등록**
2018. 7. 20.	아산사회복지대단 농어촌 건강복지 증진사업 선정(2,000만원)
2018. 12. 31.	조합 3기 대의원 110명 선출 공고
2019. 3. 20.	**조합 제5차(통합17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2019. 11. 21.	커뮤니티케어 관련 조합 특강 및 방문진료사업 간담회 개최
2019. 12. 27.	보건복지부 왕진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 및 사업 개시
2020. 5. 7.	**조합 6차(통합18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유행 시기)**
2020. 5. 18.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0. 6. 1.	원주시, 강원도형 커뮤니티케어 시범사업 참여(방문진료 및 건강반장활동가 사업 담당)
2020. 9. 1.	2020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 협의체 MOU체결(강원도원주의료원)
2020. 11. 1.	원주시 보건소, 만7세 아동 알레르기 검사 위탁 수행(3,600만원)
2021. 2. 1.	**밝음가정간호센터 개소(장설자, 백지은)**
2021. 3. 25.	**조합 7차(통합19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1. 7. 23.	사회백신 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선정(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3,000만원)
2021. 8. 1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개원
2021. 9. 8.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업무협약(조합, 원주시, 강원도사회서비스원)
2021. 12. 28.	치매극복선도단체 지정(원주시치매안심센터)
2021. 12. 31.	조합 4기 대의원 100명 선출 공고
2022. 1. 26	춘천 소양강댐 수몰지역 방문의료 기반 통합돌봄 시범사업 개시(1억1천만원)
2022. 2. 4.	“코로나 19” 재택치료관리의료기관 지정(집중관리군)
2022. 3. 24.	**조합 8차(통합20차)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코로나19바이러스 지속)**
2022. 3. 29.	비전위원회(20주년 기념 준비위원회)
2022. 5. 31.	제2진료소 “우리동네주치의 의원” 휴원
2022. 6. 13.	**코로나 19 유공 포상 표창패 수상**(강원도지사. 춘천 스카이컨벤션웨딩홀)
2022. 6. 23.	**조합 20주년 기념 행사 및 포럼**(상지대학교 본관 5층)
2022. 9. 1.	사회백신프로젝트 “공동방문간호스테이션” 2차년도 사업 시작(강원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22. 11. 30.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지정(보건복지부, 강원도 최초)**
2022. 12. 1.	농촌지역 의료사각지대 건강지원사업 전개-8차년도 (NH투자증권 임직원지정기탁사업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사업)
2022. 12. 19.	강원도사회적경제한마당 “협동조합 활성화 유공자 표창 수상”(김종희 원장)
2023. 3. 28.	**조합 9차(통합21차) 정기대의원총회개최**
2023. 4. 11.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명칭 변경**
2023. 7. 01.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대통령상” 표창**
2023. 12. 31.	**강원도지사 표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 공로**
2024. 3. 21.	제10차(통합 22차) 정기 대의원 총회 개최
2024. 5. 03.	**조합 이전 개소식 개최(원주밝음신협 5층 대강당)**
2024. 7. 23	재가장기요양기관 “길동무”→강원의료사협 재가방문요양센터 명칭 변경(기관기호 2번)
2024. 8. 5.	일상돌봄서비스(재가돌봄) 사업 시작(바우처 사업, 6개 기관 협업)
2024. 8. 30.	2024 사회적경제컴퍼니 사회적책임부문 최우수상 수상
2024. 11. 22.	2024 원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 관 학 협력 우수사례” 대상 수상
2024. 12. 27.	조합 제5기 대의원 100명 선출 공고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제5기 대의원명단(100명)

(임기 3년, 25. 1. 1 ~ 27. 12. 31)

△가선거구(문막읍, 귀래·부론면, 횡성군) : 3명
노혜정, 원순아, 도경숙

△나선거구(우산동, 호저·지정면) : 11명
이기영, 천혜란, 신승훈, 박혜진, 정종숙, 양승완, 이현주, 김태성, 이인예, 용정순, 노윤배

△다선거구(태장1·2동, 중앙·일산·원인동, 원주 외 지역) : 26명
이도식, 백송희, 구경모, 전미선, 원진숙, 변현정, 조일구, 김은영, 김현경, 신옥경, 권누리, 안의현, 정연우, 박노광, 김덕연, 이창호, 지숙현, 최정환, 안순모, 변상훈, 고보경, 이용준, 이용희, 김종희, 원상호, 이상훈

△라선거구(학성·단계·무실동) : 11명
방서혁, 임지헌, 장성면, 고준영, 김현희, 심연옥, 우순자, 박덕길, 송명자, 김은주, 권효정

△마선거구(단구동) : 9명
조세훈, 염은경, 조성희, 김유미, 최혁진, 이영옥, 이창희, 하태화, 양정열

△바선거구(반곡관설·행구동, 신림·소초·흥업·판부면) : 26명
김한태, 윤병하, 공영훈, 안진구, 이윤승, 김선기, 장동성, 조주희, 이광희, 김재중, 목광균, 김동필, 허유정, 김민희, 김은화, 서연남, 이강록, 문병선, 제현수, 차윤정, 이경희, 임종호, 조미화, 김경옥, 김연화, 이현귀

△사선거구(명륜1·2동, 개운·봉산동) : 14명
김달현, 강창희, 박준영, 손종하, 정용호, 김서현, 이병춘, 정미란, 구혁, 장동영, 김은화, 최효심, 하종우, 신명자

(아이쿱 연대 협력) 대의원 명단

(임기 2년, 24. 1. 1 ~ 25. 12. 31)

△(아이쿱 연대 협력)대의원 : 2명
김소민, 이강익

2024년 SVI(사회적가치지표) 측정결과보고서



사회적 가치 측정 결과보고서

1. 기업 개요

기업명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표자명	이광희
조직유형	인증 사회적기업	설립일	2002-06-20
주업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사업자등록번호	224-82-07605
인증(지정)번호	제2007-013호	인증(지정)유형	혼합형
주소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 (중앙동)		

2. 측정 결과

측정 지표	배점	점수
1. 사회적가치 추구 여부	2	2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여부	5	4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15	13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 수준	5	5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수준	5	5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10	6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5	5
8. 근로자 임금수준	8	8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5	3
10. 고용성과	10	7.2
11. 매출성과	10	6.6
12. 영업성과	5	5
13. 노동생산성	5	4
14. 혁신 노력도	10	8
총점	100	81.8

평가등급	우수

※ 등급기준 : (탁월) 90점 이상, (우수) 75 ~ 90점 미만, (보통) 60 ~ 75점 미만, (미흡) 60점 미만

측정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표 1	사회적 가치 추구 여부	점수	2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A (2점)	☑	사회적 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기재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가 있으며, 이를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음
B (1점)	☐	사회적 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 가 있음
C (0점)	☐	사회적 가치 및 목적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문서(정관이나 규약 등) 가 없음

■ 검토 내용

사회적목적	조합원 협동을 통한 지역사회 건강권을 위한 보건·의료·복지·돌봄 활동 국가복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복지사회 구현 생명사상에 기반한 자립적인 협동조합 생태계 구축

외부공표	1. 인간과 노동 그리고 존엄이 중심이 될 수 있는 의료협동조합의 정체성 확립 2. 조합원의 웰빙에서 웰다잉까지 책임지는 조합 실현 3. 의원급 주치제와 함께 병원급 주치의제 구현 4. 의료기반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실현 등을 조합 홈페이지 및 홍보물을 통해 외부 공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사회적 목적 명시자료	정관, 홈페이지, 조합 홍보물

측정 결과 점수	2

근거 자료	제출된 정관 및 조합 홍보물,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명시적으로 문서로 반영하고, 이를 대외에 공표함으로써 가치 확산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표 2	사회적 성과 관리체계 구축 여부	점수	4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5개 이상 구축
A (4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4개 이상 구축
B (3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3개 이상 구축
C (2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2개 이상 구축
D (1점)	☐	5가지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 중 1개 이상 구축
- (0점)	☐	사회적 성과 평가체계 구축 요소가 확인되지 않음

■ 검토 내용

판단요소	구축여부	내용 (요약)				점수
측정 기준	유 ☑ 무 ☐	성과보고(지역사업, 일자리창출, 기타사업) 내부운영의 사회가치(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등) 외부운영의 사회가치(이용자)				1
담당 인력	유 ☑ 무 ☐	직책	사무국	성명	신승훈, 신현경, 조주희	1
성과 보고서	유 ☑ 무 ☐	조합 상반기, 종합 감사보고서 자료로 첨부 문서제목 : 사회적 성과관리 보고서 감사 후 이사회 보고				1
평가 위원회	유 ☑ 무 ☐	이사 17명, 감사 2명				0
평가결과 사내공유	유 ☑ 무 ☐	임직원 안내				1
측정 결과 점수						4

근거 자료	제출된 성과관리보고서, 종합감사보고서, 조직도, 평가위원 위촉장,이사회 회의록, 자료집 비치 사진 등을 통해 평가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사회적성과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를 조합원들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승인하고 추진해오고 있는 부분을 확인하였음. 전반적으로 양호한 관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음. 다만 제출 서류 중 성과관리보고에 대한 평가 체계는 갖추어져 있으나, 평가 결과에 대한 날인 누락 등의 사유로 평가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이 확인되지 않아 이 부분에 대한 점수 부분에 한해 부여하지 못하였음. 추후 이 부분만 보완된다면 외부의 좋은 평가는 물론 조합 내부의 발전적 관리 체계 역시 기반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지표 3	사업활동의 사회적 가치 지향성	점수	13 점

측정기준													
구 분	배점	평가점수											
		S		A		B		C		D		-	
내부운영 사회가치	5 점	5 ☐		4 ☐		3 ☑		2 ☐		1 ☐		0 ☐	
외부운영 사회가치	10 점	10 ☑	9 ☐	8 ☐	7 ☐	6 ☐	5 ☐	4 ☐	3 ☐	2 ☐	1 ☐	0 ☐	

■ 검토 내용

판단기준	내용					점수
내부운영의 사회가치	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	고용비율	57	임금금액	26,128	1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기업 내부 문화 형성	1.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근로자(20)명÷전체 유급근로자(35)명] ×100=57% 12월 총급여: 102,110,650 ÷ 12월 총근무시간 3,908시간				0
	근로자 보건 및 안전	1. 임직원 진료비 지원 : 595건/2,986,400원 2. 예방접종(독감) 지원 : 21명 (직원가 2만원/정상가 4만원)				1
	고용의 질	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1차 개정) 2019년 7월 12일 - (2차 개정) 2020년 6월 19일 - (3차 개정) 2021년 4월 1일 - (4차 개정) 2023년 3월 16일 2. 직원상조회 운영 - 2019년 1월부터 시작 - (초기) 생일케익, 5만원 상품권(온누리, 강원상품권) 전달 - (현재) 생일24 가입, 맞춤형 생일 선물 지원 ※10명에게 맞춤형 생일 선물 지급 - 요양보호사는 월 1만원 상품권 전달				1
내부운영 측정결과 점수						3
외부운영의 사회가치	제품서비스	1.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 제공인원 : 26,606명 ○ 55세 이상 고령자 : 19,221명, ○ 저소득, 수급자 : 8,102명(빈의자, 보호, 노숙인 등) 2.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1기 교육 13명 수료 3. (2월 ~ 12월) 건강반장 집담회 11회 활동 27명 4. 건강수다회, 조합원 응급처치 교육 13명 5. 건강수다회,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과정 -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양성교육 참여자: 20명 - 노인건강돌봄지도사 자격시험 합격자: 19명 6.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2기 교육 9명 수료				10
	이용자	1. 방문진료 현황 : 총 289건 / 월 평균 24건, 2. 장애인주치의 건강주치의 사업(대상자 : 46명), 3. 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 인원: 총 15명, 4. 장기요양 재택의료 시범사업(등록대상자 52명)				
	기타					
외부운영 측정결과 점수						10
측정 결과 총합 점수						13

근거 자료	제출된 고용보험사업장자역취득자명부, 급여대장, 유급근로자명부, 취업규칙, 임직원진료비 지원 및 사업 추진 결과 보고서 등을 참고하여 평가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혼합형 사회적기업으로 취약계층 고용 및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회적가치를 충분히 확장해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특히 취약계층 대상 방문지료, 장애인주치의 사업, 장기용양 재택의료 시범 사업 등 실질적으로 의료사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까지 발굴하여 지원하고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활발한 협업과 연대를 통해 사회적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표 4	사회적경제기업과의 협력수준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5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	4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	3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	2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	1개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	사회적경제기업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 검토 내용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강원도사회적경제연대	강원도 25개 사회적경제조직 회원사 활동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원주지역 47개 사회적경제기업(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의 네트워킹 활동	12
원주시사회적기업협의회	원주지역 30개 사회적기업의 회원사 활동	12
한국사회적의료기관연합회	전국 79개 사회적의료기관 회원사 활동	12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전국 30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 회원사 활동	12
측정 결과 점수		5

근거 자료	제출된 협력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평가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상기 최소 5개 소 이상의 사회적경제기업과 공식적인 협력과 연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고 판단되었음.

지표 5	지역사회와의 협력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9개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A (4점)	☐	7~8개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B (3점)	☐	5~6개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C (2점)	☐	3~4개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D (1점)	☐	1~2개의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였음
- (0점)	☐	공공·민간기관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이 확인되지 않음

■ 검토 내용

협력기관	협력 활동	횟수
도움주간보호센터	입소자의 건강관리	1
원주시 5개 복지관 및 요양기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활성화	9
원주시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 참여주민의 건강증진 및 예방서비스	1
측정 결과 점수		5

근거 자료	제출된 업무협약서와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원주지역자활센터, 도움주간보호센터, 원주종합사회복지관, 명륜종합사회복지관, 밥상공동체종합사회복지관, 원주시노인종합복지관, 강원도 사회서비스원, 원주종합재가센터, 패밀리재가복지센터, 정수재가복지센터, 사랑방문간호재가센터 등과의 공식적인 협력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부분이 확인되었음.

지표 6	사회적 환원 노력도	점수	6 점

측정기준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조직내부운영	4 점	4 ☐		3 ☑		2 ☐		1 ☐	0 ☐
조직외부활동	4 점	4 ☐		3 ☐		2 ☐		1 ☑	0 ☐
기타(비금전적)	2 점	-		2 ☑		1 ☐		0 ☐	-

■ 검토 내용

판단기준	내용(요약)				점수
	구분	주요 실적 (원)			
조직 내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복리후생비	13,875,000			1
	구성원 성과급	13,200,000			1
	교육훈련비용	4,981,000			1
	시설비 투자	0			0
내부 측정 결과 점수					3
조직 외부운영을 위한 수익의 활용	지역사회재투자	2,929,100	사회서비스 제공금액	5,013,000	1
	합계	7,942,100	동일업종 평균값	39,852,544	
	동일업종 평균값 대비 비율		19.9		
외부 측정 결과 점수					1
기타	비금전적 자원 활용 내역	지역의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며 관련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 빈곤층의료지원 자원봉사의사회 지원 등			2
기타 측정 결과 점수					2
측정 결과 총합 점수					6

근거 자료	제출된 복리후생비, 상여금 및 성과급 지급 내역 및 이체확인증, 교육훈련비용 집행내역,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업무협약서 등을 통해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조합원 및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사회적 환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외부적인 활동 역시 지역을 기반으로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협업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조합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환원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지표 7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	점수	5 점

등급판정			
구분	등급(점수)	체크	기 준
의사결정 기구 참여비율	S (3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60% 이상
	A (2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40% 이상 60% 미만
	B (1점)	☐	이해관계자(근로자 측 인사, 사외이사, 조합원 등) 의 주요의사결정기구 실제 참여비율이 0% 이상 40% 미만
회의결과 공유	A (2점)	☑	주요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이상
	D (1점)	☐	주요의사결정기구 운영 횟수 대비 임직원 대상 결과 공유 활동 횟수 비율이 50% 미만
- (0점)		☐	주요의사결정기구 운영 실적이 확인되지 않음

■ 검토 내용

의사결정기구	회의일자	회의결과 임직원공유	회의 참여인원	사외이사	근로자인사	조합원
184차 이사회	2023.02.16	유 [V] 무 []	6			6
185차 이사회	2023.03.16	유 [V] 무 []	7		0	7
186차 이사회	2023.04.13	유 [V] 무 []	15		1	14
187차 이사회	2023.06.23	유 [V] 무 []	9		0	9
188차 이사회	2023.07.13	유 [V] 무 []	12		1	11
189차 이사회	2023.08.10	유 [V] 무 []	10		1	9
190차 이사회	2023.09.14	유 [V] 무 []	11		1	10
191차 이사회	2023.10.12	유 [V] 무 []	14		1	13
192차 이사회	2023.11.09	유 [V] 무 []	12		1	11
193차 이사회	2023.12.07	유 [V] 무 []	11		1	9
194차 이사회	2023.12.14	유 [V] 무 []	11		1	10
제9차 정기 대의원 총회	2023.03.28	유 [V] 무 []	53			53

합계	회의결과 임직원공유	회의참여인원	사외이사	근로자인사	조합원
	12	171	0	8	162

의사결정기구 참가 비율	99.4	점수	3
회의결과 공유 비율	100	점수	2
측정 결과 총합 점수			5

근거 자료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명부, 법인등기부등본, 회의 의사록 및 서명부, 회의자료 공유 증빙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매년 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 방식을 유지해오고 있으며, 이를 책자로 비치하여 구성원들과 공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의사록을 대내외적으로 공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을 통해 우수한 참여적 의사결정 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지표 8	근로자 임금수준	점수	8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8.0점)	☑	근로자 시급수준이 동종업종 분포의 80% 이상
A (6.4점)	☐	근로자 시급수준이 동종업종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4.8점)	☐	근로자 시급수준이 동종업종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3.2점)	☐	근로자 시급수준이 동종업종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6점)	☐	근로자 시급수준이 동종업종 분포의 20% 미만

■ 검토 내용

전체 유급근로자 총 급여		전체 유급근로자 총 근무시간	
102,110,650	원	3908	시간
근로자 시간당 임금평균			
26,129	원/시간		

■ 근로자 시급수준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0% ~ 20%미만	20% ~ 40%미만	40% ~ 60%미만	60% ~ 80%미만	80% ~ 100%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1,364 미만	11,364 이상 12,035 미만	12,035 이상 12,953 미만	12,953 이상 15,110 미만	15,110 이상	
	☐	☐	☐	☐	☑	
측정 결과 점수						8

근거 자료	'23년 12월 급여대장 및 고용보험 가입자내역을 근거로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전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수준이 동종업계 근로자 시급에 비해 높은 편으로 기업의 근로자 지향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됨.

지표 9	근로자 역량강화 노력	점수	3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이 20시간 이상
A (4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이 15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B (3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이 10시간 이상 ~ 15시간 미만
C (2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10시간 미만
D (1점)	☐	근로자 1인당 연평균 교육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 (0점)	☐	근로자 대상 교육훈련시간이 확인되지 않음

■ 검토 내용

전체근로자 수(A) 35

교육과정 명	수혜자 수	교육시간	1인당 교육시간
2023년 간호사 보수교육	3	8	0.7
2023년 간호사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	2	40	2.3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	8	0.2
2023년 오사카S생협 방문교류회	1	20	0.6
2023년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신입실무자 교육	4	4	0.5
2023년 의사 호스피스 완화의료 표준교육	4	40	4.6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 감염관리 온라인 연수교육	1	4	0.1
2023년 일본 연수(사이타마)	4	20	2.3
2023년 제13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분비내과 교육	1	8	0.2
사회복지사 1급 특강	1	8	0.2
심전도 연수 강좌	1	8	0.2
임직원 역량강화 "돌봄과 인권" 북토크	4	3	0.3
제3기 지역사회 다학제 케어코디네이터 교육	1	42	1.2
합계(연평균 1인당 교육시간)			13.4
측정 결과 점수			3

근거 자료	제출된 수료증 및 교육이수증, 교육결과보고서 등을 근거로 평가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역량강화 교육들이 제공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음.

지표 10	고용성과	점수	7.2 점

측정기준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유급근로자	7 점	7.0 ☐	5.6 ☐	4.2 ☑	2.8 ☐	1.4 ☐
고용성장률	3 점	-	3 ☑	2 ☐	1 ☐	-

■ 검토 내용

2023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	2022년도 총 유급근로자 수
35	29
고용성장률	
20.7 %	

■ 유급근로자 고용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0% ~ 20%미만	20% ~ 40%미만	40% ~ 60%미만	60% ~ 80%미만	80% ~ 100%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명 미만	6명 이상 18명	18명 이상 42	42명 이상 98	98명 이상	
	☐	☐	☑	☐	☐	
측정 결과 점수						4.2

■ 고용성장률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고용성장률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0 %
고용성장률 측정 결과 점수	3
고용성장 측정 결과 총합 점수	7.2

근거 자료	고용보험 사업장가입내역 및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사업자용) 등을 근거로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23년도에 신규 채용된 근로자가 많고 동종업종 대비 양호한 고용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판단됨.

지표 11	매출성과	점수	6.6 점

측정기준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매출액	7 점	7.0 ☐	5.6 ☑	4.2 ☐	2.8 ☐	1.4 ☐
매출액 성장률	3 점	-	3 ☐	2 ☐	1 ☑	-

■ 검토 내용

2023년도 매출액	2022년도 매출액
1,543,887,360	2,229,088,085
매출액 성장률 (%)	
-30.7 %	

■ 매출액 동종업종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0% ~ 20%미만	20% ~ 40%미만	40% ~ 60%미만	60% ~ 80%미만	80% ~ 100%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279,473,321 미만	279,473,321 이상 672,035,485	672,035,485 이상	1,230,437,505 이상	2,826,652,855	
	☐	☐	☐	☑	☐	
매출액 측정 결과 점수						5.6

■ 매출액성장률 동종업종 분포

업종 분류	매출액성장률 중위값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3.6 %
매출액성장률 측정 결과 점수	1
매출성과 측정 결과 총합 점수	6.6

지표 12	영업성과	점수	5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80% 이상
A (4점)	☐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60% 이상 80% 미만
B (3점)	☐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40% 이상 60% 미만
C (2점)	☐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이상 40% 미만
D (1점)	☐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영업이익 분포의 20% 미만

■ 검토 내용

구분	내용
영업이익	53,066,730

■ 영업이익 동종업종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0% ~ 20%미만	20% ~ 40%미만	40% ~ 60%미만	60% ~ 80%미만	80% ~ 100%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67,244,376 미만	-67,244,376 이상 -22,700,010	-22,700,010 이상 0 미만	0 이상 47,334,937 미	47,334,937 이상	
	☐	☐	☐	☐	☑	
측정 결과 점수						5

지표 13	노동생산성	점수	4 점

등급판정		
등급(점수)	체크	기 준
S (5점)	☐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분포의 80%이상
A (4점)	☑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분포의 60%이상 80%미만
B (3점)	☐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분포의 40%이상 60%미만
C (2점)	☐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분포의 20%이상 40%미만
D (1점)	☐	시간당 매출액이 동종업종 분포의 20%미만

■ 검토 내용 (단위 : 원)

2023년도 매출액	2023년도 유급근로자 근무시간
1,543,887,360	3908
노동생산성	
395,058	

■ 시간당 매출액 동종업종 분포 (단위 : 원)

업종 분류	0% ~ 20%미만	20% ~ 40%미만	40% ~ 60%미만	60% ~ 80%미만	80% ~ 100%	중위값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Q)	182,389 미만	182,389 이상 213,057 미만	213,057 이상 264,187 미만	264,187 이상 408,443 미만	408,443 이상	
	☐	☐	☐	☑	☐	
측정 결과 점수						4

근거 자료	제출된 '22년, '23년 재무제표, 근무시간표, '23년 12월 31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를 근거로 평가하였음.

조사자 ⋆ 지표 11~13 관련 총괄의견입니다.	'22년 대비 '23년에 매출 및 영업이익이 다소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외수익이 늘고, 비용이 줄어들면서 조합의 재무건정성은 점차 좋아지고 있다고 판단되었음. 노동생산성 부분은 동종업계 대미 양호한 수준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판단됨.

지표 14	혁신노력도	점수	8 점

측정기준												
구 분	배 점	평가점수										
		S		A		B		C		D		-
과정의 혁신	5 점	5	☐	4	☑	3	☐	2	☐	1	☐	0 ☐
혁신의 결과	5 점	5	☐	4	☑	3	☐	2	☐	1	☐	0 ☐

■ 검토 내용

구분	내용		점수
과정의 혁신	제도개선 노력	의료, 복지, 요양, 돌봄을 통한 건강한 지역사회 실현 사회적성과 관리 체계 구축 건강예방사업부 신설 취업규칙 개정 노력	4
	전문인력 도입	재택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사, 간호사, 가정간호사 구인 임직원의 조직 운영 역량 향상을 위해 전문 강사 초빙 등을 통한 꾸준한 정책교육 실시	
	사내제안 및 외부의견	매주 화요일 주간회의를 통한 의견 수렴, 대의원 간담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밴드 운영을 통한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장 노력	
	경영시스템 개선	원활한 의사결정구조와 향후 추진방향에 있어 사협의 임원으로서 갖추어야할 기본 지식과 운영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의료사협 임원학교 추진 지역의 사회적경제기업과 협업으로 추진	
	기술 개발		
	R&D 투자		
	환경보호		
	기타	지역의 유관기관들과 함께 지역 의료복지 인프라 개선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협업과 연대활동을 추진해오고 있음. - 밝음신협과 함께하는 사회적예탁금 가입 -	
과정의 혁신 측정 결과 점수			4
혁신의 결과	재무성과	2년 연속 당기순이익 발생을 통한 결손금 감소	4
	고객 만족	제11회 협동조합의 날 "대통령상" 표창, 강원도지사 표창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활성화" 공로	
	기술적 성과		
	환경적 성과	의사 5명, 간호사 7명, 가정간호사 4명, 가정간호사 3명	
	기타		
혁신의 결과 측정 결과 점수			4
혁신 노력도 측정 결과 점수			8

근거 자료	제출된 과정의 혁신 및 혁신의 결과 자료 및 성과 자료를 근거로 판단하였음.

조사자 총괄의견	조합은 총회와 이사회를 기준으로 민주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있음이 확인되며, 지역의 의료 및 통합돌봄서비스 인프라 개선을 위해 다양한 지역 내 유관기관과 협력의 방식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고 판단됨. 협업의 방식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해가는 과정에서 재무적 성과를 달성하면서 초기 결손금을 원활히 차감해 나가고 있는것으로 판단되었고, 지역에서의 유의미한 꾸준한 활동들을 통해 대통령상이라는 큰 성과 또한 달성한 부분을 고려하여 이 부분을 높게 평가하였음. 다만 SVI 지표 성과관리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향후에는 보다 면밀한 지표 맞춤형 성과관리를 통해 그동안의 활동들이 온전히 지표상에서도 평가될 수 있도록 지속 관리해나가실 것을 권장함.

2024년 사회적 성과 관리 보고서

<table>
<tr><th>구분</th><th colspan="3">내용</th></tr>
<tr><td>성과보고</td><td colspan="3">
<table>
<tr><th>지표</th><th>세부항목</th><th>추진 활동내용</th><th>목표
(예산액 등)</th><th>결과
(결산액 등)</th><th>달성율</th></tr>
<tr><td rowspan="2">지역
사업</td><td>의료사업</td><td>의료서비스 제공</td><td>1,811,833,000</td><td>1,674,206,050</td><td>92%</td></tr>
<tr><td>노인요양사업</td><td>돌봄서비스 제공</td><td>262,241,000</td><td>191,145,930</td><td>79%</td></tr>
<tr><td>일자리
창출</td><td>취약계층 고용
및 유지</td><td>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취약/전체/비율)</td><td>16명/39명/41%
(23. 12. 기준)</td><td>23명/41명/56%
(24. 12. 기준)</td><td>143%</td></tr>
<tr><td rowspan="3">기타
사업</td><td>교육훈련비</td><td>직원 교육 훈련
비용 등</td><td>18,992,000</td><td>5,808,540</td><td>30%</td></tr>
<tr><td>협동조합간협동</td><td>네트워크
업무협력 등</td><td>14,343,000</td><td>20,467,130</td><td>142%</td></tr>
<tr><td>홍보 및
지역사회기여</td><td>가치 실현 등</td><td>4,500,000</td><td>14,232,510</td><td>316%</td></tr>
</table>
</td></tr>
<tr><td>담당자</td><td colspan="3">
<table>
<tr><td>소속</td><td>사무국</td><td>담당자명</td><td>신승훈, 신현경, 조주희</td></tr>
</table>
</td></tr>
<tr><td rowspan="3">내부운영
의
사회가치</td><td>취약계층 고용
및 임금수준</td><td colspan="2">1. 취약계층 고용
- [취약계층 근로자(23)명÷전체 유급근로자(41명]×100=56%
- 산재보험 가입 기준(고령자 22명, 장애인 1명)
2. 취약계층 임금 수준
- 취약계층 근로자(23명) 급여 총액 602,359천원
※일반(9명) : 479,658천원
※요양보호사(14명) : 122,701천원
- 취약계층 근로자 월평균 급여 2,182천원
※일반(9명) : 4,441천원
※요양보호사(14명) : 730천원</td></tr>
<tr><td>근로자
보건 및 안전</td><td colspan="2">1. 임직원 진료비 지원(10월까지) : 445건, 2,657천원
2. 예방접종(독감) 지원 : 68명(임직원 및 가족 포함, 직원가 2만원 / 정상가 4만원)</td></tr>
<tr><td>고용의 질</td><td colspan="2">1. 취업규칙 개정을 통한 근로 환경 개선
- (1차 개정)2019년 7월 12일
- (2차 개정)2020년 6월 19일
- (3차 개정)2021년 4월 1일
- (4차 개정)2023년 3월 16일
2. 직원상조회 운영
- 2019년 1월부터 시작
- (초기) 생일 케이크, 5만원 상품권(온누리, 강원상품권) 전달
- (현재) 생일24 가입, 맞춤형 생일 선물 지원
※10명에게 맞춤형 생일 선물 지급
- 요양보호사는 재가장기요양사업 예산으로 해당 월에 1만원 상품권 전달</td></tr>
</table>

구분	내용	
		3. 상여금 지급 - 26,800천원의 상여금 지급 - 지급 대상 : 임원 및 전직원 ※조합 상근직 : 명절(설날, 추석) 각 20만원, 여름휴가 각 20만원, 상반기 성과급 각 20만원 ~ 30만원 ※조합 상근직(요양보호사) : 명절(설날, 추석) 2만5천원 ~ 5만원 4. 조합원 및 직원 대상 교육.정보 제공 실적 - 조합원 대상(조직활동비) 1월 10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65천원 1월 23일, 건강반장, 24-1차 집담회, 62천원 2월 16일, 건강반장, 24-2차 집담회, 68천원 3월 06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69천원 3월 15일, 건강반장, 24-3차 집담회, 56천원 4월 19일, 건강반장, 24-4차 집담회, 74천원 5월 15일, 건강소모임, 자기돌봄(PTC) 교육, 52천원 5월 20일, 건강반장, 24-5차 집담회, 72천원 6월 21일, 건강반장, 24-6차 집담회, 56천원 6월 27일, 건강수다회, 위기대응능력강화교육(응급처치) 204천원 7월 05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오리엔테이션, 66천원 7월 19일, 건강반장, 24-7차 집담회, 65천원 8월 26일, 건강반장, 24-8차 집담회, 51천원 8월 28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교육, 99천원 9월 20일, 건강반장, 24-9차 집담회, 58천원 10월 16일 ~ 11월 6일, '돌봄의모든 것' 강좌, 905천원 10월 22일, 건강반장, 24-10차 집담회, 88천원 10월 30일,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 간담회, 31천원 11월 11일, 건강수다회, 위기대응능력강화교육(응급처치) 183천원 11월 18일, 건강반장, 24-11차 집담회, 75천원 11월 20일 ~ 27일, 건강수다회, 웰에이징 강좌, 702천원 12월 10일, 건강반장, 24-12차 집담회, 85천원 12월, 건강소모임, 똑똑건강반(3건) 사업 정산, 1,550천원 - 직원 대상(교육훈련비) 2월 23일, 2024년 제17회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내과 연수강좌 (공영훈), 90천원 2월 23일, 2024년 제22차 대한재활의학회 근막통유발점 주사자극 치료 연수 교육(공영훈), 100천원 3월 29일, 재택의료 FOCUS ON 교육(공영훈), 400천원 4월 22일, 2024년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과 춘계연수강좌 (권상옥, 염은경), 130천원 5월 10일, 2024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김지영), 56천원 7월 02일, 간호사 보수교육(이선영), 40천원 7월 26일, 요양보호사 보수교육(3명), 285천원 9월 28일, 가정간호사업소 책임자 및 실무자 워크샵(2명), 20천원 12월 31일, 간호사 보수교육(염은경, 장원주) 80천원

구분	내용	
외부 운영 (제품·서비스 및 이용자)의 사회 가치	이용자	- 아프고 난 이후의 “치료 중심 의료”보다 아프기 전 “예방의료 및 건강관리”를 통해 사회적, 경제적 비용의 감소 유도 - 경제적, 사회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을 대상으로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을 통해 건강한 삶 도모 - 분절되어 있는 의료와 노인요양서비스를 통합 제공함으로서 대상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 - (준)고령자의 안정적인 일자리 연계와 장기근속 유도를 통한 건강한 일자리를 양성
	기타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 관(신)

제정 : 창립 총회 2014년 7월 16일(승인2014.10.30.)
1차 개정 : 제1차 대의원총회 2015년 2월 27일(승인2015.03.25.)
2차 개정 : 제2차 대의원총회 2016년 3월 10일(승인2016.04.18.)
3차 개정 : 제4차 대의원총회 2018년 3월 15일(승인2018.06.21.)
4차 개정 : 제6차 대의원총회 2020년 5월 7일(승인2020.06.18.)
5차 개정 : 임시 대의원총회 2021년 1월 8일(승인2021.04.02.)
6차 개정 : 제8차 대의원총회 2022년 3월 24일(승인2022.04.15.)
7차 개정 : 제9차 대의원총회 2023년 3월 28일(승인2023.04.11.)
8차 개정 : 제10차 대의원총회 2024년 3월 21일(승인2024.04.05.)

전문		
제1장	총	칙(제1조~제9조)
제2장	조 합	원(제10조~제17조)
제3장	출	자(제18조~제23조)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제43조)
제5장	임	원(제44조~제56조)
제6장	사	업(제57조~제59조)
제7장	회	계(제60조~제69조)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제73조)
부칙		

전 문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원주지역 협동조합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생명사상을 기본정신으로 하여 활동해 온 원주한살림생협, 밝음신협, 원주생협과 지역주민들이 협동으로 설립하였으며 지역주민들이 건강과 의료의 주인이 되는 사회를 목표로 하여 세워졌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개인이 사유하는 의료도, 국가가 제공하는 의료도 아닌 협동을 통해 서로 살리는 상생의 의료건강사회를 꿈꾸며 생명의 존엄성이 존중받으면서도 차별과 소외가 없는 평등의료·건강사회의 구현을 통해 협동의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한다.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건강의 문제가 개인만의 책임이 아니라 사회적 건강의 실현과 맞물려 있음을 직시한다. 또한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며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 맺음과 인간과 인간이 서로 협력하는 사회만이 건강한 사회임을 확신한다.

이에 따라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조합원의 협동적 자치를 통해 민주적인 의료활동을 전개하고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협동조합과의 협동과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공동체운동을 촉진하며 협동운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여 설립하며,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7차 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7차 개정)(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통하여 구성원의 복리증진과 상부상조 및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2명 이상의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구성원과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및 사회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합의 책무) ① 조합은 조합원 등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교육.훈련 및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② 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외국의 협동조합 및 관련 국제기구 등과의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사무소의 소재지) ①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8차 개정)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② 조합의 지사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8차 개정)

제4조2(의료기관의 소재지) ①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밝음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중앙로 85(중앙동)번지에 둔다.(8차 개정)
② 강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우리동네주치의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무실로 113(원동), 1층에 둔다. (8차 개정)

제5조(사업구역) 조합의 사업구역은 강원도, 경기도 여주시, 충청북도 제천시, 충주시 일원으로 한다.

제6조(공고방법) ① 조합의 공고는 주된 사무소의 게시판(지사무소의 게시판을 포함한다)에 게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합에서 발간하는 소식지 또는 강원도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게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조합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에 대하여는 공고와 함께 서면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 및 최고방법) 조합원에 대한 통지 및 최고는 조합원명부에 기재된 주소지,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하고, 통지 및 최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조합원이 따로 연락받을 연락처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곳으로 한다.

제8조(공직선거 관여 금지)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규약 또는 규정) 조합의 운영 및 사업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이 정관으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약 또는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조합원

제10조(조합원의 자격 및 유형) ① 조합의 설립목적에 동의하고 조합원으로서의 의무를 다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다.
② 조합원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비자조합원 : 조합이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2. 직원조합원 : 조합에 고용된 자.
3. 자원봉사자조합원 : 조합에 무상으로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자
4. 후원자조합원 : 조합에 필요한 물품 등을 기부하거나 자금 등을 후원하는 자

제11조(조합원의 가입) ①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자가 조합에 가입하고자 할 때에는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인의 자격을 확인하고 가입의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인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입의 통지를 받은 자는 조합에 가입할 자격을 가지며 납입하기로 한 출자좌수에 대한 금액을 지정한 기일 내에 조합에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이 된다.
④ 조합은 정당한 사유없이 조합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자에 대하여 가입을 거절하거나 가입에 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조건을 붙일 수 없다.

제12조(조합원의 고지의무) 조합원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가입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또는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조합원의 책임)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한 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제14조(탈퇴) ① 조합원은 조합에 탈퇴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다.(8차 개정)
②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연히 탈퇴된다.
1. 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경우(7차 개정)
2. 사망한 경우
3.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경우(6차 개정)
4. 조합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6차 개정)

제15조(제명) ① 조합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1. 2년 이상 계속해서 조합의 시설 또는 사업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2. 출자금 및 경비의 납입 등 조합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조합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법령.행정처분.정관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의 사업을 방해하거나 신용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라 조합원을 제명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그 조합원에게 제명의 사유를 알리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행한 총회의 제명 의결은 해당 조합원에게 효력이 없다.
④ 조합은 제명결의가 있었을 때에 제명된 조합원에게 제명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탈퇴.제명조합원의 지분환급청구권) ① 조합을 탈퇴하거나 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분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탈퇴의 경우에는 탈퇴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2. 제15조 제1항의 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한 제명의 경우에는 제명조합원의 출자금에 해당하는 금액
② 제1항의 지분은 제명 또는 탈퇴한 회계연도 말의 조합의 자산과 부채에 따라 정한다.
③ 조합은 탈퇴 조합원이 조합에 대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는 제1항에 따른 지분의 환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조합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조합원이 조합에 대하여 채무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과 상계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날부터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⑥ 제1항에 따른 청구권은 탈퇴하거나 제명된 당시의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부터 청구할 수 있다.
(4차 개정)

제17조(탈퇴조합원의 손실액 부담) ① 탈퇴한 조합원의 지분 환급분을 계산할 때 이 조합의 재산으로 그 채무를 다 갚을 수 없는 경우에는 탈퇴한 조합원은 납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출자액의 범위에서 그가 부담하여야 할 손실액을 납입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의 납입 청구에 관하여는 제16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장 출자

제18조(출자) ① 조합원은 1좌 이상의 출자를 하여야 하고, 출자 1좌의 금액은 1만원으로 하며, 조합원 1인당 최저출자금은 5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3.「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4.「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5.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6.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② 한 조합원의 최고출자금은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의 조합원이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 포함)일 경우에는 그 2인 이상의 조합원 출자금 총액이 총 출자금 납입총액의 10퍼센트 이내여야 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출자는 현물로도 할 수 있고, 현물출자의 경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자액을 계산한다. 이 경우 현물출자자는 출자의 납입기일에 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전부를 조합 또는 조합에서 지정한 장소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출자금 납입총액이 1억원 이상이면서 총자산 대비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⑥ 단체출자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19조(출자증서 등의 교부) ① 조합의 이사장은 조합원이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초 출자금을 납입한 때 및 조합원이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출자증서 또는 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에 기명날인하여 조합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
2. 조합원의 성명 또는 명칭
3. 조합 가입 연월일
4. 출자금의 납입 연월일

5. 출자금액 또는 출자좌수
6. 발행 연월일

② 조합의 이사장은 매년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조합원의 출자금액 변동상황을 조합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우편, 전자메일, 팩시밀리, 휴대폰 문자 등을 이용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20조(지분등의 양도와 취득금지) ① 조합원 지위의 양도 또는 조합원 지분의 양도는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조합원이 아닌 자가 지분을 양수하려고 할 때에는 가입의 예에 따라야 한다.

③ 지분의 양수인은 그 지분에 관하여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원은 지분을 공유하지 못한다.

⑤ 조합은 조합원의 출자지분을 취득하거나 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경비의 부과 및 징수) ① 조합은 조합의 사업 및 그 사업에 부대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 및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부과방법, 징수시기와 징수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납입할 때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부과금에 있어서 조합원에 대한 부과금액의 산정기준 사항에 변경이 있어도 이미 부과한 금액은 변경하지 못한다.

제2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이 조합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사용료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② 이 조합이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위임에 따라 운송·보관 그 밖의 행위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이 조합은 그 대행에 필요한 부대비를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합원의 사용료나 수수료 납입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④ 제1항의 부과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23조(과태금) ① 조합은 조합원이 출자금 또는 경비 등의 납입의무를 그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과태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조합원은 제1항에 따른 과태금을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

③ 과태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와 이사회

제24조(총회) ① 조합은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이사장과 조합원으로 구성하며, 이사장이 그 의장이 된다.

제25조(대의원총회) ① 조합은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 총회를 둘 수 있다.

② 대의원은 조합원 중에서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각각 선출한다. 다만, 선출할 대의원 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대의원의 자격은 조합원중 가입한지 6개월 이상인 조합원으로 한다.(8차 개정)

③ 대의원의 의결권 및 선거권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행사하게 할 수 없다.

④ 대의원의 정수는 100명 이상으로 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8차 개정)

⑤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대의원은 조합원의 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며, 선거방법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⑦ 대의원총회에 관하여는 총회에 관한 사항을 준용하며, 이 경우 "조합원"은 "대의원"으로 본다.
⑧ 대의원총회는 조합의 합병, 분할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의결할 수 없다.

제26조(대의원의 의무 및 자격상실) ① 대의원은 성실히 대의원회에 출석하고, 그 의결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대의원회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그 의결로 대의원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의원에게 서면으로 자격상실 이유를 의결일 7일 전까지 통지하고, 총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대의원총회 소집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대의원총회에 출석하여 같은 안건에 대한 의결에 2회 이상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
2. 부정한 방법으로 대의원총회의 의사를 방해한 경우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조합의 명예 또는 신용을 훼손시킨 경우

제27조(선거운동의 제한) ① 누구든지 자기 또는 특정인을 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으로 당선되도록 하거나 당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조합원(협동조합에 가입신청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그 가족 또는 조합원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금전·물품·향응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는 행위
 다.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겠다는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후보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거나 후보자를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나 후보자에게 제1호 각 목에 규정된 행위를 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익이나 직을 제공받거나 그 제공의 의사표시를 승낙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요구하거나 알선하는 행위
② 임원 또는 대의원이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의 선거운동기간을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조합원을 호별로 방문하거나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할 수 없다.
③ 누구든지 협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연설·벽보, 그 밖의 방법으로 거짓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를 비방할 수 없다.
④ 누구든지 임원 또는 대의원 선거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1. 선전 벽보의 부착
2. 선거 공보의 배부
3. 소형 인쇄물의 배부
4. 합동 연설회 또는 공개 토론회의 개최
5. 전화(문자메시지를 포함한다.)■팩스■컴퓨터통신(전자우편을 포함한다.)을 이용한 지지 호소

제28조(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합의 임원 및 대의원 선거사무를 공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본 조합에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조합원(대의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 1인을 포함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당해 선거에 임원으로 후보등록한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 명부의 확정
3. 후보자 추천의 유ㆍ무효 판정

4. 선거공보의 작성과 선거운동방법 결정 및 계도
5. 선거관리, 투표관리 및 개표관리
6. 투표의 유·무효의 이의에 대한 판정
7. 선거관련 분쟁의 조정
8. 선거운동 제한규정 위반여부 심사 및 조치
9. 당선인의 확정
10. 그 밖에 선거에 필요한 사항

④ 위원의 위촉기간은 위촉일로부터 해당 기수 임원의 임기종료일까지 하되 위원이 조합원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위원의 직을 상실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주재한다.

⑥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는 의사의 진행상황 및 그 결과를 적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⑧ 위원은 선거관리사무를 행함에 있어 공정을 기하여야 한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가능■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제30조(임시총회) ①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 및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조합원이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소집의 목적과 이유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3. 감사가 조합의 재산상황이나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 내용을 총회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에게 소집을 청구한 때

② 이사장은 제1항 제2호(제49조 규정에 따른 해임 요구를 포함한다) 및 제3호의 청구를 받으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2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총회를 소집할 자가 없거나 그 청구가 있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사장이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감사가 7일 이내에 소집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 경우 감사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가 제3항의 기한 이내에 총회의 소집절차를 밟지 아니하거나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총회의 소집을 청구한 조합원의 대표가 이를 소집한다. 이 경우 조합원의 대표가 의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1조(총회의 소집절차) ① 이사장은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우편 또는 전자메일 등으로 각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를 소집할 수 없는 때에는 제51조에서 정하고 있는 순으로 이를 소집한다.

제32조(총회의 의결사항)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1. 정관의 변경
2. 규약의 제정과 변경 또는 폐지
3. 임원의 선출과 해임
4.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5. 대차대조표, 수지계산서, 결산보고서의 승인과 잉여금의 처분 및 손실금의 처리
6. 감사보고서의 승인

7. 조합의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휴업
8. 조합원의 제명
9. 탈퇴조합원(제명된 조합원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금 환급
10. 그 밖에 이사장 또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1. 차입금의 최고한도 결정

②제1항제1호(정관변경), 제7호(협동조합합병,분할,해산, 휴업) 제8호(조합원제명), 제9호의 사항(출자금 환급)은 총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추가, 2차 개정)

제33조(총회의 의사) ① 총회의 의사는 법령상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회의 개의 정족수 미달로 총회가 유회된 때에는 이사장은 20일 이내에 다시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31조에 따라 미리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총 조합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총회에서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의결을 행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은 의결에 참가하지 못한다.

제34조(합병.분할 및 해산등의 의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조합의 합병.분할.해산 또는 휴업
3. 조합원의 제명

제35조(의결권 및 선거권) ① 조합원은 출자좌수에 관계없이 각각 1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다.
② 조합원은 대리인으로 하여금 의결권 및 선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합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제36조의 자격을 갖춘 대리인이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의결권 또는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조합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미리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대리인이 될 자격) 전조 제2항에 따른 대리인은 다른 조합원 또는 본인과 동거하는 가족(조합원의 배우자, 조합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과 형제자매, 조합원의 직계 존속·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어야 하며, 대리인이 대리할 수 있는 조합원의 수는 1인에 한정한다.(7차 개정)

제37조(총회의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적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조합원 3인 이상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38조(총회의 운영규약) 정관에 규정하는 외에 총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회운영규약으로 정한다.

제39조(총회의 회기연장) ① 총회의 회기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속행된 총회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0조(이사회) ① 조합에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조합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하고 이사장 1인 외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등을 둘 수 있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사항,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서면을 우편이나 전자메일을 통해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여 이사회 구성원 과반수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이사 3분의 1 이상 또는 감사 전원이 회의목적 사항과 회의 소집이유를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이사장은 제5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7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1조(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상정할 의안
3. 규정, 규칙 등의 제정과 변경 및 폐지
4.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
5. 간부 직원의 임면 승인
6. 기본자산의 취득과 처분
7.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중요한 사항
8.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② 이사회는 제57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42조(이사회의 의사)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장은 의결에 참가하지 아니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③ 이사의 개인 이익과 조합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이나 신분에 관련되는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제43조(이사회의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참석 이사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제5장 임 원

제44조(임원의 정수) ① 조합의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3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1명 이상 3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다만, 이사는 제10조제2항의 조합원 유형에 따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임원중 이사회의 호선에 의해 상임 임원을 둘 수 있다.

제45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이사는 정수의 5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감사는 2분의1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조합원 외의 자를 선출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이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는 이사회가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 제2항의 선거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선거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제46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조합의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 될 수 없다.(8차 개정)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차 개정)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차 개정)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② 제1항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8차 개정) 당연히 퇴직된다.

③ 제2항에 따라 퇴직된 임원이나 임원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은(8차 개정)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제47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3차 개정)

②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7차 개정)

③ 결원으로 인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종료일까지로 한다.

제48조(임원의 의무와 책임) ① 임원은 법령과 조합의 정관, 규약, 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조합을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조합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임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그 임무를 게을리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때에는 제3자에게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행위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한 것일 때에는 그 의결에 찬성한 이사도 제2항 및 제3항의 책임이 있다.

⑤ 제4항의 의결에 참가한 이사로서 명백한 반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자는 그 의결에 찬성한 것으로 본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상권의 행사는 감사 및 이사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이사장에 대하여는 감사가, 전체 임원에 대하여는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 대표가 한다.

제49조(임원의 해임) ① 조합원은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동의로 총회에 임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의 사유를 서면으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서면 제출이 있을 때에는 총회 개최 10일 전에 해당 임원에게 해임 이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0조(임원의 보수 등) ① 임원에 대하여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조합업무와 관련된 비용을 실비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상임임원에 대하여는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조합의 업무를 집행하고 조합을 대표한다.
② 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조합의 업무를 집행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이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이사, 감사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고 해당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한다.(7차 개정)
④ 제3항의 경우와 이사장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아닌 이사는 조합을 대표할 수 없다.

제52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연 2회 이상 조합의 업무집행 상황, 재산상태, 장부 및 서류 등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반기별 감사보고서는 이사회에, 반기별 감사보고서를 종합한 종합감사보고서는 정기총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예고 없이 조합의 장부나 서류를 대조 확인할 수 있다.
③ 감사는 이사장 및 이사가 법령·정관·규약·규정 또는 총회의 의결에 반하여 업무를 집행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감사는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보고서 제출에 있어서 감사가 2인 이상인 경우 감사의 의견이 일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각각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53조(감사의 대표권) 조합이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소송, 계약 등의 법률행위를 하는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

제54조(임직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장은 다른 조합의 이사장을 겸직할 수 없다.
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와 직원은 감사를 겸직할 수 없다.
③ 임원 총 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임원은 이 조합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조합원의 수가 10인 이하인 조합은 해당 기간 동안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임직원은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제55조(직원의 임면등) ①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한다. 다만, 간부직원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면, 급여, 기타 직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6조(고문) ① 총회의 결의로 학식과 경륜있는 사람을 고문으로 추대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조합의 운영과 업무집행에 관하여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③ 고문의 임기는 추대당시 이사의 임기와 같다.
④ 고문의 활동에 대해 이사회에서 정하는 대로 여비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장 사 업

제57조(사업의 종류) ①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하나 이상을 주 사업으로 하여야 하고, 주 사업은 협동조합 전체 사업량의 100분의 40이상이어야 한다.
1. 지역주민의 건강과 권익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가. 의료기관,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아동복지시설
나. 생활습관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
다. 취약계층과 조합원 및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지원 사업

라. 질병예방 및 보건예방 교육사업
마. 지역내 의료인과 연대 및 협조사업
바. 지역통화 운동 등 협동경제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
사. 조합원의 운동 및 생활습관개선을 위한 시설
아. 자원봉사활동(문구 추가, 4차 개정)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한 사업

② 이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기타 사업으로 할 수 있다.
1. 조합원과 직원에 대한 상담.교육.훈련 및 정보제공 사업
2. 조합과 관련한 연구.조사사업
3. 협동조합간 협동을 위한 사업
4. 조합의 홍보 및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③ 이 조합은 주 사업의 목적 및 판단기준을 적용하기 위하여 수행할 사업방식은 다음 각호중 하나로 한다.
1. 수지예산서상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40 이상을 주 사업 목적으로 지출할 것
2. 사업계획서상 주 사업 목적에 해당되는 서비스대상인원, 시간, 횟수 등이 전체 서비스의 100분의 40 이상일 것

④ 이 경우 주 사업 및 기타 사업은 상호 구분 계리되어야 한다.

제58조(사업의 이용) ①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합원이 이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조합원이 아닌 자도 사업을 이용할 수 있다.
1. 조합이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으로서 부패 또는 변질의 우려가 있어 즉시 유통되지 아니하면 제품의 품질을 유지하기 어려운 물품을 처리하기 위한 경우
2. 공공기관·사회단체 등이 공익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3. 조합이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서 일반 국민이 해당 사업의 목적에 따라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의무적으로 물품을 공급하게 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경우
5.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긴급한 상황일 때 공중(公衆)에게 생활필수품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6.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이 그 사업구역에 속하는 학생·교직원 및 학교 방문자를 상대로 물품을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7. 조합이 법령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가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
② 조합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총공급고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6차 개정)
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2.「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7차 개정)

5.「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자
7. 해당 사회적협동조합이 개설한 의료기관이 소재하는 시·도의 관할 구역에 주소·거소·사업장 또는 근무지가 있는 자(7차 개정)
8. 조합원과 같은 가구에 속하는 자
9.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7차 개정)

③ 조합의 공급고의 산정기준은 직전 연도 매출액 또는 서비스 이용인원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제8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으면 그 조합원이 이용한 것으로 보아 공급고를 산정한다.

제59조(사업계획과 수지예산) ① 이사회는 매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동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수지예산을 편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회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 총회에서 사후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장 회 계

제60조(회계연도등) ①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조합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되, 당해 조합의 주사업은 일반회계로 하고 그 외의 사업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1조(특별회계의 설치) 특별회계는 조합의 주 사업외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특정자금을 보유하여 운영할 때, 기타 일반회계와 구분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한다.

제62조(기부금 및 회비공개) ① 조합은 조합의 목적에 동의하는 개인이나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기부금을 납입한 개인이나 단체는 이를 이유로 조합의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조합은 조합 홈페이지를 통해 연간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해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
④ 기부금은 조합원의 이익이 아닌 공익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사업의 직접수혜자는 불특정다수로 한다.
⑤ 기부금은 별도의 통장을 통해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제63조(운영의 공개) ① 이사장은 결산결과의 공고 등 운영사항을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규약·규정과 총회·이사회의 의사록, 회계장부 및 조합원 명부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③ 결산보고서는 정기총회 7일 전까지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④ 조합원과 조합의 채권자는 이사장에게 제2항 및 제3항의 서류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이사장은 제4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단, 서류의 열람과 사본의 청구는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3년간으로 하며, 공개할 회계장부의 종류는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계정별원장으로 한다. 서류의 열람■청구 신청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⑥ 이사장은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의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게재하여야 한다.
1. 정관, 규약, 규정

2. 사업계획서
3. 결산서
4. 조합원.직원 등에 대한 교육.홍보 실적
5. 총회,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활동 상황
6. 수지예산서
7. 사업결과보고서

제64조(법정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해당 회계연도말 출자금 납입총액의 3배가 될 때까지 잉여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법정적립금은 손실금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임의적립금)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잉여금에서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을 빼고 나머지가 있을 때에는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② 임의적립금은 총회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준비금, 사업개발비, 교육 등 특수목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66조(손실금의 보전) ① 조합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손실금(당기손실금을 말한다)이 발생하면 미처분이월금, 임의적립금, 법정적립금 순으로 이를 보전하고, 보전 후에도 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손실금을 보전하고 제64조에 따른 법정적립금 등을 적립한 이후에 발생하는 잉여금은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고, 이를 조합원에게 배당할 수 없다.

제67조(출자금액의 감소의결) ① 조합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조합원의 신청에 의하여 출자좌수를 감소할 수 있다.
② 조합은 출자 1좌의 금액 또는 출자좌수의 감소(이하 "출자감소"라 한다)를 총회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대차대조표를 작성한다.
③ 조합은 제1항에 따른 의결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조합의 주된 사무소에 이를 서면으로 진술하라는 취지를 공고하고,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 기간은 30일 이상으로 한다.
⑤ 그 밖의 출자좌수의 감소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68조(출자감소 의결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 ① 채권자가 제67조의 이의신청 기간에 출자감소에 관한 의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출자 1좌 금액의 감소를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② 채권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조합은 채무를 변제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9조(결산등) ① 조합은 정기총회일 7일 전까지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잉여금처분안 또는 손실금처리안 등을 말한다)를 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은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감사의 의견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장 합병,분할 및 해산

제70조(합병과 분할) ① 조합은 합병계약서 또는 분할계획서를 작성한 후 총회의 의결을 받아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새로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제71조(해산) 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산하고 해산절차는 민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한다.
1. 총회의 의결
2. 합병·분할 또는 파산
3. 설립인가의 취소

② 이사장은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합원에게 통지하고 공고하여야 한다.

제72조(청산인) ① 조합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장이 청산인이 된다. 다만, 총회에서 다른 사람을 청산인으로 선임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 청산인은 취임 후 지체 없이 재산상태를 조사하고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재산처분의 방법을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청산사무가 종결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 없이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총회를 2회 이상 소집하여도 총회가 구성되지 아니할 때에는 출석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으면 총회의 승인이 있은 것으로 본다.

제73조(청산 잔여재산의 처리) 조합이 해산 후 채무를 변제하고 청산잔여재산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귀속한다.
1.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2. 유사한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3. 비영리법인, 공익법인
4. 국고

부칙

이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인가일) 2014년 10월 30일(창립총회 2014년7월16일)
제2조(1차개정) 2015년 2월 27일(제1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5년 3월 25일(보건복지부)
제3조(2차개정) 2016년 3월 10일(제2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6년 4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3호)
제4조(3차개정) 2018년 3월 15일(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18년 6월 21일(보건복지부 제35-4호)
제5조(4차개정) 2020년 5월 7일(제6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0년 6월 18일(보건복지부 제35-5호)
제6조(5차개정) 2021년 1월 8일(임시대의원 총회)
(인가일) 2021년 4월 2일(보건복지부 제35-6호)
제7조(6차개정) 2022년 3월 24일(제8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2년 4월 15일(보건복지부 제35-8호)
제8조(7차개정) 2023년 3월 28일(제9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3년 4월 11일(보건복지부 제35-9호)
제9조(8차개정) 2024년 3월 21일(제10차 정기대의원총회)
(인가일) 2024년 4월 5일(보건복지부 제35-11호)